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2111-0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체계적인 운영방안 연구

2018. 2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EDUCATIONAL INDUSTRIAL ASSOCIATION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체계적인 운영방안」의

최종연구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18. 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연 구 진

연 구 책 임　최종호(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박물관학박사)

공 동 연 구　김창규(미래문화제도정책연구원 원장, 법학박사)
박윤옥(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강사, 박물관학박사)
황규진(前 왈츠와 닥터만 커피박물관 부관장, 박물관경영석사)
이진형(경희대학교혜정박물관 학예사, 박사과정)

연 구 지 원　박자행(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문화경영정책석사)

목 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2-1. 연구의 범위 4
2-2. 연구의 방법 8
3. 연구의 기대효과 10

제2장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추진 현황
11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계획의 수립 14
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15
2-1.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체계 15
2-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계획의 예비타당성조사 17
2-2-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계획의 변경 17
2-2-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18
2-2-2-1. 조사결과의 개요 18
2-2-2-2. 국가재정에 의한 건립의 정당성 19
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의 수립 24
3-1.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 24
3-2. 기본계획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공간배치 25
3-3. 기본계획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체계구상 28
3-3-1. 운영주체의 조직형태 28
3-3-2. 운영주체의 조직체제 30
4.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준비조직의 신설 및 운영 33
4-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의 신설 33
4-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의 운영 33
4-2-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의 정원 및 업무분장 33
4-2-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의 사업추진 34
4-2-2-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법제화 및 운영방안 마련 34
4-2-2-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을 위한 건축실시설계 마련 36

제3장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근거 법제화방안
37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주체의 조직유형 분석 42
1-1. 행정기관(중앙부처)의 소속기관 42
1-1-1. 소속기관 조직유형의 개념 및 종류 42
1-1-2. 소속기관 조직유형의 특성 및 장단점 45
1-2. 행정기관(중앙부처)의 소속책임운영기관 46
1-2-1. 소속책임운영기관 조직유형의 개념 및 종류 46
1-2-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 51
1-2-2-1.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설치 51
1-2-2-2.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의 임용 51
1-2-2-3.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기본운영규정 제정 및 사업계획 수립 52
1-2-2-4.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 53
1-2-2-5.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인사관리 54
1-2-2-6.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관리 54
1-2-2-7.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기탁물품 접수 및 총액인건비제 운영 56
1-2-3. 소속책임운영기관 조직유형의 특성 및 장단점 57
1-3.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 59
1-3-1. 특수법인 조직유형의 개념 및 종류 59
1-3-2. 특수법인 조직유형의 특성 및 장단점 65
1-4.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법인 67
1-4-1.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설립법인의 성격 및 형태 67
1-4-2. 행정기관(중앙부처)의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지정 또는 민간위탁 68

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주체의 조직형태 선정 70
2-1. 운영주체의 법인화 추세 70
2-2. 운영주체의 조직형태 선정 74

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입법방안 78
3-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입법방향 78
3-1-1. 조직유형별 설립근거의 형태 78
3-1-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입법형식 79
3-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입법체계 및 내용 81
3-2-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입법체계 81
3-2-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주요내용 91
3-2-2-1. 설립근거법 및 설립목적 91
3-2-2-2. 법인격 및 목적사업 92
3-2-2-3. 정관(기본규칙)과 임원 및 직원 95
3-2-2-4. 국가의 지원조치 및 감독 98
3-2-2-5. 부칙 및 경과조치 100
3-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입법안 102
3-3-1. 농업식품기본법의 개정(안) 102
3-3-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정관(안) 104

제4장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핵심적 내부규정 제정방안
113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내부규정 제정의 기본방향 112

2. 유사기관의 내부규정 운영사례 분석 115
- 2-1. 국립중앙박물관 115
  - 2-1-1. 국립중앙박물관의 설립목적 115
  - 2-1-2.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직체계 및 기능 115
  - 2-1-3. 국립중앙박물관의 시설 120
  - 2-1-4. 국립중앙박물관의 운영규정 120
- 2-2. 국립민속박물관 122
  - 2-2-1. 국립민속박물관의 설립목적 122
  - 2-2-2. 국립민속박물관의 조직체계 및 기능 123
  - 2-2-3. 국립민속박물관의 시설 124
  - 2-2-4. 국립민속박물관의 운영규정 125
- 2-3. 국립중앙과학관 127
  - 2-3-1. 국립중앙과학관의 설립목적 127
  - 2-3-2. 국립중앙과학관의 조직체계 및 기능 127
  - 2-3-3. 국립중앙과학관의 시설 및 위탁사업 131
  - 2-3-4. 국립중앙과학관의 운영규정 133
- 2-4. 국립과천과학관 134
  - 2-4-1. 국립과천과학관의 설립목적 134
  - 2-4-2. 국립과천과학관의 조직체계 및 기능 134
  - 2-4-3. 국립과천과학관의 시설 및 위탁사업 138
  - 2-4-4. 국립과천과학관의 운영규정 139

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내부규정의 제정안 141
- 3-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내부규정 체계 141
- 3-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핵심적 내부규정안 145
  - 3-2-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유물관리규정(안) 145
  - 3-2-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대관규정(안) 184
  - 3-2-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관람료징수규정(안) 187
  - 3-2-4.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자원봉사자운영규정(안) 190
  - 3-2-5.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후원회운영규정(안) 195
  - 3-2-6.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자문위원회운영규정(안) 199

제5장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운영 및 중장기 발전전략
209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중장기 방향 202
1-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비전 202
1-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지향가치 203

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조직운영 204
2-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임무 및 조직구성 204
2-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조직 사무분장 206

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사업운영 및 중장기 발전전략 209
3-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유물관리 209
3-1-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유물의 수집 209
3-1-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수장고 및 보존처리 213
3-1-2-1. 수장고의 출납 및 관리 213
3-1-2-2. 유물의 보존처리 214
3-1-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유물의 표준관리시스템 및 정보화 214
3-1-3-1. 유물의 표준관리시스템 214
3-1-3-2. 유물정보의 정보화 215
3-1-4.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유물의 조사 및 연구 216
3-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전시기획 216
3-2-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전시의 구성 216
3-2-1-1. 전시의 기본방향 216
3-2-1-2. 전시의 공간구성 및 연출 217
3-2-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전시의 운영 218
3-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교육운영 220
3-3-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교육의 구성 220
3-3-1-1. 교육의 기본방향 220
3-3-1-2.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221
3-3-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교육의 운영 222
3-4.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수익창출 224
3-4-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수익사업의 구성 225
3-4-1-1. 수익사업의 기본방향 225
3-4-1-2. 수익사업의 예상수익 225
3-4-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수익사업의 운영 226
3-4-2-1. 입장료 및 체험료 226
3-4-2-2. 기부금 및 멤버십 227
3-4-2-3. 편의 및 부대시설 228
3-4-2-4. 위탁사업 228
3-4-2-5. 홍보 및 마케팅 229

제6장 결론
242

참고문헌
252

표 목차

[표 1] 국립농어업박물관 건립사업계획 주요내용 15
[표 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계획 변경내용 18
[표 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조직 업무분장도 31
[표 4]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의 업무분장 및 정원 34
[표 5]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 추진일정안 35
[표 6] 중앙부처의 소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립박물관 43
[표 7] 중앙부처 소속기관 조직유형의 장단점 46
[표 8]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8
[표 9] 중앙부처의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립박물관 50
[표 10] 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비교 56
[표 11] 중앙부처 소속책임운영기관 조직유형의 장단점 58
[표 12]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현황 60
[표 13] 중앙부처의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립박물관 65
[표 14] 중앙부처가 설립하는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 조직유형의 장단점 66
[표 15] 공공기관의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립박물관 69
[표 16] 공립박물관 민간위탁 운영상의 장단점 69
[표 17] 국립박물관의 조직형태 분석결과 70
[표 18] 국립한글박물관과 국립해양박물관의 법인화 논의 74
[표 19] 조직형태에 따른 업무성격의 적합성 75
[표 20]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 입법방식의 장단점 80
[표 21] 국립박물관 중 국립여성전시관 운영 특수법인의 설립근거 81
[표 22] 국립박물관 중 태권도박물관 운영 특수법인의 설립근거 82
[표 23] 기타 공공기관 중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의 설립근거 83
[표 24] 국가가 설립한 특수법인의 설립준비 및 경과조치 규정 85
[표 25-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입법체계 (설립) 89
[표 25-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입법체계 (경과조치) 90
[표 26] 국립박물관 및 국립과학관의 주요사업 비교표 93
[표 27]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의 정관 기재내용 비교표 97
[표 28]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을 위한 입법안 102
[표 29]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정관 제정안 104
[표 30]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조직체계안 113

[표 31] 국립중앙박물관 본부 조직체계의 기능 117
[표 32] 국립중앙박물관 전체 조직체계의 기능 118
[표 33] 국립중앙박물관 기능영역별 시설 120
[표 34] 국립중앙박물관 내부규정의 분석결과 121
[표 35] 국립민속박물관 조직체계의 기능 123
[표 36] 국립민속박물관 상설전시실의 운영내용 125
[표 37] 국립민속박물관 내부규정의 분석결과 126
[표 38] 국립중앙과학관 조직체계의 기능 129
[표 39] 국립중앙과학관 주요시설의 운영내용 132
[표 40] 국립중앙과학관의 위탁사업 운영 132
[표 41] 국립중앙과학관 내부규정의 분석결과 133
[표 42] 국립과천과학관 조직체계의 기능 135
[표 43] 국립과천과학관 주요시설의 운영내용 138
[표 44] 국립과천과학관의 위탁사업 운영 138
[표 45] 국립과천과학관 내부규정의 분석결과 140
[표 46] 유사기관의 내부규정체계 비교 141
[표 47]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내부규정체계안 144
[표 48]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유물관리규정 제정안 145
[표 49]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대관규정 제정안 184
[표 50]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관람료징수규정 제정안 187
[표 5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자원봉사자운영규정 제정안 190
[표 5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후원회운영규정 제정안 195
[표 5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자문위원회운영규정 제정안 199
[표 54]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경영기획본부의 사무분장 206
[표 55]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학예연구본부의 사무분장 207
[표 56]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대외협력본부의 사무분장 208
[표 57]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유물수집의 중장기 발전전략 211
[표 58]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전시기획의 중장기 발전전략 219
[표 59]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교육프로그램의 중장기 발전전략 223
[표 60]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관람객 수요 225
[표 6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현금수입 추정 226
[표 6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수익창출의 중장기 발전전략 230
[표 6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사업추진 일정표 239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수행체계도 9
[그림 2]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체계 17
[그림 3] 수익형민자사업 개념도 20
[그림 4] 임대형민자사업 개념도 20
[그림 5]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전체조감도 및 건축배치도 25
[그림 6]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전시체험관의 공간배치 및 콘텐츠 구성 26
[그림 7]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외부공간 배치도 28
[그림 8]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조직도 30
[그림 9]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축실시설계용역의 건축계획 36
[그림 10]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축실시설계용역의 외부공간계획 38
[그림 11]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의 임용절차 52
[그림 12]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의 사업승인절차 53
[그림 13]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직체계 116
[그림 14] 국립민속박물관의 조직체계 123
[그림 15] 국립중앙과학관의 조직체계 128
[그림 16] 국립과천과학관의 조직체계 135
[그림 17]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비전(Vision) 203
[그림 18]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지향가치 203
[그림 19]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조직도 206
[그림 20]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의 유물수집 추진단계도 210
[그림 21] 진화형 체험전시 흐름도 217
[그림 22] 정부의 입법절차 235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체계적인 운영방안 연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체계적인 운영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기대효과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농업은 국민에게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이며, 그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는 우리나라 경제·사회·문화 발전의 기반이 된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서구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농업과 농촌문화가 쇠퇴하였고, 이를 지탱하던 농촌사회는 젊은이들의 유출로 인한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어 농업노동력의 양적 및 질적 붕괴가 가속화되었고, 세계화·국제화에 따른 국내 농산물시장의 개방·경쟁시대의 전개는 글로벌 푸드가 밥상을 차지하는 비중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 정부는 1999년 2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농업을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에 이바지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발전시키며 농업인을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시켜 나가고 농촌을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는 풍요롭고 쾌적한 산업·생활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그 법적 근거로서 당시 「농업·농촌기본법」(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말한다)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정부의 국가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한민족이 선사시대부터 한반도에 정착한 이래로 형성·발전·진화되어온 우리의 농업역사·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를 수집·보존·관리·조사·연구하고 농업역사문화를 총체적으로 전시하여 국민들이 마음껏 체험·공유하는 문화복합공간으로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을 설립하는 것이 국가적 임무이다.

- 자유무역협정(FTA)·도하개발아젠다(DOA) 등 국내 농산물시장의 개방·경쟁시대의 전개로 인하여 글로벌 푸드의 유입에 따른 한식 밥상의 비중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신토불이(身土不二) 건강식품과 글로컬 푸드의 지속가능한 발전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전시체험공간의 설립이 절실하다.
- 국민들에게 국내·외 농업과 농식품에 관한 유·무형 유산을 수집·보존·관리하며 이를 전시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널리 보급하고, 새로운 4차 산업혁명과 6차 산업의 전개에 따라 급속하게 진화하고 있는 농업의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며 이를 공유·발전시켜갈 수 있는 농경기술·농식품산업 관련 문화복합공간의 설립이 필요하다.
-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농촌의 고령화로 농업노동력의 양적 및 질적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도시와 청년 농업인을 위한 스마트 팜 기술, 농식품 스토리 크래프팅을 위한

스마트 농업경영 교육, 웰빙 바이오 식품 산업화를 위한 플랫폼이 필요하다.

- 최근 귀촌·귀향 및 고향 살리기에 동참·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지속화 및 우리 농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역사와 전통에 기반을 둔 우리 농경기술의 우수성을 발굴하고 전파·진흥하여 우리 농업기술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인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농식품을 발굴하고 육성·진흥하여 우리 농식품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도시민들은 90.2%가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농업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은 39.6%에 머물러(농촌경제연구원 2011 국민의식조사), 생명바이오산업인 농업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라져가는 농촌공동체 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고시키며 토종유전자 기반의 농업과 발효가공 기반의 농식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이들을 국가·사회가 추진해야할 정책 및 전략으로 의제화하여야 하는데, 이를 국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또한 정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기본이념의 구체화를 위하여 농업의 경제적·공익적 기능과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전파·공유시키고, 농식품 기반의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농업·식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농업·식품과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문화정체성을 기반으로 농업기술의 혁신발전과 농식품 세방화(世方化)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 오늘날 국가안보와 경제성장 측면에서 식량·식품·식수의 중요성은 전략적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토종 기반의 유전자 지식재산권, 문화다양성, 문화향유권 기반의 글로벌 푸드의 무한경쟁 시대에 선도적으로 나아가면서 글로컬 푸드를 통한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과 전략의 실행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06년부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발맞추어 국가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농업·농촌문화의 가치 제고를 통해 농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농업·농촌문화의 전시·체험·교육을 통해 전 국민에게 농업 및 농촌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이러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준비작업은 2014년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2015년 12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예비타당성조사, 2016년 12월 EGA GROUP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거쳐 2021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 2021년 상반기 개관을 앞둔 시점에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 사전준비작업으로서 무엇보다도 운영주체의 조직형태 선정, 설립근거의 법률안 마련, 핵심적인 내부 운영규정의 제정, 장기적인 운영전략 등의 구체화가 시급하다.

○ 따라서 본 연구는 2021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에 필요한 그 설립근거의 법제화 방향과 그 법률안의 제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핵심적 내부 운영규정 및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중장기 발전전략(방향)의 제시에 그 목적을 둔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연구의 범위

○ 농림축산식품부는 2006년부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발맞추어 농업·농촌문화의 가치 제고를 통해 농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농업·농촌문화의 전시·체험·교육을 통해 전 국민에게 농업 및 농촌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사업을 추진하였다.

- 2006년 8월 농업계 내외의 필요성 제기에 따라, 2006년부터 해외 농업박물관 현지조사 등 기초연구 및 농어업박물관 기본 구상을 마련하였다.
- 2007년 5월 『농업·농촌 가치 홍보관 건립 기본방향 설정 연구』를 실시하였다.
- 2008년 6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5조를 신설하였으나, 2008년 이후 다른 지역의 국립농업생명미래관 건립 추진과 혼란으로 건립 추진계획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 2012년 이후 농업진흥청 이전부지 활용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농어업박물관 추진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계획의 구체화가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2012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사)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에 국립농어업박물관 건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고, 2012년 10월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국립농어업박물관 건립을 건의하였다.
- 2012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농어업박물관 건립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 역사문화 전시체험관 건립을 내부 방침으로 확정하였다.
- 2013년 6월 『농업, 농어촌 가치확산을 위한 국립농업박물관 전시기법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다.
- 2013년 8월 국립농어업박물관 건립시 어업분야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수원시가 국립농어업박물관 건립시 부지 102천㎡ 무상제공하는 MOU를 체결하였다.

- 2013년 12월 수원시 종전부동산활용계획 확정'(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계획' 심의위원회 통과, 국토교통부)하였다.
- 2014년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2015년 통과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운영체계도 책임운영기관에서 별도 법인의 설립으로 변경되었다. 이 당시 농업역사문화체험관으로 명칭과 운영체계가 변경된 것은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확대 및 이용객중심의 박물관 운영 추세를 반영한 체험 위주의 박물관 건립을 위한 것이었다.
- 2015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와 수원시가 MOU 체결부지(농어업 역사문화 전시체험관으로 50천㎡ 개발, 나머지 부지(52천㎡)는 수원시 활용 및 도시숲 조성 등 타 사업을 통해 연계개발) 활용방안을 협의하였다.
- 2016년 12월 EGA GROUP의 「농어업 역사문화 전시체험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통해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12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그 기본계획에 따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전준비작업의 일환으로 2017년 9월 해당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근거 법제화와 내부 핵심적 운영규정 제정 및 중장기 발전전략의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연구에 착수하여 2018년 2월에 완료하였다.

- 오늘날의 박물관은 수장기능, 전시기능, 교육기능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소통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있고, 기존의 인문·예술을 바라보는 형태의 전시를 탈피하여 직접적인 체험을 유도하는 등 이용객과의 소통의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이 2005년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국가의 특정 지원 없이 기존의 법적·제도적 틀 안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어 충분한 수익활동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 이것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주체의 조직형태 선정에 있어서 국가정책과 연계성이 높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특성에 부합하는 공공성의 지속적 보장과 수익창출을 통한 자체수입 확보의 필요성이라는 가치갈등의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준비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직접적인 설치근거규정이나 설치법률 없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기본이념 및 동법 제45조의 관련 정책에 근거하여 수행되고 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도모, 안전한 농산물과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방향을 기반으로 농업·농업인·농촌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 농업인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한다.
-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 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

○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 및 농촌문화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기본이념의 실현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방향 및 지원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 농촌·농업문화의 가치와 미래 모습을 전시·체험·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제공함으로써 농민의 자긍심 고취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한다.
- 농업은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이 되고,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조제1호 및 제3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 급속한 고령화, 사회변동, 서구화에 따라 사라져가는 옛 농법과 농경문화 및 농촌전통문화의 체계적 수집·고증·보존을 통해 국민에게 전통 농경문화 중요성 및 보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농경문화, 농경 유물, 전통 농법 등을 유지·계승시켜 나가고 그와 관련된 농업 박물관·관람 시설물 등의 전시,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동법 제4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제1항).
- 농업 및 농촌문화 전 영역을 포괄하는 전시체험관 건립을 통해 관련 유물의 통합적 관리·보존 및 교육·연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동법 제46조제1항).

○ 위와 같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동법의 기본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 수단으로서, 제45조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운영의 정당성 및 필요성을 명확하게 규정·강조하고 있다.

○ 그러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국가로부터 법적 재정지원을 받으며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직접적 설치근거가 법령에 마련되어야 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국가의 지원 하에 설립되기 위해서는 설치근거 뿐만 아니라 정관·이사회·직원 등의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설치·운영 및 경과조치 등의 법제화, 향후 개관 이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핵심적인 내부 운영규정 및 중장기 발전전략(방향)의 마련이 필요하다.

○ 이에 본 연구는 2021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에 필요한 사전준비작업의 일환으로서 그 설립근거의 법제화 방향과 그 법률안 제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핵심적 내부 운영규정 및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중장기 발전전략(방향)의 제시를 그 연구범위로 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근거 법제화를 위하여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추진현황을 건립계획 수립,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 설립준비조직 운영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내용 및 방향성을 바탕으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주체의 가능한 조직유형의 장단점, 조직형태, 입법방향, 입법체계 및 내용 등의 분석을 통해 입법안을 제시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핵심적 내부 운영규정 제정을 위하여 유사기관의 내부 운영규정 사례를 분석하고, 그 가운데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유물수집 및 관리규정 등 핵심적 내부 운영규정(안)을 제시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중장기 발전전략(방향) 제시를 위하여 기본계획의 관리 및 운영방향을 분석하고, 향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할 운영의 전략 및 방향을 제시한다.

2-2. 연구의 방법

○ 본 연구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관련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관계 자료와 문헌 및 관계법령을 조사·분석하고, 국민들과 농림축산식품·박물관·과학관·체험관 분야에 종사하는 관계자 및 전문가의 생동감 있고 사실성 있는 현장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 농림축산식식품부 부처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연구를 수행한다.

- 문헌연구는 농림축산식품 및 박물관·과학관·체험관 분야의 종사자들이 생산한 자료와 문헌,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각종 관련 연구원 등이 생산한 법령, 자료 및 문헌을 중심으로 수행한다. 이들 법령·자료·문헌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근거 및 운영규정, 중장기 발전전략 등의 개발에 직접 관계되는 이해관계자, 전문가, 중앙부처 및 연구기관이 생산한 기초자료로서 그 유용성이 높기 때문이다.

○ 또한 본 연구는 연구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수행체계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그림 1〕 연구수행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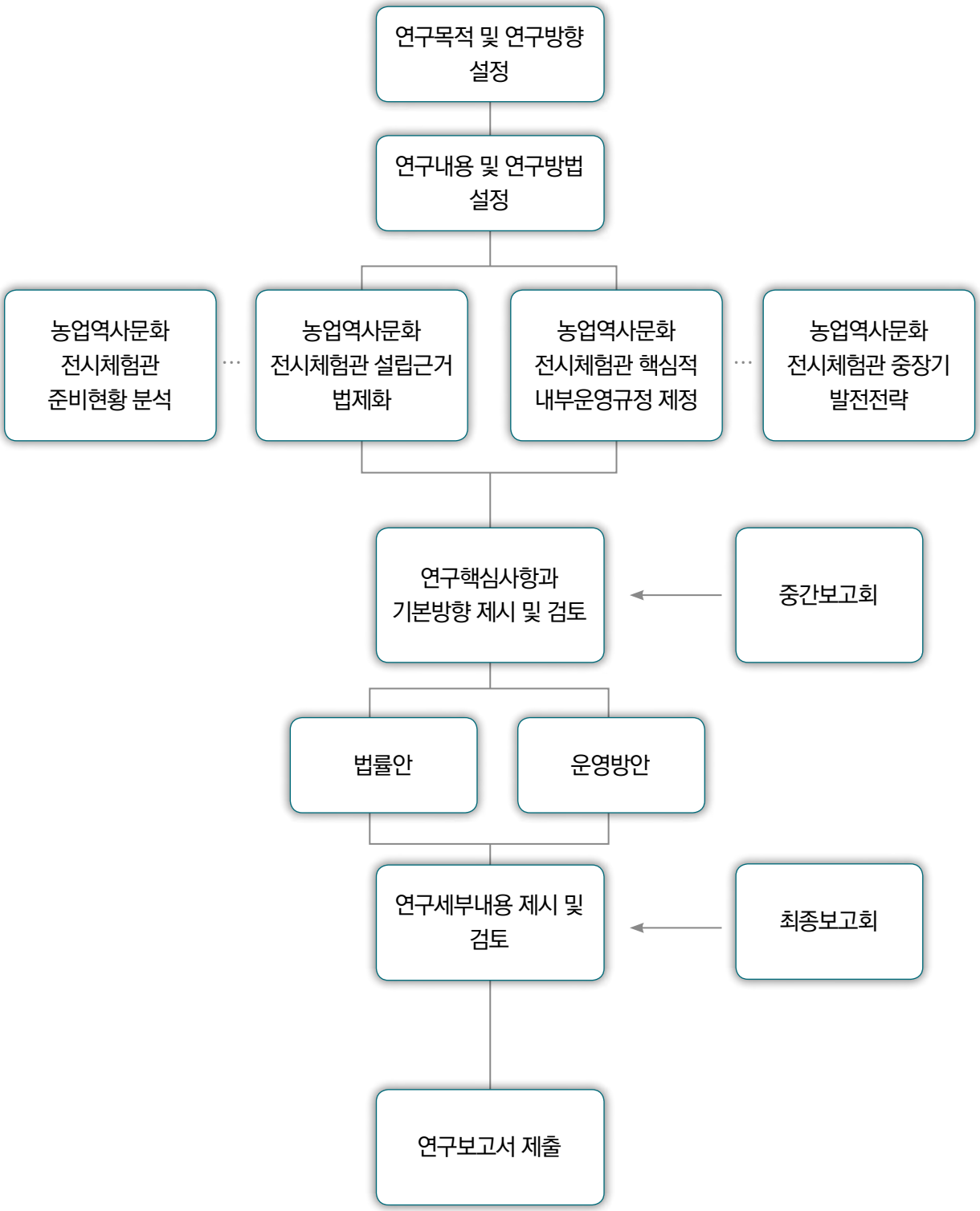
연구목적 및 연구방향 설정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설정
농업역사문화 전시체험관 준비현황 분석
농업역사문화 전시체험관 설립근거 법제화
농업역사문화 전시체험관 핵심적 내부운영규정 제정
농업역사문화 전시체험관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핵심사항과 기본방향 제시 및 검토
중간보고회
법률안
운영방안
연구세부내용 제시 및 검토
최종보고회
연구보고서 제출

3. 연구의 기대효과

○ 본 연구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근거 법령안을 제시함으로써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농촌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제화 방향과 법률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농촌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농촌역사문화전시체험관 개관을 위한 사전준비에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또한 본 연구는 농촌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핵심적인 내부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농촌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매뉴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농촌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내부규정안들은 농촌역사문화 관련 유물이나 자료 등의 수집, 보존, 조사, 연구, DB구축, 정보관리, 체험전시, 교육, 교류, 홍보, 마케팅 등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 농촌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내부규정안들은 유비쿼터스 체제 하에서 농촌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프로슈머 네트워킹 구축과 그 운영을 위한 민관산학연단협치 등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 그리고 본 연구는 농촌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농촌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향후 농촌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미래발전적 운영계획의 수립에 이바지하게 된다.

○ 위와 같은 연구효과에 발맞추어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향후 우리의 농업역사문화에 관한 대중의 인식과 관심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농업유산을 보전하며 계승·발전시켜 후세에 이어가는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될 것이다.

- 국제적으로 2002년에 식량농업기구 주관으로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GIAHS)의 창설로 농업유산 보전에 전환점이 마련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의 농업유산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 농업은 6차 산업으로 그 패러다임이 미래지향적 융복합산업으로 전환되면서, 2·3차 산업의 융합을 통해 식품산업, 관광산업 등을 결합시켜 새로운 형태의 창출을 촉진시키고 있다.

○ 그리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설립 이후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반영하면서 어린이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을 통해 도시와 청년 농업인을 위한 6차 산업기반의 스마트 팜 농경기술과 농식품 가공 스토리 크래프팅을 위한 스마트 농업경영 교육과 웰빙 바이오 식품 산업화 체험학습 등을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방문객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을 실시함으로써 농업·농식품산업에 대한 매력을 체득하게 함으로써 미래의 농업인을 발굴·육성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뿐만 아니라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미래세대로 하여금 전통농업과 컴퓨터와 인공지능 등 최첨단 4차 기술 혁명을 통해 스마트 팜 농경기술과 웰빙 농식품 산업화를 위한 전문지식과 숙련된 노하우, 농사경험을 공유·전파·홍보하는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될 것이다.

- 농업 및 식품산업의 역사와 ICT·BT 등과 연계된 첨단 산업화된 농촌의 미래 모습, 녹색성장산업 및 생태·문화적 가치에 대한 전시· 교육·체험 등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및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것이다.
- 글로벌 농업 및 식품산업과 글로컬 농업 및 식품산업에 대한 국내외 농업·농식품 산업화의 추세를 스마트 팜과 야외 농장에서 첨단 농경기술과 토종식품 발효기술 등을 통해 미래세대의 삶의 질 제고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체계적인 운영방안 연구

제2장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추진 현황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계획의 수립
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의 수립
4.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준비조직의 신설 및 운영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계획의 수립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건립계획은 2007년 기본방향설정연구를 통해 기획된 이래로 2008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5조의 신설을 통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2년부터 농촌진흥청 이전부지 활용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1)]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건립계획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산업화정책에 따라 농어업 분야가 존폐위기에 처하고, 도하개발아젠다(DDA)·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어업 분야의 전면 개방화와 자연기상 변화에 따른 농어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문화정체성 수립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의 필요성, 소멸되어가는 역사문화자료로서 농어업 관련 자료의 체계적 관리·보존·교육·연구기반 확립의 필요성 등이 그 수립배경으로 되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2006년 8월 농업계 내외에서 농어업박물관의 건립추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해외 농업박물관 현지조사 등 기초연구 및 농업박물관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2007년 5월 「농업·농촌 가치홍보관 건립 기본방향설정 연구」를 실시하고, 2008년 6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5조를 신설하여 농어업박물관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그 당시 추진동력의 미흡으로 답보상태에 있었다.
- 이후 농촌진흥청 이전부지 활용계획과 연계하여 2012년 10월 경기도가 국립농어업박물관 건립을 농림축산식품부(당시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을 내부방침으로 확정하면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이 본격화되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2013년에 걸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예비타당성조사연구 및 전시기법연구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경기도 수원시와 MOU 체결 및 부지활용방안 협의(부지 102,000㎡ 무상제공)를 거쳤고, 수원시는 종전부동산활용계획을 확정(농촌진흥청 이전부지 중 102,000㎡ 확보)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5월 제출하였다. 이 당시 국립농어업박물관 건립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2)]

1) 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15.11), 201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농어업 역사문화 전시체험관 건립, 41~44면; EGA GROUP(2016.12), 농어업 역사문화 전시체험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2~3면.

2) 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15.11), 201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농어업 역사문화 전시체험관 건립, 46면.

〔표 1〕 국립농어업박물관 건립사업계획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농촌진흥청 본청 인근
사업규모	대지면적 50,000㎡, 연면적 18,000㎡
사업내용	전시영역 : 농업·첨단농업·어업·식품전시체험관, 어린이박물관 등 전시지원영역 : 홍보관, 교육공간, 농어업아카이브, 컨벤션홀 관리운영영역 : 연구공간, 사무공간, 유지관리공간
추진주체	농림축산식품부
총사업비	1,773억원(국고 : 1,048억원 / 지자체(부지) : 725억원)
사업기간	2016~2019년(4년)

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2-1.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체계

○ 우리나라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산업·정보화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신규사업은 예산편성을 위하여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 기획재정부장관의 예비타당성조사는 1999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과정이다(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 제2조).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한다(국가재정법 제38조제3항).

-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영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2년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한다(예비타당성조사운영지침 제16조제1항).

-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절차 및 방식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예비타당성조사운영지침 제16조제2항).
-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① 중장기 투자계획의 부합성(중장기 상위계획 반영 여부,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부합성, 기타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등), ② 사업계획의 구체성(사업의 목표, 추진체계, 소요예산 및 인력, 추진 일정, 민자검토대상사업의 경우 민자적격성 판단을 위한 관련자료 등의 구체화 여부 등), ③ 사업추진의 시급성(국가의 중장기 투자우선순위, 동일 부처내 사업간 우선순위, 해당사업의 다음 연도 정부예산안 편성 필요성 등), ④ 국고지원 요건(국고지원 대상여부, 재원분담 방식, 매칭 비율 등 재정지원 적합성), ⑤ 지역균형발전 요인(지역균형발전 계획 반영여부, 해당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재정자립도 수준,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등), ⑥ 기술개발 필요성(관련 기술분야의 국내외 연구동향, 기술개발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예비타당성조사운영지침 제24조).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총괄하여 수행하고, 해당 사업부처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대안의 검토, 사업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한다(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 제28조, 제32조 내지 제39조).

-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통해 그 평가결과를 산출한다.
- 경제성 분석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적 조사과정으로서 비용-편익분석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분석한다.
- 정책적 분석은 해당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 및 사업준비 정도,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고용효과, 사업별 특수평가 항목 등의 평가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정책성 분석 과정에서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분석 및 민간투자 추진 가능성 검토 등을 위해 재무성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지역간 불균형 상태의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유발 효과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 그리고 사업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AHP)를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일반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시행이 바람직한 것을 의미)로 도출하고, 종합평가 이외에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및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한다.

〔그림 2〕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체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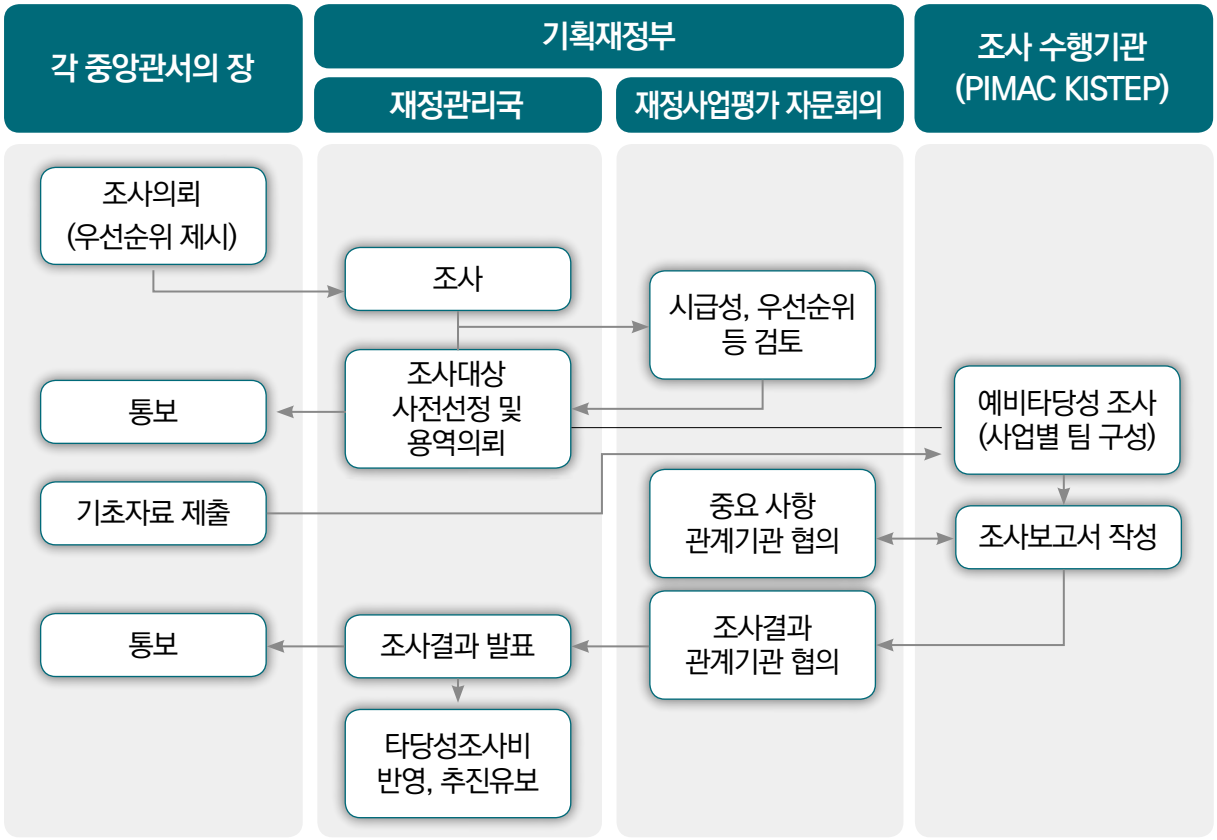

2-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계획의 예비타당성조사

2-2-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계획의 변경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사업은 2014년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15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하였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사업은 당초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재정으로 국립농어업박물관을 건립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정에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운영체계도 별도 법인으로 변경되었다.[4)]

3) 김명규(2017.8.25.),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성과와 정책방향(http://blog.naver.com/kpfisnet/221081961333).

4) EGA GROUP(2016.12), 농어업 역사문화 전시체험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3면.

○ 또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대상사업 부지규모가 당초 102,000㎡(연면적 45,000㎡)에서 50,000㎡(연면적 18,000㎡)로 축소되었다.[5)]

- 2015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와 수원시의 MOU 체결부지 활용방안 협의에서 농촌진흥청 이전부지 중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으로 50,000㎡를 개발하고, 나머지 부지(52,000㎡)는 수원시 활용 및 도시숲 조성 등 다른 사업을 통해 연계 개발하기로 협의되었다.

〔표 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계획 변경내용

구 분	최초 사업계획 (2014.5)	1차 변경 (2014.9)	2차 변경 (2015.4)	비 고
사업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농촌진흥청 본청 인근			농촌진흥청 이전부지
사업기간	2015 ~ 2018(4년)		2016 ~ 2019년(4년)	
대지면적	102,442㎡		50,000㎡	
연 면 적	45,000㎡ (2개동 신축, 3개동 리모델링)	26,035㎡ (2개동 신축, 2개동 리모델링)	18,000㎡ (2개동 신축, 1개동 리모델링)	
총사업비	3,532억원 (국고 2,176억원 + 부지비)	2,488억원 (국고 1,131억원 + 부지비)	1,773억원 (국고 1,048억원 + 부지비)	당초 부지비 1,357억원 최종변경 부지비 725억원 (수원시 무상제공)

2-2-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2-2-2-1. 조사결과의 개요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사업은 2015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B/C 0.97, AHP 0.515의 결과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종합평가로 이루어졌다.

5) 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15.11), 201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농어업 역사문화 전시체험관 건립, 48면.

○ 또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종합평가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가능성을 검토하였는데,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 결과,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해당 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제시되어 있는 사회기반시설 유형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해당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6]고 결론지었다.

2-2-2-2. 국가재정에 의한 건립의 정당성

가. 민간투자사업의 취지

○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사회기반시설(SOC : Social Overhead Capital)을 민간자금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제도로서, 부족한 국가재정을 보완하여 사회적 효용을 조기에 제공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용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1994년 제정되었고, 민간투자사업은 도로·철도·학교·주택 건설에서 시작되어 산업단지·터미널공사·레저시설·공원 등의 조성사업으로 확장되고 최근에는 박물관·문화회관 등의 문화시설로 확대되고 있다.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다양하게 이루어지나, 주로 수익형민자사업(BTO : Build-Transfer-Operate)과 임대형민자사업(BTL : Build-Transfer-Lease)으로 운영되고 있다(민간투자법 제4조).

- 수익형민자사업(BTO)은 사업시행자의 민간자본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운영권이 인정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수익형민자사업은 도로·철도·항만 등 수익(통행료 등) 창출이 용이한 시설에 활용되고, 종래 매년도 실제 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운영수입의 일정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가 적용되었다가 지금은 폐지·운영되고 있다(2006년 민간제안사업 적용폐지, 2009년 정부고시사업 적용폐지). 그리고 수익형민자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약정된 일정한 시설관리운영 기간 동안 시설이용자로부터 직접 사용료를 징수하여 수익을 올리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체제이다.

6) 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15.11), 201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농어업 역사문화 전시체험관 건립, 233면.

〔그림 3〕 수익형민자사업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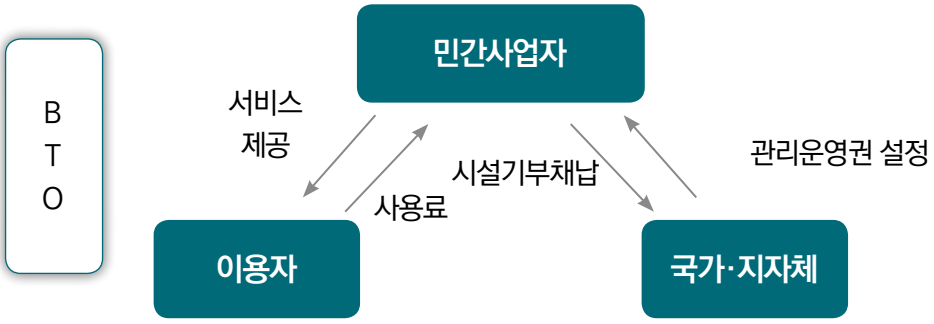

- 임대형민자사업(BTL)은 사업시행자의 민간자본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임대형민자사업은 학교·문화시설 등 이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를 통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시설에 활용되고 있는데, 국립해양박물관, 울산박물관 등이 그 사례이다.

〔그림 4〕 임대형민자사업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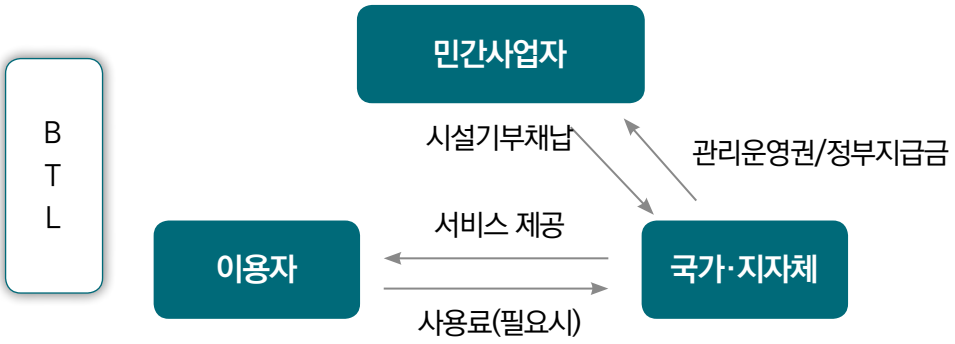

-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유형으로는 사업시행자의 민간자본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BOT : Build-Own-Transfer), 사업시행자의 민간자본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BOO : Build-Own-Operate) 등이 있다.

○ 또한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이루어지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 지급이나 장기대부 및 부담금이나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며 사업시행자는 차관을 도입하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정부고시사업은 주무관청이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기·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며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한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 및 고시하고(민간투자법 제8조의2),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계획을 수립 및 고시하고(동법 제10조), 민간투자사업 시행예정자가 민간투자시설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해당 사업계획의 평가·협상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쳐 민간투자사업 착공의 절차로 이루어진다(동법 제13조). 이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할 때에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가 2천억(임대형민자사업의 경우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한 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동법 제8조의2제2항, 동법시행령 제6조).
- 민간제안사업은 민간부문이 민간투자사업의 제안서를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제안사업의 적격성 조사 및 추진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업지정 및 제3자 공고를 한 후 이들 제안서에 대한 검토·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을 거쳐 민간투자사업 착공의 절차로 이루어진다(동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7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①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용지보상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짐으로써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운 경우, ④ 실제 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수입에 훨씬 못 미쳐 해당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⑤ 민간투자사업에 포함된 시설사업 중 그 자체만으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의 수익성이 적으나 전체 사업과 함께 시행되면 공사기간이나 경비가 크게 줄어드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지급 또는 장기대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지나친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타인자본으로 조달하는 건설금융·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차손이 발생한 경우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한다(동법 제53조, 동법시행령 제37).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및 촉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 등의 부담금을 감면하고(동법 제56조),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동법 제57조).
-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는 자금조달을 위하여 외환거래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차관을 도입하고(동법 제5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한다(동법 제58조).

나. 민간투자사업의 한계

○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금으로 건설함으로써 부족한 국가재정의 보완과 민간부문의 창의성 및 경영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이 노정되어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7)]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시성이나 공약성 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타당성이 없음에도 이용자 수요예측을 부풀려 준공 이후 적자가 누적되는 등 골치 덩어리 사업으로 전락하고, 그 적자를 메우려 과도한 공적자금의 투입이나 요금인상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투자자의 수익성 보장을 통한 민간투자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도입함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액이 막대하게 누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최소운영수입보장지급액)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가재정을 압박한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하여 민간제안사업은 2006년부터, 정부고시사업은 2009년부터 그 제도를 폐지하여 적용이 배제되게 되었다.

다.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특성 및 국가건립의 필요성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건립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에 근거하여 ① 농업·농촌·식품산업의 역사,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가치 및 생태·문화적 가치를 전시·교육·체험 등을 통해 어린이 및 도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②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까지 눈높이에 맞게 농업·농촌·식품산업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제공하며, ③ 농업·농촌·식품산업 전 영역을 포괄하는 전시체험시설을 건립하여 관련 유물의 통합적 관리·보존 및 교육·연구 공간을 제공하고, ④ 농업·농촌·식품산업을 주제로 하는 전시·교육·체험의 명소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농업식품기본법은 농업·농촌·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의 농업이 국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이 되고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서의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생활공간으로서의 농촌이 되도록 하여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및 제2조).

7)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2016.1), 방문객 친화형 생활사박물관 건립타당성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121~122면.

- 그리고 농업식품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기본이념을 실현하는 다양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전통농경문화·농경유물·전통농법, 재래종의 가축· 농작물 및 농촌공동체의 유지·계승과 그와 관련된 농업 박물관·관람 시설물 등의 전시·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이를 향유시키는 연구·조사·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동법 제45조 및 제46조).

○ 이러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건립사업은 농업식품기본법의 기본이념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필요한 국가정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공공사업으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건립은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한 농업·농촌·식품산업 정책을 체험전시 등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관련 유물을 수집·보존·관리하며, 이를 위한 연구·조사·교육을 집행하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서 국가와의 정책연계성이 높은 사업이다.

○ 또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그 건립계획이 반영되어 있고, 수원시의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에도 농촌진흥청 이전 부지의 활용계획으로 해당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수원시의 협의를 통해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건립부지는 수원시로부터 무상제공 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 농업식품기본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4조). 그리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건립추진사업비를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서 조달하겠다는 계획에 대하여 2015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그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으로서 재원조달 가능성을 검토하여 재원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8)]

8) 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15.11), 201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농어업 역사문화 전시체험관 건립, 235면.

○ 이상과 같이 ① 농업·농촌·식품산업 국가정책을 체험전시 등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관련 유물을 수집·보존·관리하며, 이를 위한 연구·조사·교육을 집행하는 공공사업으로서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성격과 그 공익 기능, ②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추진비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충분한 재원조달 능력, ③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부지의 무상 확보 등을 고려할 때에 공익성 보다 수익성을 보장해주고 부족한 국가재정을 보완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조기 제공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건립사업은 민간투자사업방식의 추진은 부적합하다.

- 2015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예비타당성조사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하여 해당 시설이 박물관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전시체험시설이나,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시설로 건립할 계획이라는 주무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간투자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간투자 대상시설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9)]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건립계획과 같이 국가의 재정사업으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건립을 국가가 추진하는 것이 농업식품기본법의 취지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능의 높은 국가정책 연계성에 비추어 부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의 수립

3-1.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2015년 5월 EGA GROUP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2016년 12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EGA GROUP이 수행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는 대상지 현황조사 분석, 사례연구, 개발전략 수립, 사업타당성 분석, 운영 및 관리방안 수립, 설계 및 시공발주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 EGA GROUP의 연구결과는 개발전략수립에서 기본방향, 공원조성 부분별계획, 건축계획, 전시체험계획, 유물수집계획 및 정보화계획을 제시하고, 사업타당성 분석에서 비용 추정, 수요

9) 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15.11), 201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농어업 역사문화 전시체험관 건립, 235면.

추정, 편익 추정,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 재원조달방안, 사업추진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운영 및 관리방안 수립에서 운영체계 구상, 운영계획, 유관시설 협력방안,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을 제시하고 있다.

○ EGA GROUP의 연구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종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사업타당성 분석에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야외공간에서도 수행하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종전 건립계획에서 책정된 적정 운영인력 42명을 49명으로 증원하여 검토하고, 운영 및 관리방안 수립에서 운영주체의 조직형태를 재단법인으로 하며 조직체계를 3본부 1과 6팀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10)]

3-2. 기본계획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공간배치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은 사업대상지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전시체험관 전면부의 상징성과 인지성을 부각시키고, 다양한 체험 및 행사가 가능하게 외부공간을 구성하며, 전시체험관과 외부공간의 연계 및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간을 배치하였다.[11)]

〔그림 5〕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전체조감도 및 건축배치도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전시체험관은 역사관, 농어업관, 첨단농업관, 농식품 홍보관, 식문화관, 영상관, 농어업체험관으로 구성하였다.[12)]

10) EGA GROUP(2016.12), 농어업 역사문화 전시체험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319~338면.
11) EGA GROUP(2016.12), 농어업 역사문화 전시체험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151~152면.
12) EGA GROUP(2016.12), 농어업 역사문화 전시체험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178~180면.

- 전시체험관의 전시체험계획은 농어업의 소중함과 문화 이해, 농산업에 대한 호기심과 지적 욕구 충족, 농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 제시를 목표로 관람객과 소통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발전하는 진화형 체험전시관의 지향, 콘텐츠·연출·공간·운영 등 다각적인 전시방법을 적용하는 진화형 전시체험관 구현을 그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 전시체험관의 콘텐츠 개발 및 구성은 농어업의 역사·문화·미래를 아우르는 통합전시, 미래지향적 첨단 융복합 농식품산업으로서의 이미지 부각, 관람·체험·참여·공감을 이끌어내는 상호작용 대화형 전시, 농어업의 소중함과 문화를 이해하는 전시·체험·교육으로 농어업에 대한 호기심과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공간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림 6〕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전시체험관의 공간배치 및 콘텐츠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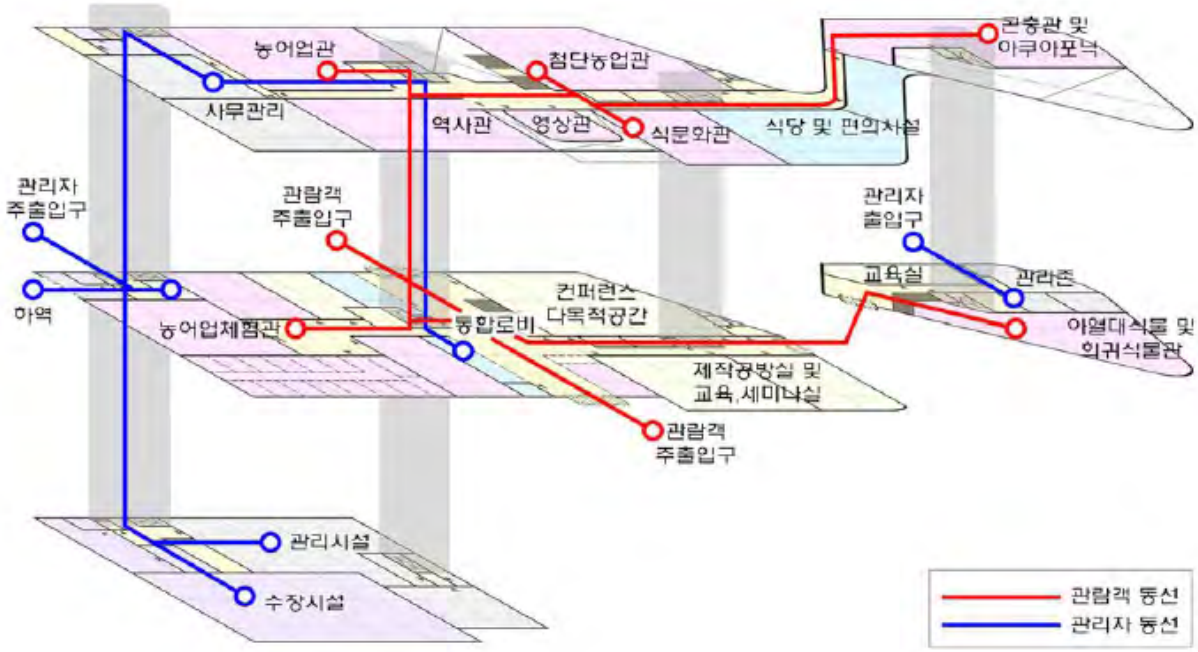

건물	주제	주요 내용
전시체험관	역사관	- 선사시대~조선시대 - 초기농경, 농경 도구의 발달, 농경문의 발달, 농어업정책과 기술의 발전, 농어구 발달과정 등 - 관람객과 소통을 통한 전시유물의 교체 및 업그레이드
	농어업관	- 일제강점기~근현대 농어업 - 근·현대 농어업 및 농어업 기술의 발전상과 세계 농업의 현황
	첨단농업관	- 현대~미래 농업 - IT·BT 첨단기술과 융합되어 발전하고 있는 농업의 변화모습 등 체험 - 농업의 미래가치, 농업과 바이오공학, 농업과 기술, 농업과 환경 등 ※ ICT연계 정밀농업, 바이오 장기 등 의료산업, 식물공장, 농업로봇 전시

건물	주제		주요 내용
전시체험관	농식품 홍보관		- 귀농귀촌 등 농식품 관련 정책 홍보 제공 - 라운지 및 컨설팅 룸 운영을 통해 농업의 다원적 가치 홍보
	식문화관		- 우리의 식문화, 미래식품, 기능성식품, 건강한 먹거리 등 주제전시 - 다양한 음식을 직접 만들고 맛을 즐길 수 있는 쿠킹클래스 운영
	영상관		- 약 104석 규모이 영상관 구성
	농어업 체험관	전시체험	- 농사의 과정과 문화, 농식품 관련 직업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놀이·체험 공간 - 농부의 한해, 농경문화 영유아를 위한 리틀 빌리지 체험
		직업체험	- 미래세대가 농식품 관련 직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체험 ※ 곡물생산가공, 육류가공, 낙농, 화훼, 과수, 동물병원, 생명과학(인공장기) 등
		3D영상관	- 약 178석 규모의 3D영상관 구성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외부공간은 전통의 농촌마을 외부공간을 모티브로 동네마당, 체험마당, 커뮤니티 광장 등 공간별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온실, 상징마당, 동네마당, 놀이마당, 기억의 숲, 덩굴식물원, 어울림마당, 휴게마루, 축제마당으로 구성하였다.[13)]

- 온실은 스마트팜·아쿠아포닉 등을 도입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육공간, 아열대 및 테마식물·희귀동물 등을 전시하여 식물에 대한 관찰 및 체험을 통한 교육공간, 곤충·양서류 등을 전시하여 생물에 대한 관찰 및 체험의 교육공간으로 구성하고 있다.
- 상징마당은 농업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상징조형물로 초점경관 연출과 경관미를 조성하여 행사 및 휴식공간, 동네마당은 특색 있는 경관 연출과 유실수 체험·교육·공유를 통한 농촌의 전원 체험공간, 놀이마당은 장승·솟대·캐릭터 조형물을 배치한 다양한 재미요소의 프로그램 체험공간, 기억의 숲은 기존 수목을 활용한 역사성을 가진 휴게 및 산책공간, 덩굴식물원은 덩굴식물을 통한 미적 경관을 연출하여 기억의 숲과 연계한 휴게 및 산책 공간, 어울림마당은 힐링을 위한 산책로, 휴게마루는 데크 스탠드의 휴게공간, 축제마당은 행사 및 운동이 가능한 잔디광장으로 구성하고 있다.

13) EGA GROUP(2016.12), 농어업 역사문화 전시체험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140~147면.

〔그림 7〕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외부공간 배치도

3-3. 기본계획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체계구상

3-3-1. 운영주체의 조직형태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은 운영주체의 유형별 운영형태를 국가의 재정투자 형식에 근거하여 공공직영, 공공위탁, 민간투자, 민영화방식으로 구분하고, 공공위탁방식으로 재단법인 설립,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 책임운영기관으로 분류하면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주체의 조직형태를 공공위탁방식 중 재단법인의 형태가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있다.[14)]

- 공공직영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서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모든 공공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있으나, 외부자금 조달 및 기부금이나 민간기금 확보 등의 재원조달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공공위탁의 재단법인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간섭을 배제할 수 있어서 운영의 전문성 발휘 및 전문인력 활용에 용이하고 기부금이나 후원금 등의 기타 재원 조성 시 직영방식 보다 유리하여 추후 운영비 확보에 용이한 장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14) EGA GROUP(2016.12), 농어업 역사문화 전시체험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318~319면.

- 공공위탁의 시설관리공단은 체육·문화·복지시설 등을 주로 관리하는 시설관리적 특성이 있어서 운영측면에서 운영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문화사업으로서의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공공위탁의 민간위탁은 정부가 민간위탁기관에 비용을 지급하고 서비스이용자는 세금을 통해 비용을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서 재원을 공공지원과 민간조달 모두 가능하고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서 운영평가를 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실적이 미달인 경우 다른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공공성과 전문성 보다 실적 위주로 운영될 수 있고 시설관리공단 운영방식에 비하여 다소 전문성이 높지만 장기적인 관점의 비전 및 사업추진 등을 고려하면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공공위탁의 책임운영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책임운영기관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는 기관으로서 민영화와 민간위탁과는 다른 개념이며 공기업과도 다르고 보통 행정기관과 같으나, 기관장에게 기관 운영의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되며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 민간투자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 투자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서 민간의 전문적 운영방식 도입이 가능하고, 민영화 이전의 중간 운영형태이며 기관장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고 운영성과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민영화는 재달 조달과 서비스 운영 모두를 민간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다.

○ 그러나 국가나 민간이 설립하는 법인의 법적 형태는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소속기관(부속기관), 책임운영기관,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법인으로 구분된다.

- 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부처를, 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은 그 직제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은 행정기관 직제와 책임운영기관법에 따라 설리된 기관을 말한다.
-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은 민법이나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설립근거를 두거나 설립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하고, 그 특수법인의 성격에 대하여는 설립근거를 규정한 법률에서 동 법률이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시장형공기업, 준시장형공기업,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 민법에 의한 법인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말하고, 상법에 의한 법인은 영리법인으로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의 사단법인을 말한다.

○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이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주체의 조직형태로서 제안하고 있는 '재단법인' 유형은, 법인의 법적 형태로서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이고, 그 운영원리는 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할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3-2. 운영주체의 조직체제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은 운영주체의 조직체계를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3본부 1과 6팀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15)]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시설이 일반 박물관·전시관·체험관의 복합적 성격을 가진 시설로 건립될 예정이므로 기존 박물관 운영조직과 체험중심 운영조직이 결합된 운영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전시·체험의 특성상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홍보가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한 부서를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시설관리·청소·경비·주차·안내매표·전시운영 부문 등은 부분적으로 위탁용역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기본방향에 근거하여 조직체계를 설정하였다.

〔그림 8〕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조직도

15) EGA GROUP(2016.12), 농어업 역사문화 전시체험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336~338면.

○ 또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은 최근 전시체험관의 경향 등을 고려하여 학예연구 및 관람객 서비스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주체의 조직정원을 49명으로 상정하고, 위탁용역 대상의 시설관리·청소·경비·주차·안내매표·전시운영 부문에 필요한 정원 외 임시직 인력을 60여명으로 제안하고 있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은 정원 외 위탁용역 대상의 부문에 필요한 인력 60명을 시설관리 8명, 청소 9명, 경비 5명, 주차 2명, 안내매표 11명, 전시운영 25명 등으로 상정하였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은 정원 49명으로 구성되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조직의 업무 분장을 다음과 같이 상정하였다.[16)]

〔표 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조직 업무분장도

구분		주요업무
관장		-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총괄
경영관리본부	기획예산팀	- 경영전략 및 평가 / 예산 - 이사회운영 / 규정·조직관리 - 감사 / 법무 / 예산평가 - 정부 및 국회대응 등
	운영지원팀	- 인사 / 노무, 구매 / 자산, 회계 / 기록물 / 보완 - 공용차량 운영관리, 임대관리 등 - 공사, 용역 등 각종 계약 - 회계·결산, 수입 및 지출 - 직원복지 및 물품관리
	시설안전팀	- 시설안전 - 정보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운영 - 건축 / 조경 / 토목 / 온실 - 전기·통신, 기계·소방
대외협력본부	고객홍보팀	- 언론홍보 / 마케팅 / 고객센터 및 관리 - 온라인 매체 - 자원봉사단, 사회공원 - 외국인 서비스 관련 지원 및 업무 - 공모전 / 이벤트, 뉴스레터 / 홍페이지 - CRM 시스템 관리, 인쇄물
	사업관리팀	- 식음료 / 편의 / 주차 수입 / 편의 프로그램 개발 - 문화프로그램 및 공연기획 - 광고유치 / 기부금관리 / 수익창출, 신사업 개발 - 특별전시체험전 - 입장수입관리 - 협찬광고 관리 / 대관 - 기념품 개발 및 수익금 관리

16) EGA GROUP(2016.12), 농어업 역사문화 전시체험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337면.

구분			주요업무
운영본부	학예과	전시기획	- 종합전략기획조정시행, 학예 예산편성 및 소관사업에 관한 사항 - 전시실관리 및 관련조사·개최지원 - 상설 전시, 리노베이션 등
		학술연구	- 학술연구사업 종합기획 - 농어업관련조사연구, 연구보고서 발간 - 국내외 농식품관련 기관 및 연구동향 조사 - 각종 학술대회 개최 및 지원
		도서관/ 디지털아카이브	- 아카이브 운영전략 - 자료구입 - 기록물 및 정보관리
		유물관리	- 유물공개 / 경매 / 구입 관련 업무 - 보존처리 및 수장고 관련 업무 - 유물관리 업무 일체
		교육·운영	-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연구, 개발, 운영
	공작팀		- 체험관 내 전시체험을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 - 공작소 관리 / 운영 / 네트워크 관련 업무 - 전시체험물 제작 경연대회 등 관련 행사 기획 및 개최 - 각종 유사연구체험단체 네트워킹 및 협력 - 학예과 기술지원

○ 그리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경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시설관리운영은 운영주체가 담당하되, 수익시설 또는 지속적인 전문가의 견해, 콘텐츠 및 프로그램 변경 및 교체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운영위탁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시설 중 농어업체험관과 컨퍼런스(다목적 공간) 부분은 지속적인 프로그램 변경 및 콘텐츠의 보완, 관람객의 요구와 반응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하며 전문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공간이므로 부분적 운영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17)]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은 운영위탁의 장점으로서 전문인력 채용으로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정원 증원의 축소 및 운영비 절감, 탄력적인 인사관리 가능, 전문집단의 운영·관리 경험 및 기술의 노하우를 도입하여 시설의 발전가능성 제고를, 운영위탁의 단점으로서 적정 업체 선정의 어려움 및 한계, 운영 및 업무범위와 수입에 관한 명확한 기준의 필요, 민간업체의 경영악화나 부도 시 운영관리의 지속성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17) EGA GROUP(2016.12), 농어업 역사문화 전시체험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383~384면.

4.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준비조직의 신설 및 운영

4-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의 신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주체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2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에 따른 설립준비작업을 직접 관장·수행하는 설립준비조직으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을 신설하였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은 2017년 2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농림축산식품부직제"라 한다) 개정을 통하여 설치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산하 하부조직이다.

○ 그러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은 당시 2020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개관에 맞추어 202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출범하였다.

4-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의 운영

4-2-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의 정원 및 업무분장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은 농림축산식품부직제에 따라 팀장 1명을 포함한 정원 2명(현원 10명)으로 구성·운영되고, 그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동직제 제44조).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각종 인·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 공사 관련 발주·자재 조달 및 건립 공사의 관리·감독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전시·체험·교육 콘텐츠 등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관리·운영 기관의 법인화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표 4〕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의 업무분장 및 정원

업 무 분 장 (농림축산식품부조직도 : 현원 10명)			정 원 (농림축산식품부직제 : 2명)	
담 당 업 무	직 급	계	직 급	계
업무총괄	팀 장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1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 전시체험, 농업유산	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시설공사	사무관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추진업무	사무관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추진(온실, 기계, 소방, 전기)	연구관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시설공사(서무, 기획)	주무관	1		
농촌역사문화전시체험관 시설공사(조경, 토목)	파 견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추진(건축)	파 견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추진(전시)	학예사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추진(교육)	학예사	1		

4-2-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의 사업추진

4-2-2-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법제화 및 운영방안 마련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은 2021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에 필요한 사전준비작업의 일환으로 그 설립근거의 법제화 방향과 법률안 마련,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 이후 운영에 필요한 핵심적 내부 운영규정 및 체계적 운영방안의 마련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근거 법제화를 위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의 조직체계를 진단하고, 그 입법방향 및 입법안을 모색하고 있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핵심적 내부 운영규정 제정을 위하여 유사기관의 내부 운영규정 체계 및 사례를 분석하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운영규정 체계설정 및 핵심적 내부

운영규정안을 모색하고 있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체계적 운영방안 제시하기 위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발전적 운영방향 및 중장기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법제화 및 운영방안 마련을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추진하고,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당초 다음과 같은 추진일정을 거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을 설립·운영할 계획이었다.

〔표 5〕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 추진일정안

기 간	추 진 내 용	비 고
2017. 08 ~ 2017. 12	추진계획 수립, 예비 법령 및 정관 등 마련	법령 추진계획(개정 또는 제정) 검토 예비법령(안) 마련(4~12월) 및 입법계획 제출(12월) 예비 정관 및 내부규정 마련
2018. 01 ~ 2018. 12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정관 등 보완	입법 추진 정관 및 내부규정 보완 및 확정
2018. 03 ~ 2018. 07	공공기관 신설 사전심사	공공기관 신설 사전 심사(기획재정부) : 법안 입법예고 전 심사 요청
2019. 01 ~ 2019. 12	법인 설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설립위원회 위원 구성·조정 및 확정 이사회 임원(관장 포함) 구성·조정 및 확정 재산출연 법인 설립인가 및 등기
2020. 01 ~ 2020. 06	공공기관 지정 협의	법인등기 후 공공기관 대상기관 기재부 통보 :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2020. 01	창립 이사회 개최	창립 이사회 개최 내부규정 승인
2020. 01 ~ 2020. 06	직원채용 및 출범식	채용기준마련, 채용공고, 심사 합격자 발표, 신원조회, 배치 법인 출범식 및 비전선포식(현판식) 개최

○ 그러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을 위한 건축실시설계 마련과정에서 건축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공사발주 및 착공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 2018년 1월 24일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개관시기를 당초 2020년 하반기(7월)에서 2021년 상반기(5월)로 조정하였다.

4-2-2-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을 위한 건축실시설계 마련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을 위한 건축기본설계 및 건축실시설계와 함께 그 전시를 위한 전시기본계획 및 전시실시설계 등을 용역발주하여 수행하고 있다.

○ 이 가운데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사업의 건축실시설계용역을 2017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추진 중이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이 추진 중인 건축기본설계 및 건축실시설계용역과정에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의 건축계획 등에 수정이 가해지는 등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 첫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의 건축계획은 전시체험관의 건축계획을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설정하였으나, 건축실시설계용역의 건축계획은 별관을 추가하여 본관 지상 3층, 별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변경하였다.[18] 이에 따라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내부공간 배치계획 및 동선계획이 전면적으로 변경되고 있다.

〔그림 9〕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축실시설계용역의 건축계획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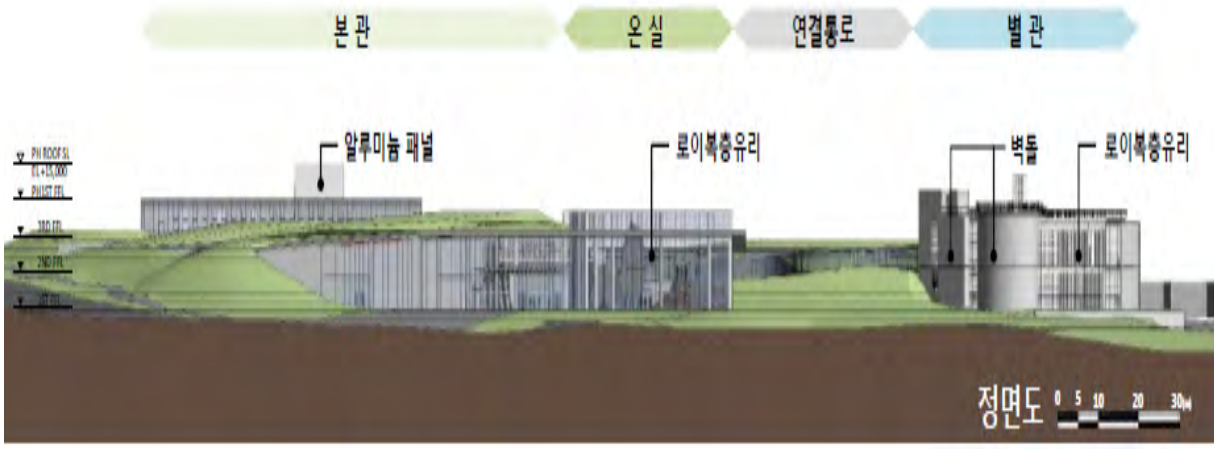

18) HAEAHN architecture(2017.11.16.),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사업 계획설계 보고회 자료, 농림식품축산식품부, 4면 및 17~2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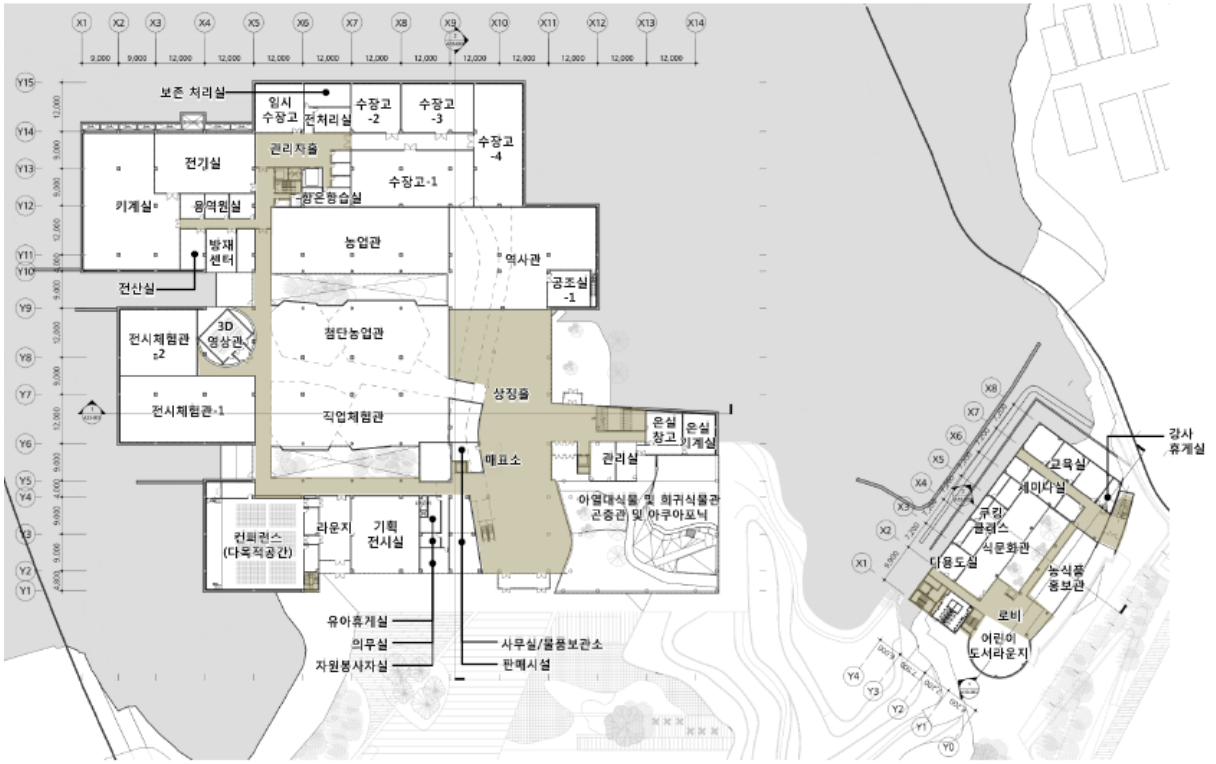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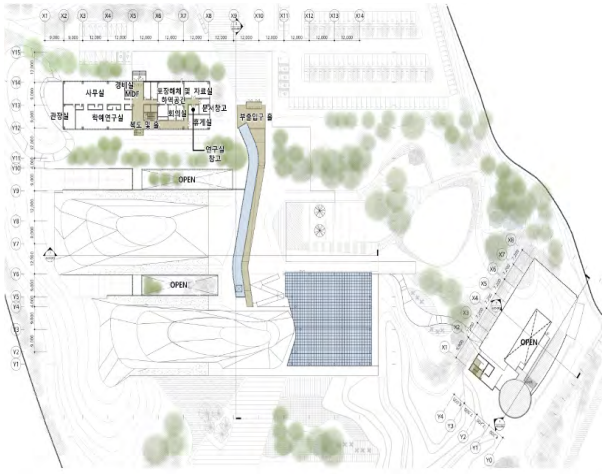

(3층 평면도)

○ 둘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축실시설계용역의 건축계획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외부공간을 농업전시체험 프로그램의 특수성과 공원유지관리의 측면에서 유료와 무료 공간영역으로 상세히 구분·설정하고, 그 배치계획을 변경하였다.[19] 이에 따라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외부공간 배치계획 및 동선계획이 전면적으로 변경되고 있다.

19) HAEAHN architecture(2017.11.16.),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사업 계획설계 보고회 자료, 농림식품축산식품부, 25면 및 27~30면.

〔그림 10〕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축실시설계용역의 외부공간계획

외부 경작체험공간(다랭이 논, 밭, 과수원)

진입공간(파머스 마켓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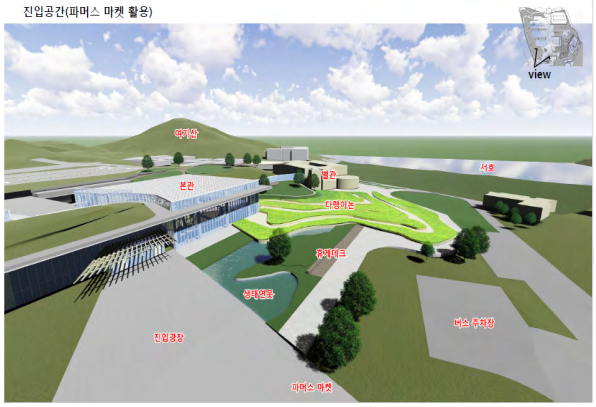

○ 셋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의 조직체계 및 공간배치계획에서 '공작팀'의 설치와 '제작공방실'을 배치하였으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은 건축실시설계용역 건축계획의 공간배치계획에서 '제작공방실'을 삭제하고 조직체계에서 '공작팀'을 배제하기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에 따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조직체계는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은 현재 공작팀의 배제에 따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조직체계의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체계적인 운영방안 연구

제3장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근거 법제화방안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주체의 조직유형 분석
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주체의 조직형태 선정
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입법방안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주체의 조직유형 분석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이 국가재정으로 건립하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주체의 설립근거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주체의 조직형태를 검토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하여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이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에 따라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을 건립한 이후 이를 운영할 운영주체의 법적 형태로서의 조직유형을 살펴보면, 행정기관(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 책임운영기관, 법률에 근거를 둔 특수법인,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법인의 지정이나 위탁의 유형이 가능하다.[20)]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은 농업역사문화전세체험관 운영주체의 조직유형을 국가재정의 투자형태로 검토하고 있으나, 그 설립근거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그 법인의 법적 형태를 중심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주체의 설립근거를 법제화할 때에 그 운영주체의 조직유형을 법적 형태 중심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그 법적 형태에 따라 설립근거의 형태나 적용되는 관계 법령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1-1. 행정기관(중앙부처)의 소속기관

1-1-1. 소속기관 조직유형의 개념 및 종류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주체를 행정기관(중앙부처)의 소속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업무 중 농경역사·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조사·연구·전시체험·교육 및 교류 등 농업역사문화의 보존 및 확산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부속기관으로 설립·운영하는 조직형태를 말한다.

- 「정부조직법」은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은 '소속기관'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으로 정의함(동통칙 제2조제5호)과 동시에 '부속기관'을 행정권의

20) 본 연구는 국가가 건립하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독립된 법인 형태의 운영주체 설립과 그 법제화 방안의 탐구 및 제시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중앙부처)이 직접 하부조직(부서)을 통해 운영하는 국립박물관(경찰청의 국립경찰박물관, 외교통상부의 외교사전시실, 과학기술통신부 우체국의 우정총국(체신기념관) 및 우정박물관, 국세청의 조세박물관) 등의 유형은 연구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동통칙 제2조제3호). 따라서 일반적으로 각 부처의 소속기관 중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을 부속기관이라 한다.[21)]

○ 또한 중앙부처의 부속기관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조직들은 해당 직제 또는 설치법의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중앙부처의 소속기관이나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부서) 또는 그 소속기관장 산하의 소속기관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소속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 있는데(농림축산식품부직제 제2조제1항), 이들 소속기관들은 농림축산식품부직제에 그 설치근거(직무, 기관장, 하부조직)와 정원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장 소속하에 국립농산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 또한 국가가 설립한 국립박물관 총 40개 중 26개가 중앙부처의 소속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6개는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6〕 중앙부처의 소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립박물관

국립박물관 (26개)		기관명	설립주체	법인형태		
소재지	등록			운영주체	법적 근거	법적 성격
서울	1종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소속기관
서울	1종	국립한글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소속기관
서울	미등록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청	문화재청	직제	소속기관
서울	2종	관세박물관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하부조직
서울	1종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소속기관
서울	1종	국악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하부조직
서울	1종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소속기관
서울	1종	육군박물관	국방부	육군사관학교	사관학교설치법	소속기관 하부조직

21) 김창규 외(2012.12), 문화유산기록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촉진방안연구, 문화재청, 180면.

국립박물관 (26개)		기관명	설립주체	법인형태		
소재지	등록			운영주체	법적 근거	법적 성격
경기	1종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문화재청	문화재청	직제	소속기관
강원	1종	국립춘천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강원	미등록	강원경찰박물관	경찰청	강원경찰청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하부조직
광주	1종	국립광주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대구	1종	국립대구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충북	1종	국립청주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충북	1종	공군박물관	국방부	공군사관학교	시관학교설치법	소속기관 하부조직
충남	1종	국립공주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충남	1종	국립부여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충남	2종	칠백의총관리소 (기 념 관)	문화재청	문화재청	직제	소속기관
충남	1종	충무공이순신 기념관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직제	소속기관 하부조직
전북	1종	국립전주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전북	1종	국립미륵사지 유물전시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전남	1종	국립나주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경북	1종	국립경주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경남	1종	국립김해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경남	1종	국립진주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제주	1종	국립제주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1-1-2. 소속기관 조직유형의 특성 및 장단점

○ 행정기관(중앙부처)의 소속기관(부속기관)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관료제적 특성을 가지며 계층적 통제·분업 및 전문화·공식화 등 전통적인 조직이론에 근거한 전형적인 기계적 조직으로서, 정부조직법과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조직구성원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직원의 인사권은 소관 부처장이 보유하고, 정원의 관리나 하부조직의 설치는 직제 또는 해당 설치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 또한 행정기관(중앙부처)의 소속기관 조직유형은 기관의 업무가 정책 연계성이 높아 중앙부처의 일상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보안·공안·위기관리 등 높은 수준의 공권력적 업무가 요구되고, 정책결정과 집행기능이 혼재 또는 성과의 가시적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공공성 추구가 중요하며, 공공적 성격이 강한 업무에 적합한 조직형태이다.

○ 이와 같이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 설립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

- 국가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공공성·책임성 및 전문성의 확보가 용이하여 안정적인 기관의 운영이 가능하고, 국가주도의 업무집행 및 대국민서비스기능의 강화를 통한 공익성을 제고하며, 농업역사문화의 유물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체험 등 본연의 국가업무를 정부가 일임하여 농업역사문화 보존 및 확산정책의 지속적 유지가 가능하고, 문화사업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저조한 수익구조에 구애받지 않으며 정부의 재정적 지지를 기반으로 국민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 및 참여활동에 대한 비용부담을 감소시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 시장의 경제적 여건이나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비효율성, 낮은 생산성, 비탄력성으로 인하여 조직의 선진화 구축에 저해되고, 국가의 행정조직 감량이라는 국가정책방향에 비추어 조직구성원인 공무원의 정원 확보 및 조직설립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경직적인 행정조직문화 속에서 고도화되고 전문적인 민간역량의 발휘가 제한된다는 등의 단점이 있다.

〔표 7〕 중앙부처 소속기관 조직유형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 국가재정의 안정적 확보로 공공성과 책임성, 전문성 확보가 용이하고 안정적인 기관의 운영이 가능 - 국가주도의 업무집행 및 대국민서비스기능의 강화를 통한 공익성 제고 - 농업역사문화의 유물수집, 보존, 조사연구, 전시체험 등 본연의 업무를 정부가 일임하여 농업역사문화 보존 및 확산정책의 지속적 유지가 가능 - 문화사업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저조한 수익구조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의 재정적 지지를 기반으로 국민의 비용부담을 감소시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	- 시장의 경제적 여건이나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비효율성, 낮은 생산성, 비탄력성으로 인하여 조직의 선진화 구축에 저해 - 국가의 행정조직 감량이라는 국가정책방향에 비추어 조직구성원인 공무원의 정원 확보 및 조직설립의 어려움이 예상 - 경직적인 행정조직문화 속에서 고도화되고 전문적인 민간역량의 발휘가 제한

1-2. 행정기관(중앙부처)의 소속책임운영기관

1-2-1. 소속책임운영기관 조직유형의 개념 및 종류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주체를 행정기관(중앙부처)의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책임운영기관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업무 중 농경역사·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조사·연구·전시체험·교육 및 교류 등 농업역사문화의 보존 및 확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으로서 책임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조직형태를 말한다.

-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책임운영기관법 제2조제1항).
-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지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설치된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으로서 설치된 중앙책임운영기관이 있다(동법 제2조제2항).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책임운영기관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조직형태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이다.

○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사무성격에 따라 종전에는 행정형 책임운영기관과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했으나, 지금은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 문화형 책임운영기관, 의료형 책임운영기관,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 기타 유형 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되고 있다(책임운영기관법 제2조제3항).

- 종전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되며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측정이 가능한 사무를 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은 특별회계로 운영되며 재정수입 중 자체수입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고 자체수입의 2분의 1 미만인 기관 중에서 자체수입의 성격, 자체수입 확대의 잠재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가 기업형 기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심의·의결한 기관을 의미했다.[22)]

○ 책임운영기관의 사무성격에 따른 현행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 문화형 책임운영기관, 의료형 책임운영기관,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 기타 유형 책임운영기관의 주된 사무에 비추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설립하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운영주체는 문화형 책임운영기관 형태로 설치가 가능하다.

-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은 각종 정보·통계에 대한 조사·분석·생산 및 제공, 각종 물품·물자의 표준화 및 검사,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기술에 대한 시험·연구·개발 및 지원을 주된 사무로 한다(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특정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민간인에 대한 교육훈련, 특정 분야의 진흥을 위한 교육 관련 사업을 주된 사무로 한다(동법시행령 제1조의2제2항).
- 문화형 책임운영기관은 공연 및 예술의 보급·발전, 정부정책 홍보를 위한 신문·잡지·방송·영화 등 홍보물의 제작 및 제작 지원, 예술작품·유물·자료 등의 수집·전시·교육 및 연구, 인쇄자료·필사자료·시청각자료· 그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대여를 주된 사무로 한다(동법시행령 제1조의2제3항).
- 의료형 책임운영기관은 환자의 진료·지도, 의료요원의 교육훈련, 의료기술의 시험·연구를 주된 사무로 한다(동법시행령 제1조의2제4항).
-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은 정부 소유의 공용 및 공공용 시설·장비, 그 밖의 재산의 운영·관리 및 조성을 주된 사무로 한다(동법시행령 제1조의2제5항).
- 기타 유형 책임운영기관은 조사연구형·교육훈련형·문화형·의료형·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주된 사무로 한다(동법시행령 제1조의2제6항).

○ 현재, 책임운영기관은 중앙책임운영기관 1개(특허청) 및 소속책임운영기관 49개의 총 50개 기관이 설치·운영 중이고, 이 가운데 35개 기관이 일반회계로, 13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으로, 2개 기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다.

22) 김창규 외(2012.12), 문화유산기록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촉진방안연구, 문화재청, 182면.

〔표 8〕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 현황[23)]

사무성격에 따른 구분		지위에 따른 구분		정원 (총정원의 한도)	예산회계	비고 (소속기관의 유무)
		소속책임 운영기관	중앙책임 운영기관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	조사 및 품질관리형 기관	국립종자원		201명	일반회계	○
		국토지리정보원		113명	일반회계	
		항공교통본부		305명	일반회계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54명	일반회계	
		경인지방통계청		337명	일반회계	○
		동북지방통계청		294명	일반회계	○
		호남지방통계청		338명	일반회계	○
		동남지방통계청		224명	일반회계	○
		충청지방통계청		237명	일반회계	○
		항공기상청		115명	일반회계	○
	연구형 기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78명	일반회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418명	일반회계	○
		국립생물자원관		112명	환경개선 특별회계	
		국립수산과학원		553명	일반회계	○
		통계개발원		48명	일반회계	
		국립문화재연구소		190명	일반회계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72명	일반회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326명	일반회계	○
		국립축산과학원		319명	일반회계	○
		국립산림과학원		246명	일반회계	○
		국립수목원		63명	일반회계	
		국립기상과학원		109명	일반회계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		국립국제교육원		72명	일반회계	
		통일교육원		66명	일반회계	
		한국농수산대학		101명	일반회계	
		해양수산인재개발원		24명	일반회계	
		관세국경관리연수원		51명	일반회계	

23)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4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이다.

사무성격에 따른 구분	지위에 따른 구분		정원 (총정원의 한도)	예산회계	비고 (소속기관의 유무)
	소속책임 운영기관	중앙책임 운영기관			
문화형 책임운영기관	국립중앙과학관		78명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국립과천과학관		77명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
	국방홍보원		158명	일반회계	
	국립중앙극장		94명	일반회계	
	국립현대미술관		98명	일반회계	
	한국정책방송원		113명	일반회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2명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의료형 책임운영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		316명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
	국립나주병원		179명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국립부곡병원		176명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
	국립춘천병원		115명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국립공주병원		125명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국립마산병원		99명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국립목포병원		73명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국립재활원		318명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
	경찰병원		600명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	해양경찰정비창		215명	일반회계	
	국방전산정보원		41명	일반회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90명	일반회계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94명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기타 유형 책임운영기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52명	일반회계	
	국세상담센터		140명	일반회계	
		특허청	직제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 또한 중앙부처의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조직들은 해당 직제, 책임운영기관법, 기본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이나 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하부조직(부서)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은 한국농수산대학 및 국립종자원이 있는데(농림축산식품부직제 제2조제2항), 이들 소속책임운영기관들은 농림축산식품부직제에 그 설치근거(직무)와 종류별·계급별 정원 관리규정을 두고 그 하부조직 및 직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에 두고 있다. 이 가운데 국립종자원은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직제시행규칙이 정하는 지원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 국가가 설립한 국립박물관 총 40개 중 5개가 중앙부처의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4개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하부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9〕 중앙부처의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립박물관

국립박물관 (5개)		기관명	설립주체	법인형태		
소재지	등록			운영주체	법적 근거	법적 성격
서울	1종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책임운영기관)	직제 책임운영기관법 기본운영규정	책임운영기관 하부조직
경기	1종	지도박물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책임운영기관)	직제 책임운영기관법 기본운영규정	책임운영기관 하부조직
경기	1종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산림청	국립수목원 (책임운영기관)	직제 책임운영기관법 기본운영규정	책임운영기관 하부조직
전남	미등록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문화재청 (책임운영기관)	직제 책임운영기관법 기본운영규정	책임운영기관
경남	미등록	남부산림과학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책임운영기관)	직제 책임운영기관법 기본운영규정	책임운영기관 하부조직

1-2-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

1-2-2-1.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사무 중 책임운영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책임운영기관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설치는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성과 측정기준을 개발하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무,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업 등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요청하는 때에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사유 및 그 배경 설명서, 소요정원의 명세, 다음 회계연도의 소요예산 및 수입 명세서의 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1-2-2-2.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의 임용

○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기관장)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능력 및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선발시험을 거쳐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책임운영기관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2).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의 적정 임기를 보장하여 기관장이 역량을 실효성 있게 발휘할 수 있도록 2년 이상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임용계약서에는 기관장이 수행할 직무의 내용, 기관장의 임용기간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목표 및 그에 따른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성과에 따른 처우에 관한 사항, 근무기간의 연장 또는 면직에 관한 사항, 기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 기관장의 임용과 관련하여 책임운영기관법이나 기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의 「개방형직위 규정」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에서 정하는 개방형 임용절차를 준용한다.

〔그림 11〕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의 임용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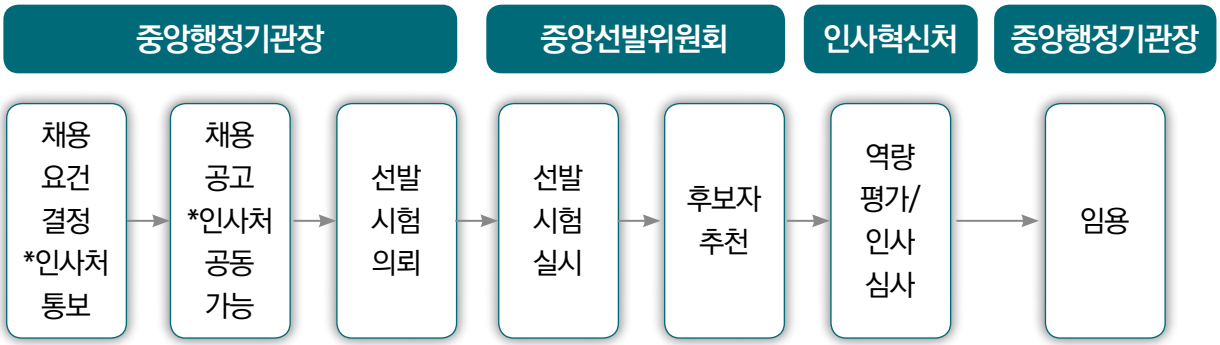

※ 기관장이 4급 직위인 경우 역량평가/인사심사 제외

1-2-2-3.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기본운영규정 제정 및 사업계획 수립

○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책임운영기관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2).

- 기본운영규정에는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운영과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 공무원의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기관장은 기본운영규정을 정하는 경우 또는 기본운영규정에 포함된 사항 중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나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정의 경제성 제고, 서비스 수준의 향상, 경영의 합리화 등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여 기관장에게 부여하고, 기관장은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운영계획에 따른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책임운영기관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8조).

- 사업운영계획은 사업목표에 따라 임용계약기간 동안 기관이 추진해야할 중기계획으로서, 사업운영목표, 주요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연도별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구체화시키기 위한 세부 운영계획으로서, 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림 12〕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의 사업승인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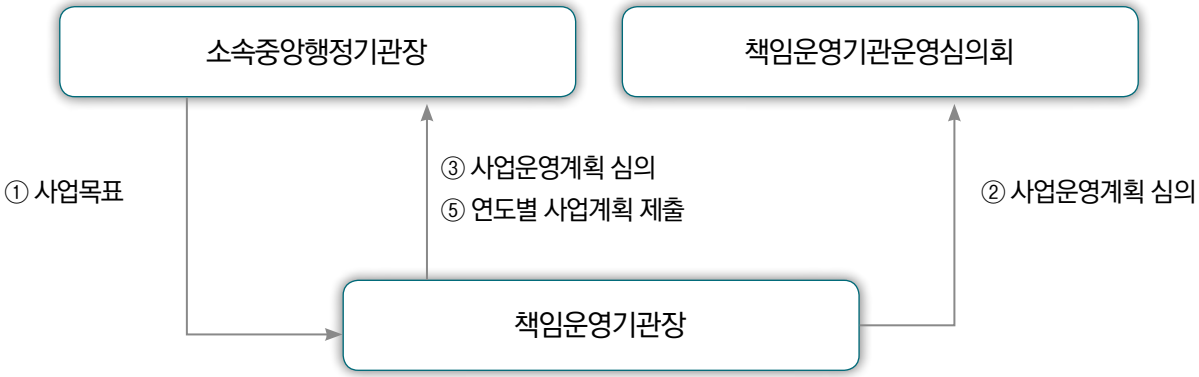

1-2-2-4.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

○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을 둘 수 있고, 소속운영책임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책임운영기관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5조).

○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 한도는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의 정원은 부령(총리령)으로 정하되, 종류별·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의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책임운영기관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부령(총리령)으로 표시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기관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의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조정을 요구하고, 기관장이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종류별·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의 정원을 정하거나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계획을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류별·계급별 정원계획 또는 고위공무원의 정원계획에 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그리고 소속책임운영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조직은 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고, 기관장은 업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급별 정원의 50% 이내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책임운영기관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7조)

1-2-2-5.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인사관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지나, 책임운영기관법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임용권을 기관장에게 위임한다(책임운영기관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8조).

○ 기관장은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 또는 인사적체해소 등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책임운영기관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0조의2).

○ 또한 기관장은 사업의 평가 결과에 따라 소속 기관별, 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책임운영기관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2조). 그리고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책임운영기관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동법 제26조).

1-2-2-6.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관리

○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회계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일반회계,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구분·운영되고 있다(책임운영기관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3).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무가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두는데,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재정수입 중 수입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고 그 자체 수입의 비율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로서 자체 수입의 성격, 자체 수입 확대의 잠재성 및 기관 운영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그리고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은 정부기업으로 보고,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책임운영기관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정부기업회계법」을 적용한다.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설치한 소속책임운영기관을 제외한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로 기관을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나 회계변경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추가적인 재원부담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 등 회계변경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한다. 이 경우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하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에 준하는 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침을 따로 정한다(책임운영기관법 제34조).

○ 기관장은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초과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해당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와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국내여비·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일시적인 업무 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등 간접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책임운영기관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26조).

- 기관장이 초과수입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보한다.

○ 또한 기관장은 예산 집행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마다 기관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출예산 또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간에 전용할 수 있고, 매 회계연도의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해당 회계연도 경상적 성격의 경비 세출예산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책임운영기관법 제36조 및 제37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

1-2-2-7.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기탁물품 접수 및 총액인건비제 운영

○ 연구형 책임운영기관, 문화형 책임운영기관, 의료형 책임운영기관 또는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 중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물품을 그 기관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책임운영기관법 제39조의2, 동법시행령 제29조의2).

○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정원 및 보수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조직·정원 및 보수의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책임운영기관법시행령 제30조).

〔표 10〕 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비교

구 분		행정기관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책임운영기관
조직정원	정원관리	4급 이상 : 대통령령 4·5급 이하 : 부령	총정원 : 대통령령 종류별·계급별 정원 : 부령 또는 총리령 직급별 정원 : 기본운영규정	중앙행정기관과 동일
	하부조직	국장급 이상 : 대통령령 과단위 기구 : 부령	소속기관 : 대통령령 하부조직 : 기본운영규정	
	임기직활용	-	계급별 정원의 50% 이내	
인사관리	기관장채용	장관이 인사권 행사	임기제로 공개채용(5년 이내)	대통령이 임명(정무직), 임기 2년, 1차 연임 가능
	직원인사권	장관(청장)이 행사	장관에게 임용권이 있으나, 임용권을 위임받아 기관장이 행사	중앙행정기관과 동일
	인사교류	장관(청장)이 실시	기관장과 협의하여 실시	
	성과상여금	공무원보수규정 적용	기관장이 별도 책정 가능 (소속장관 승인)	
예산회계	회계방식	일반회계	일반회계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별도 책임운영기관 항목 설치) 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구 분		행정기관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책임운영기관
예산회계	예산편성지침	기획재정부의 동일기준적용, 일괄작성시달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별도 작성 가능	
	초과수익금	사용불가(예외적 인정)	간접비용 사용가능(사후 통보)	
	예산전용	기획재정부장관 승인하에 제한적으로 이·전용 허용	원칙적으로 전용 위임받아 기관장의 자체전용 가능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용범위 확대 가능	
	예산이월	경상적 경비의 10% 이내	경상적 경비의 20% 이하	

1-2-3. 소속책임운영기관 조직유형의 특성 및 장단점

○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공식적이고 세부적인 절차와 규정에 의한 계층적인 조직관리를 강조하는 종전의 기계적 조직과 달리 세부적인 절차와 규정에 의한 통제를 대폭 줄이고, 일선관리자에게 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공공조직의 관료제적 성격을 탈피하도록 하면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1999년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24)]

○ 이러한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운영원리는 기관장을 대내외 공모를 통해 임기직으로 임용하고, 관할부처 기관장과 해당 기관장간 사업 및 성과목표 계약을 체결하며, 해당 기관장에게 조직·인사·예산 등 운영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해당 기관운영 성과에 대하여 관할부처 기관장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구조이다.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기준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집행적 성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과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의 측정이 가능한 사무이거나,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 확보할 수 있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 이를 구체화하면,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를 취급하는 기관, 정책연계성이 낮으나 사업적·집행적 사무비율이 높고 성과측정이 가능한 기관, 자율성을 부여할 경우에 행정운영의 효율성 및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기관 등을 의미한다.

○ 또한 행정기관(중앙부처)의 소속책임운영기관 조직유형은 중앙부처와 책임한계가 명확한 집행적 성격의 업무, 공공서비스 생산과정 및 산출물에 대한 계량적 측정이 비교적 용이하고 성과평가가

24) 김창규 외(2012.12), 문화유산기록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촉진방안연구, 문화재청, 181~182면.

가능한 업무, 서비스이용자 부담원칙으로 상당한 정도의 안정적인 자체 재정 수입원이 있는 업무, 업무 성격상 영리성 또는 시장성이 거의 없어 민간업체를 유치하기 어려워 정부가 직접 제공하거나 지원하여야 하는 업무에 적합한 조직형태이다.

○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행정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설립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

- 기관의 기관장 및 구성원에게 성과 향상을 위한 권한과 책임을 포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그 기관에 대한 발전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고, 관리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자발적인 사업경영에 따른 효율성의 제고가 가능하며, 기관의 업무수행 상 세부과정에 대한 상위기관의 통제를 최소화하여 업무의 탄력성 제고 및 대국민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정부통제의 간단성과 명료성 및 기관목표의 명확화와 성과평가가 수월하며, 정부조직의 규모와 인원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이 비구체적일 경우 책임소재가 불투명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산하기관으로서 각종 통제를 피하기 어려우며 평가의 부담에 따른 자율적 운영의 한계가 있고, 업무의 독자성과 지속성 보다 단기적이며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할 우려가 높고, 정책결정권자와 집행자간의 환류장치 미흡에 따라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 저하의 우려가 있고, 전문가의 영입이나 보충이 어려울 경우 마케팅, 경영 등 업무전반을 공무원이 관리함에 따른 전문성 약화의 우려가 있고, 책임운영기관-주무부처-행정안전부의 3단계 평가에 따른 주무부처와의 정책연계성 저하의 우려가 있는 등의 단점이 있다.

〔표 11〕 중앙부처 소속책임운영기관 조직유형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 기관의 기관장 및 구성원에게 성과 향상을 위한 권한과 책임을 포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그 기관에 대한 발전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능 - 관리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자발적인 사업경영에 따른 효율성 제고가 가능 - 기관의 업무수행 상 세부과정에 대한 상위기관의 통제를 최소화하여 업무의 탄력성 제고 및 대국민서비스의 질 향상 기대 - 정부통제의 간단성과 명료성 및 기관목표의 명확화와 성과평가가 수월 - 정부조직의 규모와 인원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	-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이 비구체적일 경우 책임소재의 불투명이 존재 - 중앙행정기관의 산하기관으로서 각종 통제를 피하기 어렵고 평가의 부담에 따른 자율적 운영의 한계가 존재 - 업무의 독자성과 지속성 보다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할 우려가 존재 - 정책결정권자와 집행자간의 환류장치 미흡에 따라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 저하의 우려가 존재 - 전문가의 영입이나 보충이 어려울 경우 마케팅, 경영 등 업무전반을 공무원이 관리함에 따른 전문성 약화의 우려가 존재 - 책임운영기관-주무부처-행정안전부의 3단계 평가에 따른 주무부처와의 정책연계성 저하의 우려가 존재

1-3.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

1-3-1. 특수법인 조직유형의 개념 및 종류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주체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은 민법이나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그 설립근거를 두거나 설립특별법을 제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업무 중 농경역사·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조사·연구·전시체험·교육 및 교류 등 농업역사문화의 보존 및 확산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조직형태를 말한다.

- 민법이나 상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법인을 일반법인이라 하고, 국가가 특정한 정책이나 공공이익의 달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법이나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그 설립근거를 두거나 설립특별법을 제정하여 설립하는 법인을 특수법인이라 한다.
- 특수법인은 국가기관과 독립된 법인체로서 자율적인 경영이 보장되지만, 국가의 정책 및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률에 설립근거를 두거나 설립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가의 감독권한을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25)]

○ 국가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출연·출자하여 영리추구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자율적 운영을 통한 책임경영체제를 보장하나, 그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가지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독립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 공공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립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는다.
- 공공기관은 공공성 및 기업성의 정도에 따라 공기업으로서 시장형공기업·준시장형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서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되고 있다(공공기관운영법 제5조).
- 공공기관 중 공기업은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이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준정부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관은 관련 법률의 규정이나 설립특별법에 따라 직접 설립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5) 양건열 외(2013.12), 한국미술진흥재단 설립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00면.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정관, 이사회, 임원, 예산회계, 경영평가 등 그 운영 전반이 영리법인(상법)에 준하여 관리·감독되고 있으나, 기타 공공기관은 비영리법인(민법)에 준하여 관리되고 있다.

〔표 12〕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현황[26)]

구 분 (332)	관할부처	기 관 명
시장형 공기업 (14)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21)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화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6)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화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금융위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3)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미래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2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1.25.),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

구 분 (332)	관할부처	기 관 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3)	문화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안전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식약청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기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타 공공기관 (208)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구 분 (332)	관할부처	기 관 명
기타 공공기관 (208)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미래부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IOM이민정책연구원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자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화부	(재)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의전당, (재)정동극장, (재)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	(재)한식재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산자부	㈜강원랜드,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원자력연료(주), 한전 의료재단법인 한일병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복지부	(재)한국보육진흥원,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 한약진흥재단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구 분 (332)	관할부처	기 관 명
기타 공공기관 (208)	국토부	㈜워터웨이플러스, ㈜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원
	해수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항로표지기술협회
	금융위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보훈처	88관광개발(주)
	식약처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중기청	(재)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 현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과 성격이 유사한 체험전시관이나 과학관· 박물관으로서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국립박물관재단, 태권도원 태권도박물관을 운영하는 태권도진흥재단, 국립여성사전시관을 운영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나 국립해양박물관 등은 기타 공공기관의 형태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 공공기관운영법에서 기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은 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동법 제6조), 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동법 제7조), 경영공시(동법 제11조), 통합공시(동법 제12조), 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동법 제13조),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동법 제14조), 공공기관의 혁신(동법 제1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동법 제53조),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동법 제53조의2), 의원면직의 제한(동법 제53조의3) 등이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공기관이 신설된 때에는 회계연도 중이라도 지정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을 새로이 지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지정의 대상이 되는 기관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원칙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공공기관의 신규 지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동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8조).

- 주무기관의 장은 법률에 따라 법률안에 정부의 출연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기관, 법률안에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합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관 등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관의 사업범위 및 내용. 신설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재화, 향후 5년간의 연간 수입 및 정부지원 예산 소요, 향후 5년간의 조직·인력 운영계획, 기존에 설립된 유관기관 현황,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첨부한 계획서를 제출하며 그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 신설 및 재정지원 등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주무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9조).
- 공공기관은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정관·사채원부·지침·예규 등 내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변상책임·징계·시정·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사항, 징계제도 관련 정보 및 징계처분 결과 등을 포함한 징계운영 현황, 소송현황.법률자문현황.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현황,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동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5조).
-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기본임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바람직한 서비스의 수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처리.시정절차 및 배상 등의 책임,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노력 및 계획 등이 포함된 고객헌장을 제정하여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고,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동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7조).
-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혁신수준의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 또한 국가가 설립한 국립박물관 총 40개 중 3개(국립여성사전시관, 태권도원 태권도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가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립해양박물관은 임대형민자사업(BTL)으로 건립된 이후 특수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 국립여성사전시관은 여성가족부의 과거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의2에 근거가 마련되어 설립하였으나, 지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50조에 설립·운영 근거를 두고 동법 제46조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재단법인 형태로 운영)이 운영하고 있다.
- 태권도원 태권도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설립근거를 둔 태권도진흥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 국립해양박물관은 임대형민자사업으로 2012년 건립·개관 이후 해양수산부 소속의 운영지원단 형태로 운영되다가, 2014년 10월 제정·공포된 「국립해양박물관법」이 2015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인등기 절차를 거쳐 기타 공공기관 유형의 특수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27)]

〔표 13〕 중앙부처의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립박물관

국립박물관 (3개)		기관명	설립주체	법인형태		
소재지	등록			운영주체	법적 근거	법적 성격
경기	2종	국립여성사전시관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기본법 제50조	특수법인
전북	1종	태권도원 태권도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진흥및 태권도공원조성등에 관한법률 제20조	특수법인
부산	1종	국립해양박물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법	특수법인 (민간투자법인)

1-3-2. 특수법인 조직유형의 특성 및 장단점

○ 중앙부처가 설립하는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 조직유형은 국가의 공공적 및 공익적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독립된 법인으로 법률의 특별규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법인은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 정관이나 임원의 조직과 목적사업이나 재원의 운영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을 받고, 국가는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며 국유재산 무상사용, 기금 모집, 관람료 징수 등

27)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2016.1), 방문객 친화형 생활사박물관 건립타당성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137면.

법령의 특전을 부여하여 운영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는 구조이다.

-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 조직유형은 일정한 재원·시설·인력 확보로 독립적 조직운영이 가능한 사업, 공공성 차원에서 정부가 서비스 공급에 일정한 책임을 져야하는 사업, 민간의 전문성 및 기업 경영방식의 도입이 가능한 사업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 또한 중앙부처가 설립하는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은 공공성이 강한 업무로서 공공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민간부문의 창의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조직의 인사·예산 등의 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확보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업무영역에 가장 적합한 조직형태이다.

○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행정기관)가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설립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28)]

- 국가기관이 아닌 독립법인체로서 자율적인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기관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기능과 변화대처능력의 제고가 가능하고, 경영효율화를 통해 신축적인 운영을 할 수 있으므로 인사, 예산·회계 및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체험전시·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우수 전문인력의 유치에 유리하고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콘텐츠 개발 및 체험전시·조사·연구 등의 수행이 가능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전문가의 도입으로 경영합리화 등을 통한 운영수익구조의 개선이 가능하며, 법규 등에 얽매이지 않고 고객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고 수요자 맞춤형 대국민서비스의 개발이 유리하며, 법률의 규정을 통한 업무의 공공성 및 국가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가능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 수익창출 위주의 운영에 따른 해당 기관의 본래 목적과 기능 상실의 우려가 있고, 서비스의 질적 개선보다는 수익성 지표인 재정자립도의 지나친 강조로 공공성 훼손의 우려가 있으며, 수익성과 단기효과에 집중하여 장기효과를 갖는 사업의 축소 및 약화의 위험이 있고, 시장경쟁원칙에 따른 서비스 유료화의 추진으로 대국민서비스 비용부담의 증가 및 서비스 질의 저하가 우려된다는 등의 단점이 있다.

28) 김창규 외(2012.12), 문화유산기록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촉진방안연구, 문화재청, 185면.

〔표 14〕 중앙부처가 설립하는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 조직유형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 국가기관이 아닌 독립법인체로서 자율적인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기관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기능과 변화대처능력의 제고가 가능 - 경영효율화를 통해 신축적인 운영을 할 수 잇으므로 인사, 예산·회계 및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이 가능 -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체험전시·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우수 전문인력의 유치에 유리하고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콘텐츠 개발 및 체험전시·조사·연구 등의 수행이 가능 - 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전문가의 도입으로 경영합리화 등을 통한 운영수익구조의 개선이 가능 - 법규 등에 얽매이지 않고 고객수요에 따른 탄력적 업무추진이 가능하며, 수요자 맞춤형 대국민서비스의 개발이 유리 - 법률의 규정을 통한 업무의 공공성 및 국가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가능	- 수익창출 위주의 운영에 따른 해당 기관의 본래 목적과 기능 상실의 우려가 존재 - 서비스의 질적 개선보다는 수익성 지표인 재정자립도의 지나친 강조로 공공성 훼손의 우려가 존재 - 수익성과 단기효과에 집중하여 장기효과를 갖는 사업의 축소 및 약화의 위험이 존재 - 시장경쟁원칙에 따른 서비스 유료화의 추진으로 대국민서비스 비용부담의 증가 및 서비스의 질 저하의 우려가 존재

1-4.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법인

1-4-1.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설립법인의 성격 및 형태

○ 민법에 의한 법인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고, 상법에 의한 법인은 상행위를 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의 사단법인이 있다.

○ 상법에 의한 법인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수익 창출을 기관의 본래의 목적과 기능으로 하며 사원(주주)으로 구성되는 사단법인이라는 점(상법 제169조, 민법 제39조)에서, 농업역사문화의 보존 및 확산이라는 국가의 정책 및 공공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주체로서의 조직형태로 부적절하다.

○ 민법에 의한 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는 점(민법 제32조 및 제33조)에서, 농업역사문화의 보존 및 확산이라는 국가의 정책 및 공공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주체로서의 조직형태로 가능하나 국가가 직접 설립할 수는 없다.

-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원총회와 이사회로 운영되며,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법인이 성립한다.
-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이사회로 운영되며,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법인이 성립한다.

1-4-2. 행정기관(중앙부처)의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지정 또는 민간위탁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 이후에 그 운영주체의 조직형태로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제3자인 민간인이 민법에 따른 설립요건을 갖추어 등기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 중인 기관이 존재하여야 한다.

○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전에 일정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이미 설립·운영 중인 제3자의 전문기관이나 유사기관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그 중에서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을 위탁하거나, 관계 법률에 지정기관의 지정조건이나 지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하나의 기관을 지정하여 독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 현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과 성격이 유사한 체험전시관이나 과학관·박물관으로서 관계 법률에 독점적 업무를 수행하는 지정기관의 지정요건이나 지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운영되는 사례는 없고, 위탁계약에 따른 민간이나 공공위탁의 사례가 공립박물관의 경우에는 많으나 국가가 설립한 박물관의 경우는 총 40개 중 1개(국립등대박물관)가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
- 국립등대박물관은 당초 해양수산부 산하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운영하다가, 2005년부터 민간경영의 창의성을 도입하여 박물관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항로표지 역사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해양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개발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 제고한다는 목적 하에 항로표지 전문연구기관이며 기타 공공기관인 (재)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가 3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며 위탁운영하고 있다.

〔표 15〕 공공기관의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립박물관

국립박물관(1개)		기관명	설립주체	법인형태		
소재지	등록			운영주체	법적 근거	법적 성격
경북	1종	국립등대박물관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기술협회	위탁계약	위탁법인

- 공립박물관의 민간위탁은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성 확보, 서비스 강화 및 인지도 향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공무원 직원 충원의 곤란에 따른 운영인력 부족의 해소 등을 이유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나타났다.[29)]

〔표 16〕 공립박물관 민간위탁 운영상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을 통해 지역주민 문화수준의 질적 향성에 도모 –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박물관 건립에서 운영에 이르기 까지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역 기반의 민간부문 주도적 참여를 통해 지역적·문화적 공감대에 바탕을 둔 지역커뮤니티 형성과 박물관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민간사업자의 경쟁을 통한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제고	– 심각한 재정의 부족에 따른 운영의 부실 – 전문인력의 부족에 따른 파행적인 박물관의 운영 – 박물관 기능에 필요한 최소 시설의 미비 – 박물관운영 책임소재의 불확실성에 따른 박물관운영의 파행 – 직접 운영과 위탁운영의 이원적 운영에 따른 비효율적 운영 – 박물관 직원의 고용불안에 따른 박물관 고유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의 상실 – 수탁기관의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나친 규제에 따른 자율적 운영의 제약 –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식 또는 몰아주기식 선정 및 재위탁 계약에 따른 수탁기관의 운영 경쟁력 저하 – 지방자치단체의 권위적 자세에 따른 자율적 운영의 제약

○ 그러나 본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건립하고 있는 농업역사문화체험전시관의 설립근거 제정을 위한 입법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므로 국가가 직접 법제화하여 추진할 수 없는, 제3자인 개인의 자율의사에 따라 설립되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조직형태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9)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2016.1), 방문객 친화형 생활사박물관 건립타당성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125~129면.

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주체의 조직형태 선정

2-1. 운영주체의 법인화 추세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건립은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한 농업·농촌·식품산업 정책을 체험전시 등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관련 유물을 수집·보존·관리, 이를 위한 연구·조사·교육을 집행하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서 국가와의 정책연계성이 높은 사업이다.

-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업무 중 농경역사·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조사·연구 및 전시체험·교육·교류 등을 통한 농업역사문화의 보존 및 확산업무는 농업식품기본법의 기본이념으로서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국가정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공공업무이다.

○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과 같이 공공성이 강조되는 유물의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체험 등 국가정책과 연계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박물관이나 과학관들은 종래 국가의 소속기관이나 책임운영기관의 형태로 설립·운영되었다.

- 박물관이나 과학관은 운영 주체와 규모, 소장품의 성격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일반대중의 문화향유와 공공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항구적 기관으로서의 항구성, 영리가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서의 비영리성, 고유의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30)]
- 국가가 설립한 국립박물관 총 40개 중 중앙부처가 하부조직(부서)으로 운영하는 박물관 5개, 소속기관으로 운영하는 박물관 26개,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는 박물관 5개 등 전체 국립박물관의 90%가 중앙부처의 직제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17〕 국립박물관의 조직형태 분석결과

국립박물관(40개)		기관명	설립주체	법인형태		
소재지	등록			운영주체	법적 근거	법적 성격
서울	1종	국립경찰박물관	경찰청	경찰청	직제	하부조직
서울	미등록	외교사전시실	외교통상부	외교통산부	직제	하부조직

30) (사)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2016.5), 새만금박물관 건립방안 구상 연구, 새만금개발청, 174면.

국립박물관(40개)		기관명	설립주체	법인형태		
소재지	등록			운영주체	법적 근거	법적 성격
서울	미등록	우정총국/휴관 (체신기념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	직제	하부조직
충남	미등록	우정박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	직제	하부조직
세종	1종	조세박물관	국세청	국세청	직제	하부조직
서울	1종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소속기관
서울	1종	국립한글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소속기관
서울	미등록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청	문화재청	직제	소속기관
서울	2종	관세박물관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하부조직
서울	1종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소속기관
서울	1종	국악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하부조직
서울	1종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소속기관
서울	1종	육군박물관	국방부	육군사관학교	사관학교설치법	소속기관 하부조직
경기	1종	세종대왕유적 관리소	문화재청	문화재청	직제	소속기관
강원	1종	국립춘천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강원	미등록	강원경찰박물관	경찰청	강원경찰청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하부조직
광주	1종	국립광주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대구	1종	국립대구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충북	1종	국립청주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충북	1종	공군박물관	국방부	공군사관학교	시관학교설치법	소속기관 하부조직

국립박물관(40개)		기관명	설립주체	법인형태		
소재지	등록			운영주체	법적 근거	법적 성격
충남	1종	국립공주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충남	1종	국립부여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충남	2종	칠백의총관리소 (기 념 관)	문화재청	문화재청	직제	소속기관
충남	1종	충무공이순신 기념관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직제	소속기관 하부조직
전북	1종	국립전주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전북	1종	국립미륵사지 유물전시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전남	1종	국립나주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경북	1종	국립경주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경남	1종	국립김해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경남	1종	국립진주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제주	1종	국립제주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기관)	직제	소속기관
서울	1종	국립극장 공연 예술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극장 (책임운영기관)	직제 책임운영기관법 기본운영규정	책임운영기관 하부조직
경기	1종	지도박물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책임운영기관)	직제 책임운영기관법 기본운영규정	책임운영기관 하부조직
경기	1종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산림청	국립수목원 (책임운영기관)	직제 책임운영기관법 기본운영규정	책임운영기관 하부조직
전남	미등록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문화재청	문화재청 (책임운영기관)	직제 책임운영기관법 기본운영규정	책임운영기관
경남	미등록	남부산림과학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책임운영기관)	직제 책임운영기관법 기본운영규정	책임운영기관 하부조직

국립박물관(40개)		기관명	설립주체	법인형태		
소재지	등록			운영주체	법적 근거	법적 성격
경기	2종	국립여성사전시관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기본법 제50조	특수법인
전북	1종	태권도원 태권도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진흥및 태권도공원조성등에 관한법률 제20조	특수법인
부산	1종	국립해양박물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법	특수법인 (민간투자법인)
경북	1종	국립등대박물관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기술협회	위탁계약	위탁법인

○ 그러나 최근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과 유사한 박물관이나 과학관의 성격이 세계적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관람객 중심으로 변모하면서 국내 문화기관의 경영체제 변동이 요구되고 있다.[31)]

- 유럽에서 1960~1970년대 박물관사업의 철학과 수익창출 이론이 정립되고, 국내 에서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제고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욕구 증가로 인한 재정 확대의 필요,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국가재정 지원의 감소, 비영리기관으로서의 수익창출 한계에 따른 자구책 마련의 필요 등이 요구되자 국내 박물관들은 재정확보를 위하여 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운영 등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추진하게 되었다.
- 또한 2008년 경기도 공립박물관들의 법인화정책 시행[32)]을 계기로 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의 법인화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방안 공표를 하면서 법인화정책에 대한 논쟁이 공론화되고,[33)] 2013년 국립한글박물관 설립에 따른 법인화가 문제되었으나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34)] 2015년 해양수산부의 국립해양박물관은 「국립해양박물관법」에 따른 법인으로 설립되게 되었다.[35)]

31)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2016.1), 방문객 친화형 생활사박물관 건립타당성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134~137면.

32) 경기도는 2008년 3월 도립박물관 및 도립미술관을 경기문화재단의 소속기관으로 통합·관리하는 법인화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당시 경기문화재단의 소속기관으로 경기박물관·경기도자박물관·경기도미술관·백남준아트센터·실학박물관·경기창작센터 등 6개의 기관이 있었으나, 2011년 전곡선사박물관·어린이박물관이 포함되어 현재 8개의 기관을 두고 있다.

33) 국립현대미술관의 법인화 논의는 국가행정조직의 슬림화와 국가재정부담의 경감을 위한 중앙부처의 22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특수법인화 추진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2012년 12월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공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란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34) 국립한글박물관의 법인화 논의는 설립 당시 공공시설의 국립화에 따른 국가조직의 비대화와 운영효율성 저하, 공무원조직의 경직성과 순환보직 탈피를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나, 법인화 반대 및 비판 여론과 국립한글박물관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 설치되었다.

35) 국립해양박물관의 법인화 논의는 개관 이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접목하여 공무원조직의 경직성과 비전문성 극복, 전문인력 영입의 용이성, 기부금 모집 등에 의한 재정 확충의 용이성 등을 이유로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다.

- 국립한글박물관과 국립해양박물관의 설립과정에서 당시 제기된 법인화 논의의 정당화 근거와 반대이유는 다음과 같다.

〔표 18〕 국립한글박물관과 국립해양박물관의 법인화 논의

기 관	정당화 근거	반 대 이 유
국립한글박물관	- 공공시설의 국립화에 따른 국가조직 운영의 비대화 및 효율성 저하 - 공무원조직의 경직성 및 순환보직의 탈피를 통한 전문성 강화와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 도모	- 경영효율성의 강조로 기관의 고유기능 및 역할수행 불가 - 박물관 전문성 결여, 한글문화재의 수집·조사·연구 제한, 전문인력 교류 불가능, 기증자료 반환문제 등의 발생 - 기관의 전문화 및 활성화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등 박물관 경험이 있는 전문공무원 조직의 순환보직 필요 - 조직운영의 정량적 성과와 효율성 요구로 수익성 없는 문화재 수집의 기피, 전시중심의 보존처리 등 국가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곤란, 외형적 평가보고중심 등 조사·연구의 질적 저하 - 수익성·재정자립도 강조로 지속적 재정투자의 곤란에 따른 연구·전시 등 공공기능 부실화 초래
국립해양박물관	-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접목해 공무원조직의 경직성 및 비전문적 사업추진의 한계 극복 - 전문성 있는 인력영입에 따른 박물관 기능의 제고 - 기부금 모집, 식당임대료 수입이나 편의시설 확충·운영에 따른 수익창출 등 재정확충 용이	- 재정확충 등 자립운영에 따른 관람료 상승 및 수익사업 증가로 박물관 고유의 공공성 및 공익적 기능 저하 - 지나친 운영효율성 강조로 관람객수 등 외형적 성과에 치중하여 유물수집·보존·연구기능 저하 - 예산 및 운영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통제로 자율성 저해 -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따른 경영효율성 저하 및 위화감 조성

2-2. 운영주체의 조직형태 선정

○ 국가가 어떤 공공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행정조직에 의하여 직접 수행할 것인지, 각종의 특수법인을 설립하고 그 특수법인에게 당해 업무를 수행하게 맡길 것인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선택하는 것은 입법적 형성의 자유에 해당한다.[36)]

36) 한국법제연구원(2010.10), 세종학당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6~27면.

○ 농림축산식품부가 건립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주체의 조직형태로서는 그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 소속책임운영기관,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의 형태가 모두 가능하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주체의 조직형태로서 가능한 소속기관, 소속책임운영기관,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 조직유형의 업무성격 적합성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37]

〔표 19〕 조직형태에 따른 업무성격의 적합성

구 분	업무성격의 적합성
소속기관	- 기관의 업무가 정책연계성이 높아 중앙부처의 일상적인 지도·감독을 필요로 하며, 보안·공안·위기관리 등 높은 수준의 공권력적 업무가 요구되고, 정책결정과 집행기능이 혼재 또는 성과의 가시적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공공성 추구가 중요하며, 공공적 성격이 강한 업무
소속책임운영기관	-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과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의 측정이 가능한 사무이거나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 확보할 수 있는 사무
특수법인	- 일정한 재원·시설·인력 확보로 독립적 조직운영이 가능한 분야, 공공성 차원에서 정부가 서비스 공급에 일정한 책임을 져야하는 분야, 민간의 전문성 및 기업 경영방식의 도입이 가능한 분야

○ 이 가운데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공공적 성격 및 국가정책을 구체화하는 집행업무라는 성격에 비추어 국가정책의 효과적 집행과 그 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강조할 때에는 국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이나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형태가 바람직하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목적은 농업·농촌·식품산업의 역사,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가치 및 생태·문화적 가치를 전시·교육·체험 등을 통해 어린이 및 도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까지 눈높이에 맞게 농업·농촌·식품산업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제공하며, 농업·농촌·식품산업 전 영역을 포괄하는 전시체험시설을 건립하여 관련 유물의 통합적 관리·보존 및 교육·연구 공간을 제공하고, 농업·농촌·식품산업을 주제로 하는 전시·교육·체험의 명소를 조성함에 있다.
- 이러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은 농업식품기본법의 기본이념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필요한 국가정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것이다.
-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은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한 농업·농촌·식품산업 정책을 체험전시 등의 방식으로

37) 김창규 외(2012.12), 문화유산기록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촉진방안연구, 문화재청, 186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관련 유물을 수집·보존·관리하며, 이를 위한 연구·조사·교육을 집행하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사업이며, 국가와의 정책연계성이 높은 사업이다.

○ 그러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일반 박물관·전시관·체험관의 복합적 성격을 가진 시설로 이루어지고 운영인력은 기존 박물관의 운영조직과 체험중심의 운영조직이 결합된 형태로 구성되며 전시체험관 및 외부공간도 유물의 전시보다는 전시체험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시설 및 운영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에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홍보 및 시설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보장하면서 민간의 전문성 및 경영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형태가 보다 적절하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의 전시체험관 전시체험계획은 농어업의 소중함과 문화 이해, 농산업에 대한 호기심과 지적 욕구 충족, 농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 제시를 목표로 관람객과 소통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발전하는 진화형 체험전시관의 지향, 콘텐츠·연출·공간·운영 등 다각적인 전시방법을 적용하는 진화형 전시체험관 구현을 그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 전시체험관의 콘텐츠 개발 및 구성은 농어업의 역사·문화·미래를 아우르는 통합전시, 미래지향적 첨단 융복합 농식품산업으로서의 이미지 부각, 관람·체험·참여·공감을 이끌어내는 상호작용 대화형 전시, 농어업의 소중함과 문화를 이해하는 전시·체험·교육으로 농어업에 대한 호기심과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공간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 그리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의 외부공간 온실은 스마트농장·아쿠아포닉 등을 도입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육공간, 아열대 및 테마식물·희귀동물 등을 전시하여 식물에 대한 관찰 및 체험을 통한 교육공간, 곤충·양서류 등을 전시하여 생물에 대한 관찰 및 체험의 교육공간으로 구성하고 있다.
- 상징마당은 농업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상징조형물로 초점경관 연출과 경관미를 조성하여 행사 및 휴게공간, 동네마당은 특색 있는 경관 연출과 유실수 체험·교육·공유를 통한 농촌의 전원 체험공간, 놀이마당은 장승·솟대·캐릭터 조형물을 배치한 다양한 재미요소의 프로그램 체험공간, 기억의 숲은 기존 수목을 활용한 역사성을 가진 휴게 및 산책공간, 덩굴식물원은 덩굴식물을 통한 미적 경관을 연출하여 기억의 숲과 연계한 휴게 및 산책 공간, 어울림마당은 힐링을 위한 산책로, 휴게마루는 데크 스탠드의 휴게공간, 축제마당은 행사 및 운동이 가능한 잔디광장으로 구성하고 있다.

○ 또한 행정의 복잡다기화에 따라 국가행정의 영역에 속하는 모든 업무를 국가의 행정조직을 통해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국가의 공공적 업무는 민간과 정부의 역할분담으로 나아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종래 국가의 업무영역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국가의 행정조직에 의존하기 보다는 국가 외의 독립법인을 설립하여 국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필요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국가의 집행업무를 독립법인의 자유로운 운영에 맡김으로서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해당 조직에게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하며 국가가 운영비 등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재원지원조치를 통해 국가업무의 집행을 안정적으로 담보하는 방식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 그리고 국가기능의 축소를 통한 작은 정부의 추구는 세계적 추세이고,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공무원의 증원과 새로운 행정조직의 증설을 자제하는 오늘날의 국가정책에 비추어 중앙부처의 소속기관이나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신설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당초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재정으로 건립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정에서 별도 법인의 설립으로 방향이 변경되었다.

○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그 시설 및 운영 측면에서 지속적인 체험전시프로그램의 개발 및 체험전시시설의 관리 등에 필요한 경영능력, 우수 전문인력의 유치 및 탄력적 운영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신분 하에 경직된 조직체계 보다는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운영의 공공성 확보와 함께 농경역사·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의 수집·보존·조사·연구 및 체험전시시설의 관리와 지속적인 전시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운영주체를 특수법인의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현실적이라 판단한다.

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입법방안

3-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입법방향

3-1-1. 조직유형별 설립근거의 형태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조직유형에 따라 그 설립근거의 입법형식이 다르다. 이것은 국가가 국가정책 및 공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행정조직에 의하여 직접 공공업무를 수행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그 특수법인에게 공공업무를 수행하게 할 때에는 그 근거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국가의 하부조직(부서)이나 소속기관 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형태로 조직을 설립할 때에는 정부조직법정주의에 따라 「정부조직법」의 하위법령인 직제에 그 설립근거 및 소속 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여야 한다.

- 국가의 하부조직(부서)으로 설립하는 때에는 직제나 직제시행규칙의 소속 국이나 과로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소속 국 또는 과에서 관장하도록 규정하게 된다.
- 국가의 소속기관으로 설립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직제 제2조(소속기관)의 제1항에 설립근거를 두고, 직제에서 장으로 독립하여 직무, 기관장, 하부조직, 각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소속기관 등을 규정하며, 직제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규정에서 정원을 규정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 그 예이다.
- 국가의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설립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직제 제2조(소속기관)의 제2항에 설립근거를 두고, 직제에서 장으로 독립하여 직무, 하부기관의 설치 등을 규정하며, 소속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책임운영기관법이 정하는 정원의 한도 내에서 직제에 규정하게 된다. 그리고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책임운영기관법에 따라 기본운영규정을 제정·운영하고, 그 소속기관이나 공무원의 정원은 책임운영기관법과 책임운영기관법시행령에서 규율하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에 규정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에는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종자원이 그 예이다.

○ 국가가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의 형태로 조직을 설립할 때에는 해당 국가정책 및 공공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특별법에 그 설립근거 및 임원·재정·회계 등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

-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은 사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형태와 재산의 출연으로 이루어지는 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농업역사문화체험전시관과 같은 박물관이나 과학관 등의 조직을 국가가 설립할 때에는 거의 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설립자의 정관 작성 후 총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정관의 제정 및 변경의 절차 및 종전 재산의 출연을 전제로 국가설립의 특성에서 바탕을 두고 있다.
-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은 국가가 본래 자신의 행정조직에 의하여 직접 수행하여야 할 공공업무를 특수법인에게 담당하게 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위상과 존립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설립근거 규정이나 특별법에 규정하게 된다.

3-1-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입법형식

○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가재정으로 건립하여 설립하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을 특수법인의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 그 설립근거를 법제화하는 입법형식은, 해당 법인의 공공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설치근거를 신설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설치근거를 두는 두 가지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공공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설치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건립과정 및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검토과정에서 법적 근거로 제시하였던 농업식품기본법 제45조에 바탕을 두고 농업식품기본법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근거를 규정하여 농업식품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식이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치근거를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농업식품기본법이 아니라 독립된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방식이다.

○ 국가가 자신의 행정조직에 의하여 직접 수행하여야 할 공공책무를 법인에게 담당할 목적으로 특수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그 국가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치근거를 농업식품기본법에 신설하는 방식은 그 공공책무의 집행과 농업식품기본법의 기본이념 및 법률체계의 통일성이 확보되고, 국회 및 정부의 입법과정이 개정절차로 간편하여 이해관계자 등에 따른 입법상의 저항이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으나, 정관의 규정 내용에 따라서는 국가의 강한 지도·감독권 행사의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 이에 대하여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해당 법인의 설립·운영·지원·육성에 관한 기본사항 및 공통 적용되는 국가의 지도·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에 따라 특수법인을 설립하거나, 「국립해양박물관법」과 같이 임대형민자사업 관련 업무의 대행 등 다른 기관과 달리 국가의 독점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특수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그 설치근거를 독립된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정하기도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치근거를 독립된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식은 해당 법인의 특성에 맞는 국가의 지도·감독과 지원조치를 차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국회 및 정부의 입법과정이 제정절차로 복잡하여 이해관계자 등에 따른 입법제정과정상의 저항이 강하고 제정법률 전체의 체계구성에 따른 관계 법률의 중복규정을 신설해야하는 등 입법기술상의 비효율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표 20〕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 입법방식의 장단점

구 분	장 점	단 점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을 통한 설립근거의 신설	- 국가책무 집행과 농업식품기본법의 기본이념 및 법률체계의 통일성 확보 - 국회 및 정부의 입법과정이 간편하여 이해관계자 등에 따른 입법상의 저항 최소화	- 정관의 내용에 따라 국가의 강한 지도·감독권 행사의 한계
독립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설립근거의 신설	- 법인의 특성에 맞는 국가의 지도·감독과 지원조치의 차별적 규정이 가능	- 국회 및 정부의 입법과정이 복잡하여 이해관계자 등에 따른 입법제정과정상의 강한 저항 - 제정법률 전체 체계구성에 따른 관계 법률의 중복규정 신설 등과 같은 입법기술상의 비효율성 존재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한 농업·농촌·식품사업 정책을 체험전시 등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관련 유물을 수집·보존·관리하며, 이를 위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식품기본법의 기본이념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필요한 국가정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2008년 농업식품기본법 제45조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또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유사한 기관의 설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가 관계법령에 따라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독점사업을 전담하여 대행 업무로 하지도 않으며, 그 사업성격에 비추어 재단법인 운영형태의 일반 특수법인과 달리 국가의 특별한

지도·감독의 차별적 행사가 요구되는 대상이 아니다.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및 정부와의 입법과정에서 법률제정상의 절차적 복잡성과 어려움 및 이해관계자 등의 강한 저항이 예상되는 별도의 특별법의 제정방식 보다는 농업식품기본법의 기본이념과 법률체계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회 및 정부와의 입법과정에서 저항을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입법화를 추진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를 농업식품기본법에 신설하는 방식이 가장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 농업식품기본법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를 신설할 때에 농업역사문화전세체험관의 자율성 운영의 보장과 함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특별한 규제가 공통 적용되는 특수법인 과학관 등의 정관 내용 중 공공성 보장내용을 해당 법인의 정관에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3-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입법체계 및 내용

3-2-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입법체계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를 농업식품기본법에 신설할 때에는 일반적인 재단법인 형태의 특수법인은 대부분 그 근거규정에 설립기관, 목적사업, 법인격, 정관 제정, 임원 및 직원, 경비 등의 지원, 수익사업의 주무부처 승인, 출연 및 기부, 민법의 재단법인 준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국립박물관 중 특수법인(한국양성평등진흥원)이 운영하는 국립여성사전시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 한국양성평등진흥원과 제50조 여성사박물관의 설립근거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표 21〕 국립박물관 중 국립여성전시관 운영 특수법인의 설립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양성평등교육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 사업
2.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3.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 협력 지원 사업
6.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연구 사업
7.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여성사박물관의 설립 · 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고, 여성을 위한 교육과 국민의 양성평등의식 고양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사박물관을 설립 · 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사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여성 관련 문화유산의 수집 · 보존 · 연구 · 전시 · 교육
2. 여성사의 발굴 및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경험 · 가치에 대한 연구
3. 역사발전 · 사회변화를 일구어 낸 여성인물과 업적 발굴
4. 여성문화 · 지역여성 · 여성운동 · 여성단체 · 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자료 발굴 · 보존 · 연구 · 교육
5. 미술 · 음악 · 문학 등 여성문화 활동
6. 그 밖에 여성사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성사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여성사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중 국립중앙박물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여성사박물관의 운영)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여성사박물관에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관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면한다.

③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사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 국립박물관 중 특수법인(태권도진흥재단)이 운영하는 태권도원 태권도박물관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태권도진흥재단의 설립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표 22〕 국립박물관 중 태권도박물관 운영 특수법인의 설립근거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태권도진흥재단) ① 공원의 조성 · 운영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공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 사업
3. 태권도 보존 · 보급 · 홍보에 관한 사업
4.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5. 공원시설 임대에 관한 사업
6. 태권도 용품 · 콘텐츠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 지원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재단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감사 1인 및 25인 이내의 이사를 두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및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이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국기원·태권도진흥재단의 수익사업) 국기원이나 태권도진흥재단이 법 제19조제3항 및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그 밖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특수법인 한국문화재재단 및 「문화기본법」에 의한 특수법인 한국관광연구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입법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3〕 기타 공공기관 중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의 설립근거

한국문화재재단(문화재보호법)

제9조(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연·전시 등 무형문화재 활동 지원 및 진흥
2. 문화재 관련 교육, 출판, 학술조사·연구 및 콘텐츠 개발·활용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4. 전통 문화상품·음식·혼례 등의 개발·보급 및 편의시설 등의 운영
5. 문화재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교류
6. 문화재 보호운동의 지원
7. 전통문화행사의 복원 및 재현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화기본법)

제11조의2(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①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2. 문화관광을 위한 조사·평가·연구
3. 문화복지를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조사·연구
4.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5. 여가문화에 관한 조사·연구
6. 북한 문화예술 연구
7.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8.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관련 정책정보·통계의 생산·분석·서비스
9. 조사·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10.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또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를 농업식품기본법에 신설할 때에는 부칙규정에서 시행일, 경과조치(설립준비위원회, 기관장의 임명, 추진팀 또는 준비위원회직원의 전환채용, 직원채용, 재산의 승계·귀속 등)의 법인설립준비를 종료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 법인은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법인격이 부여되게 되므로, 준비과정에서 정관을 포함한 직제, 인사, 이사회운영 등 중요한 규정을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 등을 업무로 하는 설립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과정은 현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이 담당하고 있으나, 법률 제정·개정과 달리 정관의 작성업무는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하고 정관의 하위 내부규정은 설립위원회가 제정하거나 새로이 구성된 이사회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다.
- 그리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과정에 참여하는 추진팀 직원 등의 소속 전환이나 특별채용, 기존 출연자산이나 예산 등의 처리를 위한 재산의 승계·귀속, 설립등기를 위한 최초 대표이사(이사장 또는 기관장) 및 이사 선임 등의 처리를 위한 경과조치의 내용이 규정되어야 한다.

- 국가가 설립한 특수법인의 설립준비 및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 24〕 국가가 설립한 특수법인의 설립준비 및 경과조치 규정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준비)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립과학관법인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며, 설립위원장은 설립위원 중 1명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국립과학관법인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각 국립과학관법인의 이사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대구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은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관할 지역에 위치한 국립과학관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제3조(설립비용) 국가는 국립과학관법인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부산과학관의 설립 준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립부산과학관법인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설립위원장은 설립위원 중에서 1명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이사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은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국립부산과학관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재단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재단 설립 후 지체 없이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외동포재단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외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외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비용) 재단의 설립비용은 정부예산으로 부담한다.
제4조 (재외동포 관련업무의 승계 등) ①재단은 설립과 동시에 재외동포 관련업무를 소관부처로부터 승계받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 관련업무 및 소관부처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이 승계받는 재외동포 관련업무에 관한 소관부처의 예산은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외무부에 이체한다.
④재단 설립전에 재외동포 관련업무에 관하여 소관부처가 행한 행위 또는 그 소관부처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외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외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이를 부담한다.
제3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협회는 사원총회가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재단이 승계하도록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재단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재단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 (사업계획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재단은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재단설립후 지체없이 작성하여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재단의 총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비용) 재단의 설립비용은 재단법인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이하 "발전재단"이라 한다)이 부담한다.

제4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발전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재단이 승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발전재단은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발전재단에 속하고 있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재단이 승계한다.
③발전재단 해산 당시의 정부보조금은 발전재단 해산일에 재단에 교부된 것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부에 표시된 발전재단 명의는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재단 명의로 본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재단 설립 전에 발전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발전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사학진흥재단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안에 5인 이내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인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재단의 이사장이 선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당시의 임원) 재단의 설립당시의 임원은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한국연구재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과학재단법은 폐지한다.
제3조(설립준비)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1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설립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설립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학술원,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기초기술연구회,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학중앙연구원,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단체에서 추천받은 후보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설립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재단의 임원 후보자는 제6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추천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 설립위원회는 제6항의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재단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나면 해촉되거나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⑧ 설립위원회는 재단 설립준비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종전의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4조(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른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술진흥재단과 「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은 이 법에 따른 재단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재산과 권리 · 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른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술진흥재단과 「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 · 의무는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재단이 포괄승계한다. 다만,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장학 및 학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승계하는 권리와 의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 · 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른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술진흥재단과 「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의 명의는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재단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른 한국과학재단,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술진흥재단과 「민법」에 따른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의 행위는 재단의 행위로 보며, 한국과학재단 및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에 대한 행위는 재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다만,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장학 및 학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승계하는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행위는 제외한다.

제6조(조직통합 및 기능 이관에 따른 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의 직원은 재단의 직원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한국과학재단 및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직원 중 장학 및 학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장학재단이 승계하는 직원은 제외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준비)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내에 재단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이 선임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나면 준비위원회는 해산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면직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재단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정부예산에서 이를 부담한다.

⑦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재단의 임원은 제9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준비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제3조(채권발행의 특례) 재단이 제1기 결산 확정 이전에 제18조제1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은 채권발행 당시의 자기자본으로 한다.

제4조(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은 이 법에 따른 국가장학기금으로 본다.

제5조(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은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수행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학자금 지원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사업 및 학자금 지원이 포함된 인재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사업
2.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른 한국과학재단에서 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사업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사업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한까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조직 통합 및 기능 이관에 따른 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직원 중 장학 및 학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승계하는 직원은 재단의 직원으로 본다.

한·아프리카재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준비) ① 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3조(피성년후견인 등에 대한 적용례) 제9조제3호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재단은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재단 설립 후 지체 없이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그리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를 농업식품기본법에 신설할 때에는 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이사장 등의 임원구성이나 법인의 조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관에서 규정하도록 하므로 이들 내용을 규정하는 정관의 작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정리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입법체계를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25-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입법체계 (설립)

구분	국가가 설립한 특수법인의 설립근거 입법체계 사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사박물관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설립	설립목적	설립목적	설립목적	설립목적	설립목적	○
	법인격		법인격	법인격	법인격	○
	설립등기					
	목적사업	목적사업	목적사업	목적사업	목적사업	○
	임원·직원		임원·직원	임원·직원	임원·직원	○
	국가출연			국고지원	예산지원	○
	재단준용		재단준용	재단준용	재단준용	○
		조직위임				

구분	국가가 설립한 특수법인의 설립근거 입법체계 사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사박물관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설립		국립중앙박물관 규정 준용				
			수익사업			○
				국유·공유재산 무상사용		○
					공공기관운영법 준용	
					유사명칭사용 금지	

〔표 25-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입법체계 (경과조치)

경과조치	경과조치 규정사항		
	시행일		○
	설립준비	설립위원회 설치	○
		설립위원 구성 및 임명(5 ~ 10명)	○
		최초 임원의 임명	○
		정관 작성 및 인가	○
		설립등기 및 사무인계	○
		설립위원회 해산	○
	설립비용	설립비용 부담	○
	사업계획 등의 승인	최초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
	관련업무의 승계	소관부처 업무승계	○
		소관부처 예산 및 행위 승계	○
	종전 협회 등의 재산승계	종전 협회 등의 재산과 권리의무 승계	
		포괄승계재산가액 등기일 전일 장부가액	
	소속직원 등의 경과조치	종전 직원의 승계 등	○
	채권발행 특례	채권발행의 자기자본	

3-2-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주요내용

3-2-2-1. 설립근거법 및 설립목적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은 2007년 기본방향설정연구를 통해 기획된 이래로 그 설립을 위하여 2008년 현행 농업식품기본법 제45조에 간접적인 근거규정을 두고 추진되어 왔다.

○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식품기본법의 기본이념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필요한 국가정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2008년 농업식품기본법 제45조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근거는 그 국가책무의 바탕을 이루는 농업식품기본법 제45조 이하에 규정하는 것이 법률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적절하다.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농업식품기본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필요한 농경역사·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조사·연구 및 전시체험·교육·교류 등을 통한 농업역사문화의 보존 및 확산을 추구함에 있다.

○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목적은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 등의 수집·관리·조사·연구·전시체험·교육·교류·홍보 등을 통하여 농경역사문화의 보존·보급·활용 및 확산에 두고 있는 것이다.

> 제46조의2(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 ①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 등의 수집·관리·조사·연구·전시체험·교육·교류·홍보 등을 통하여 농업역사문화의 보존·보급·활용 및 확산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3-2-2-2. 법인격 및 목적사업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별도의 법인이다. 따라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31조에 따라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에 당해 법인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 또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될지라도 그 법인이 주체로서 활동을 하려면 등기절차를 거쳐야 한다.

- 설립등기와 관련해서는 설립특별법으로 제정되지 않는 한, 설립근거법의 부칙 규정에서 설립위원회가 정관 작성 후 주무장관의 인가와 설립등기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그러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같이 법인의 성립시기인 설립등기를 규정하기도 한다.
- 따라서 이것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법인성립시기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규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이다.
- 이와 관련하여 설립등기사항까지 규정이 가능하나, 설립특별법으로 제정되지 않는 한, 그 사례가 없다. 다만, 설립특별법으로 제정되거나 설립근거법의 규정으로 설치되는 경우 모두 조직의 특성상 사원총회를 요하지 않고 재산출연으로 설립되는 때에는 동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 그리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농업식품기본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필요한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 등의 수집·관리·조사·연구·전시체험·교육·교류·홍보 등을 통하여 농경역사문화의 보존·보급·활용 및 확산에 목적을 두고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그 설립근거법에 해당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 또는 업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사업은 일반 유물의 수집·관리·조사·연구·전시·교육·홍보에 머무는 박물관과 달리 과학관·전시관·체험관 등의 체험전시를 동시에 포함하는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 박물관의 사업과 함께 전시체험을 중시하는 과학관 등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사업과 유사한 국립박물관 및 국립과학관의 주요사업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표 26〕 국립박물관 및 국립과학관의 주요사업 비교표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직제)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법)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농업역사문화 전시체험관
제29조(직무)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은 고고학·미술사학·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를 수집·보존 및 전시하여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며, 이에 관한 연구·조사와 전통문화의 계몽·홍보·보급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조(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3조(소관업무) 과학관은 기초과학·응용과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연구·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 시행		
	2. 박물관자료(해양문화 및 해양수산업과 관련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4. 과학기술자료의 수집·발굴·조사·연구·보존·제작 및 전시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의 보급 관련 특별전시에 관한 사항	○
	3. 박물관자료의 조사 · 연구		○
	4. 박물관자료에 대한 교육		○
	5. 박물관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
	6. 부설기관의 운영·관리		
	7. 박물관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 · 협력	8. 전국 국·공·사립 과학관에 대한 지원·자문과 국내 및 외국 과학관과의 협력 증진	○
	8. 박물관의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10. 제1호 내지 제7호의 부대사업 및 수탁사업	○
	10. 그 밖에 해양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임하는 업무	○
		1. 과학기술의 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상설전시관·특별전시관·천체투영관·스페이스월드·천체관측소·어울림홀·캠프장숙소·실험실·강의실 등 운영	○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직제)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법)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	농업역사문화 전시체험관
		3. 과학기술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운영 및 각종 과학행사에 관한 사항	○
		6. 과학기술 전시·연구·교육에 관한 정보화	○
		7. 과학기술혁신정책 및 연구개발성과 전시·확산·홍보	
		11. 기타 과학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제8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이 가운데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 등의 수집·관리·조사·연구·전시체험·교육·교류·홍보 등을 통하여 농경역사문화의 보존·보급·활용 및 확산에 목적을 두고 있는 농업문화여사전시체험관의 사업으로는 유사 국립박물관의 사업 모두와 체험전시실 및 야외공간 관리 등에 따른 국립과학관의 사업, 그리고 이들에 부수하는 수익사업 등이 포함되게 된다.

제46조의2(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 ②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 경우 제8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 등의 수집·보존·관리·조사·연구
2.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 등의 전시·체험·교육
3.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 등의 홍보·활용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보급
4.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 등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5.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등에 관련된 기술의 조사·연구 및 보급
6. 농경역사문화의 보존·보급·활용 및 확산을 위한 행사개최 및 정보화체계 구축·운영
7.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전시 및 체험시설 등의 운영 및 교육이나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8.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
9.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부대사업 및 수탁사업
10.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11. 그 밖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
⑮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2-2-3. 정관(기본규칙)과 임원 및 직원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을 위하여 그 설립근거를 농업식품기본법에 신설할 때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자가 기명·날인하는 정관에 관한 사항과 그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정관은 해당 법인의 대외적 활동 및 대내적 법률관계의 기본원칙을 정하는 것으로서, 그 법인의 성격 및 운영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다.
-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기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직제가,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책임운영기관법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이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의 정관을 대신한다.
- 그리고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 중 공기업(시장형공기업, 준시장형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은 기타 공공기관과 달리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정관의 작성·인가, 이사회의 설치·운영, 예산회계 등의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가. 설립근거의 규정내용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에 해당 법인의 정관, 임원 및 직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때에는 임원 및 직원의 구성·운영을 정관에 따르도록 해당 법인의 정관에 위임하는 방식 또는 이들 내용 중 최소한 임원의 구성·임기·임명권 등을 설치근거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 설립근거법에 그 설립근거를 신설하는 때에는 임원·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나, 설립특별법을 제정하는 때에는 임원이나 이사회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설립특별법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이 가운데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근거를 농업식품기본법에 신설할 때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위원회가 그 임원·직원의 구성 및 이사회 운영의 내용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한 후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는 절차를 거치고, 법인설립 후 운영과정에서 임원구성·운영의 변경요구 등에 따른 개정절차를 고려할 때에 임원이나 직원의 구성·운영을 정관에 따르도록 정관에 위임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다.

○ 그러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박물관이나 과학관 등과 유사한 체험전시관으로서 일반적인 재단의 운영형태와 달리 기관장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체계가 필요하고, 기관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그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의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관장인 관장의 임기 보장과 함께 임명권자의 임명권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근거를 농업식품기본법에 신설할 때에는 정관 규정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임원 중 기관장인 관장의 임기와 그 임명권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이 경우 기관장(관장)과 이사장은 겸임하도록 하고, 기관장의 임명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그리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운영체계를 고려할 때에 관장을 포함한 이사 7명 이내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감사를 두는 것이 적절하다.

제46조의2(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 ④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두고, 관장은 이사장이 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면하고,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장이 임면한다.
⑥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

나. 정관의 규정내용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을 위하여 설립위원회가 작성하는 정관에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필수적 기재사항)은 민법 제43조에 따라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사항,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이다.

-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고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45조).
-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46조).
-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민법 제46조),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며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47조 및 제48조).
- 재단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고,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민법 제55조제1항).

- 재단법인설립의 허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등기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원일,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주소,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이다(민법 제49조).

○ 또한 정관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그 밖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데, 특별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그 해당 법률에서 정관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공공기관 중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자본금, 주식 또는 출자증권,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이사회의 운영,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회계, 공공의 방법, 사채의 발행, 정관의 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한다(공공기관운영법 제16조).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관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과학관은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한다(과학관법 제6조의2제4항).

〔표 27〕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의 정관 기재내용 비교표

민 법 (재단법인)	공공기관운영법 (공기업. 준정부기관)	과학관법 (국립과학관)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5. 주식 또는 출자증권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회계 11. 공고의 방법 12. 사채의 발행 13. 정관의 변경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위원회가 작성하는 해당 법인의 정관은 농업식품기본법의 설치근거에 규정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조직 및 운영체계, 국가의 지원조치 및

지도·감독내용을 반영하고, 그 기본체계는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민법의 재단법인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과학관법의 정관 규정체계를 바탕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 이사회운영의 규정내용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농업식품기본법에 설립근거를 두는 특수법인으로서 그 성격상 설립자의 재산출연에 의한 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법인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이사회 기구가 필요하다.

○ 이사회의 구성·회의·의결·운영 등에 관하여는 정관에서 규정하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의 하위 내부규정으로서 이사회운영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다.

- 정관에는 이사회의 구성, 기능, 소집, 의결, 간사, 의사록 등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내용 중 이사회의 구분, 소집절차, 의결방법, 소위원회 등을 이사회운영규정으로 독립하여 규정하기도 한다.
- 이사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관 보다는 하위 내부규정에 규정하는 것은 정관규정 전체 내용과의 균형성 및 그 신속한 개정이나 업무수행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하위 내부규정화에 따른 이사회 운영의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는 단점도 있다.

○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위원회가 작성하는 해당 법인의 정관에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가능한 모두 규정하고, 이사회의 운영경험을 통해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생할 때에 그 내용을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이사회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최초로 구성·운영되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이사회의 운영은 가능한 그 필요한 사항을 정관에 상세히 규정하는 방법이 적절하다.

3-2-2-4. 국가의 지원조치 및 감독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국가정책 중 농업식품기본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필요한 농경역사·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조사·연구 및 전시체험·교육·교류 등을 통한 농업역사문화의 보존 및 확산업무를 수행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목적은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 등의 수집·관리·조사·연구·전시체험·교육·교류·홍보 등을 통하여 농경역사문화의 보존·보급·활용 및 확산에 두고 있다.

○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나 단체 등의 출연이나 보조 및 기부 등과 같은 일정한 재원의 지원조치가 필요하다.

○ 또한 국가정책의 구체화로서 농업역사문화의 보존 및 확산업무를 수행하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과 주무부처의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다른 특수법인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유관기관의 관계 유물이나 자료 요청 및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을 허용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농업역사문화의 대국민 확산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지원하는 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을 허용하여야 한다.

○ 이와 함께 국가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재정적 지원을 하는 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자율적 운영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주무부처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고 결산서의 제출을 받는 등의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46조의2(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 ⑦ 국가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⑧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사업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사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농업전시체험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⑩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그 사업 및 운영을 지원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으며, 후원회가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⑪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관장은 관계 행정기관·교육기관·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이나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⑫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관장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농업역사문화존시체험관에 파견할 수 있다.
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⑭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2-5. 부칙 및 경과조치

○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그 부칙에 본칙의 규정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법률의 시행일, 법령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관계법령의 개정폐지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 법률의 부칙 규정은 ㉠ 법률의 시행에 관한 규정, ㉡ 법률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 기존 법률의 폐지에 관한 규정, ㉣ 법률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 법률의 시행에 따른 적용례에 관한 규정, ㉥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 법률과 관련한 다른 법률의 개정에 관한 규정, ㉧ 기타 규정 등의 순서로 배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38]

○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근거를 농업식품기본법에 신설할 때에는 먼저 그 개정 법률의 시행에 관한 규정과 함께 법률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작성, 주무부처의 인가, 설립등기, 최초 임원의 선임, 사무인계 등의 업무를 법인설립자 대행으로 수행하는 설립위원회의 설치·활동·해산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 법률의 시행일은 공포 후 현실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로서 법률에 의한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공포 후 즉시, 1월이나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이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전준비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공포 이후 특별히 장기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고 해당 법인의 설립에 따른 복잡한 법률관계의 변동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례에 비추어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설립준비와 관련하여서는 설립위원회의 구성시기(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시행일부터 30일 이내가 일반적이다) 및 위원 수(5명부터 10명 이내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최초 임원의 임명(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부처 장관의 임명이 일반적이다)에 관한 사항이 주요쟁점이 된다.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설립위원회의 사전업무를 현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에서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 일반적인 사례에 비추어 시행일부터 30일 내에 설립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최초의 임원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그 밖에 설립준비와 관련해서는 설립위원회의 정관 작성과 주무부처의 승인, 설립등기 및 사무인계 이후 해산을 규정하여야 하고, 설립과정의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그 비용주체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38) 한국법제연구원(2010.10), 세종학당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5면.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준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며, 설립위원장은 설립위원 중 1명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최초 임원은 제46조의2제5항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관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또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근거를 농업식품기본법에 신설할 때에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으로서 종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이 농업역사문화전시관 건립 및 설립과정에서 확보·사용한 예산이나 재산 및 권리의무 등의 승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에서 농업역사문화전시관으로 이관되는 사업을 담당한 사람에 대한 해당 법인의 직원으로의 전환이나 승계, 그리고 해당 법인의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법안 제46조의2제1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지체 없는 승인을 통한 해당 법인의 원활한 사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 국가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 이전에 소유·운영하였던 재산·권리의무 및 행위 등이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해당 법인의 법률관계가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법적 효력을 갖추기 이전에 이미 수립·추진 중인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사업활동을 지체 없이 주무부처가 승인하여야 해당 법인의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준비를 위한 행정조직으로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은 사전에 해당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담당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신설되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직원으로 이들이 승계되어야 해당 법인의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운영과 고용의 안정성이 확보된다.

제3조(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에 한정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관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이 법 시행 당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에 속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4조(직원임용의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에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공무원 이외의 직원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설립된 때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에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공무원 중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직원의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 보다 장기일 때에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직원의 정년에 따른다.

제5조(예산편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제46조의2제1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 후 지체없이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3-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입법안

3-3-1. 농업식품기본법의 개정(안)

〔표 28〕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을 위한 입법안

농업식품기본법
제46조의2(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 ①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 등의 수집·관리·조사·연구·전시체험·교육·교류·홍보 등을 통하여 농업역사문화의 보존·보급·활용 및 확산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 경우 제8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 등의 수집·보존·관리·조사·연구 2.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 등의 전시·체험·교육

3.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 등의 홍보·활용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보급
4.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 등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5.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등에 관련된 기술의 조사·연구 및 보급
6. 농경역사문화의 보존·보급·활용 및 확산을 위한 행사개최 및 정보화체계 구축·운영
7.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전시 및 체험시설 등의 운영 및 교육이나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8.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
9.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부대사업 및 수탁사업
10.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11. 그 밖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

④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두고, 관장은 이사장이 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면하고,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장이 임면한다.

⑥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⑦ 국가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⑧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사업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사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농업전시체험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⑩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그 사업 및 운영을 지원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으며, 후원회가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⑪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관장은 관계 행정기관·교육기관·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이나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⑫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관장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농업역사문화존시체험관에 파견할 수 있다.

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⑭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⑮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준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며, 설립위원장은 설립위원 중 1명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최초 임원은 제46조의2제5항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관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3조(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에 한정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관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이 법 시행 당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에 속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4조(직원임용의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에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공무원 이외의 직원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설립된 때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에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공무원 중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직원의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 보다 장기일 때에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직원의 정년에 따른다.

제5조(예산편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제46조의2제1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 후 지체없이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3-3-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정관(안)

〔표 29〕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정관 제정안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 등의 수집·관리·조사·연구·전시체험·교육·교류·홍보 등을 통하여 농업역사문화의 보존·보급·활용 및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 표기는 "National Agriculture Museum"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000번지에 둔다.
제4조(사업) 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 등의 수집·보존·관리·조사·연구
2.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 등의 전시·체험·교육
3.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 등의 홍보·활용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보급
4.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 등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5.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등에 관련된 기술의 조사·연구 및 보급
6. 농경역사문화의 보존·보급·활용 및 확산을 위한 행사개최 및 정보화체계 구축·운영
7.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전시 및 체험시설 등의 운영 및 교육이나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8.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
9.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부대사업 및 수탁사업
10.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11. 그 밖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8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입장 및 체험전시관 등의 관람과 체험
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시설의 임대 및 위탁
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관련 기념품·출판물 및 간행물 등의 제작·판매
4.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서 개발한 교육 및 체험전시 프로그램의 보급
5.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6. 농업역사문화 관련 체험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7. 그 밖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 조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임 원

제5조(임원의 구성) 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임원은 관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한다.
② 관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이 경우 비상임 이사 중 1명은 당연직 이사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선임) ① 관장은 상임으로 이사장을 겸하고, 관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② 비상임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는 임명된 이사로 본다.
③ 제1항의 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①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비상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사직 등으로 새로이 임원이 된 자는 그 임명일로부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관장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관장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관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장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비상임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의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⑤ 감사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을 감사하며 그에 관한 부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장에게 통지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⑥ 감사는 제5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0조(임원의 신분보장)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목적과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신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경우
4.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행위를 한 임원을 해임하려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임원이 해임된 때에는 그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임원의 보수) ① 관장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이사회에 관장은 참여할 수 없다.
② 비상임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제12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관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1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관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제8조제6항에 따라 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장이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본항의 규정에 따른 내용을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관한 사항
7.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9. 부설기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② 당연직 이사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은 그 의결사항을 즉시 이사 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차기 이사회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장을 포함한 이사는 본인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고,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관장이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

제16조(이사회의 의사록 등) ① 이사회의 회의결과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재하여 이사 및 감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고, 그 의사록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이사회의 회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그 간사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직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제17조(이사회의 세부규정)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사업부서 및 운영

제18조(사업부서) ① 관장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사업부서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부서의 기능, 업무,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직제」로 정한다.

제19조(직원의 임면 등) ① 관장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직원을 임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임용, 승진, 복무, 보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인사규정」 및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보수규정」 으로 정한다.

③ 관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 또는 임시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고, 그 계약내용·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직원의 파견 등) ① 관장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관의 승인을 받고 파견 근무할 인력의 보직·담당업무·전문분야·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게 그 소속기관의 직급에 상응하는 보직 또는 임무를 부여하고,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 등은 파견기간 중 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 경우 관장은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보수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소속 직원을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원의 인사·보수 등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정관 및 제규정에 따른다.

제2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관장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관장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직하려는 때에는 각각 관장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원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부설기관 등의 설치) ① 관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설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운영방향 및 업무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관장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농업역사문화 관련 유물이나 자료 등의 수집을 위한 평가 및 선정,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체험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평가 등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부설기관 및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후원회의 설치·운영) ① 관장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사업 및 운영을 지원하려는 개인이나 법인을 회원으로 하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모집할 수 있다.

③ 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후원금,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인계한다. 이 경우 후원회의 회원은 후원회를 통하여 후원금,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때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사업 중 특정 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관장은 후원회의 회원에게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입장료, 관람료·체험료 또는 시설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관장은 제3항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인계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관장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의 출연 또는 기부를 받을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기부를 받은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관장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관계기관의 자료제공) 관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이나 자료의 열람·복사·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사업연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7조(기본재산)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 후 정부 또는 정부 이외의 자가 출연한 재산
2. 그 밖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

제28조(재산의 처분제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기본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매각,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2. 그 밖에 이사회가 지정하는 중요재산

제29조(운영재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기부금 및 후원금, 자체수익금, 차입금, 기본재산의 운용수익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30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 ① 정부 외의 자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대한 출연·기부·후원 등을 하는 때에는 그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정부 외의 자와 관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관장은 제1항의 협의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정부출연금 등의 예산요구) 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제32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3조(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수지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당해 연도의 대차대비표 및 손익계산서
3. 잉여금처분계산서
4.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 및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감사의 의견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제34조(자금의 차입) 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차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차입목적
2. 차입금액
3. 차입처
4. 차입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제35조(잉여금의 처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거나 이월손실금 등의 보전에 충당한다.

제36조(재산·회계의 세부규정)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재산 및 회계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37조(정관의 변경)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규정의 제정·개폐) 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폐하려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직제
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인사규정
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보수규정
4.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회계규정

③ 관장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제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할 수 있다.

제39조(공고의 방법)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 등 중요사항의 공고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한다.

제40조(해산) 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을 해산하려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해산절차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해산되는 때에는 채무를 변제하고 그 잔여재산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귀속하거나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연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로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당시의 임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위원회가 추천하여 장관이 임명한다.

②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설립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에 한정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받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에 속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③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 당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에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공무원 이외의 직원은 관장이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직원으로 임용한 것으로 본다.

④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 당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에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공무원 중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장이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직원으로 임용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직원의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 보다 장기일 때에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직원의 정년에 따른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정관을 인가한 때로부터 법 제46조의2제3항제8호의 수익사업에 관한 장관의 승인은 이 정관 제4조제2항의 수익사업으로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을 위하여 법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위원이 2018년 00월 00일 각각 서명날인한다.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위원회 위 원 장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제4장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핵심적 내부규정 제정방안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내부규정 제정의 기본방향
2. 유사기관의 내부규정 운영사례 분석
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내부규정의 제정안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내부규정 제정의 기본방향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운영조직체계로서 기존 박물관 운영과 체험중심조직 운영을 종합하여 경영관리본부(기획예산팀, 운영지원팀, 시설관리팀), 대외협력본부(고객홍보팀, 사업관리팀), 운영본부(학예과〈전시기획, 학술연구, 도서관·디지털아카이브, 유물관리, 교육운영〉, 공작팀)을 제안하였다.[39)]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경영효율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시설관리운영은 운영주체가 담당하되 수익시설 또는 지속적인 전문가의 견해, 콘텐츠 및 프로그램 변경 및 교체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운영위탁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시설 중 농어업체험관과 콘퍼런스홀(다목적 공간) 부분은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변경 및 콘텐츠의 보완이 필요하고 관람객의 요구와 반응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하며 전문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공간이므로 부분적으로 운영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고[40)], 청소·경비·주차·안내매표·전시운영은 위탁용역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제안하였다.

○ 그러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이 추진하고 있는 건축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그 내용의 일부가 수정되게 되었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은 '공작팀'의 설치와 '제작공방실'을 배치하였으나, 건축실시설계용역은 공간배치계획에서 '제작공방실'을 삭제하고 운영조직체계에서 '공작팀'을 배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조직운영체계는 그 일부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의 조직운영체계에서 공작팀의 기능을 재분배하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부서별 분장업무를 구체화하여 그 운영조직체계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39) EGA GROUP(2016.12), 농어업 역사문화 전시체험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336~338면.
40) EGA GROUP(2016.12), 농어업 역사문화 전시체험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383~384면.

〔표 30〕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조직체계안

부 서		기 능
관 장		대표(이사장)
경영기획 본 부	기획예산팀	1.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감사·국회·법제업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및 내부규정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연보 작성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운영지원팀	1. 보안 및 관인 관리 등 서무에 관한 사항 2.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업무에 관한 사항 6. 방호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7. 관용차량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관람료·주차료의 징수 및 대관 등 각종 수익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팀	1. 시설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점검·유지·보수 3. 전시체험물 제작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4. 학예연구본부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정보화시스템 운영·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8. 공공데이터 제공·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전산위탁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시설용역업체의 감독에 관한 사항 11. 수목·잔디 및 온실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시설의 방호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학예연구 본 부	유물관리팀	1. 유물·자료의 수집·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유물·자료의 구입·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유물·자료의 대여·수증·수탁 및 반출·반입에 관한 사항 4. 유물·자료의 복제·복사·모조·촬영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5. 유물·자료의 제작 및 복원·보존처리 등에 관한 사항 6. 유물·자료의 DB구축과 연계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 유물·자료의 목록연구 및 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8. 수장고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유물자료이미지저작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부 서		기 능
학예연구 본 부	전시기획팀	1. 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상설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특별기획 전시 및 교류 전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4.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전시 기획·제작·설치에 관한 사항 6. 전시 디자인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7. 전시실 관람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전시 관련 국내·외 자료조사 및 전시 기법·체계연구에 관한 사항 9. 전시실 및 전시자료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학술연구팀	1. 학예연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농경문화 등에 관련한 유물·자료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유물·자료의 연구기획 및 관련 자료의 발간·보급에 관한 사항 4. 농경문화 등 관련 연구개발성과물 수집 및 전시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5. 유물·자료의 전시·연구·교육관련 국내·외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6. 학술조사 및 연구보고서 발간·배포에 관한 사항 7. 학술연구 및 연구수탁사업에 관한 사항 8. 농경문화 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9.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 및 아카이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운영팀	1. 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습콘텐츠 등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사항 4. 농경문화 등 관련 사회교육 기획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박물관 전시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내 농경문화 등 관련 교육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학교 밖 농경문화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대외협력 본 부	고객홍보팀	1. 관람안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종합안내 센터 운영 및 상설전시관 등의 고객 안내에 관한 사항 3. 관람객 민원처리 및 고객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관람객 안전관리 및 관람객 배상·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중장기 및 연도별 고객창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관람객의 통계 작성, 유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7. 홈페이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회원 및 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언론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홍보용 간행물·영상물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 11. 전시체험물 제작 경연대회 등 각종 행사의 기획·운영·유치에 관한 사항 12. 온라인 매체활용 각종 행사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운영팀	1. 중장기 및 연도별 수익창출(마케팅)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고객 대상층 및 규모별 차별화된 수익 확대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관람객의 통계 작성, 유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관람객 유치 방안에 관한 사항 5. 신사업개발 등에 관한 사항 6. 기념품, 출판물 및 간행물 등의 제작 및 판매에 관한 사항 7. 체험프로그램 등의 보급 및 광고수입 창출 등에 관한 사항 8. 각종 문화프로그램 및 공연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이러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 이후, 그 운영을 위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이미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그 성격이 유사한 대표적인 박물관·전시관·체험관의 내부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농촌역사문화전시관의 성격에 비추어 유사한 대표기관의 사례로는 국립박물관이나 체험전시를 중시하는 국립과학관 중 설립 이후의 운영경험이 풍부하고 그 운영경험에 바탕을 둔 내부규정집을 갖추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한다.

○ 따라서 본 연구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설립된 이후에 그 운영에 필요한 내부규정의 제정을 위하여 유사기관의 내부규정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그들 내부규정 중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내부규정으로 적정한 규정들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핵심적인 내부규정의 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유사기관의 내부규정 운영사례 분석

2-1. 국립중앙박물관

2-1-1. 국립중앙박물관의 설립목적

○ 국립중앙박물관은 1909년 11월 창경궁에서 제실박물관으로 설립된 이래로 1945년 12월 3일 국립박물관으로 개관하였고, 2005년 10월 용산으로 신축 개관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 이러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설립목적은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서 고고학·미술사학·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를 수집·보존 및 전시하여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며, 이에 관한 연구·조사와 전통문화의 계몽·홍보·보급 및 교류에 관한 사무의 관장에 두고 있다(동직제 제29조).

2-1-2.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직체계 및 기능

○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직체계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기획운영단·학예연구실 및 교육문화교류단을

두고, 국립중앙박물관장소속하에 각 지방에 지방박물관으로 경주박물관·광주박물관·전주박물관·부여박물관·공주박물관·진주박물관·청주박물관·대구박물관·김해박물관·제주박물관·춘천박물관·나주박물관 및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두고 있다(동직제 제31조 및 제35조).

〔그림 13〕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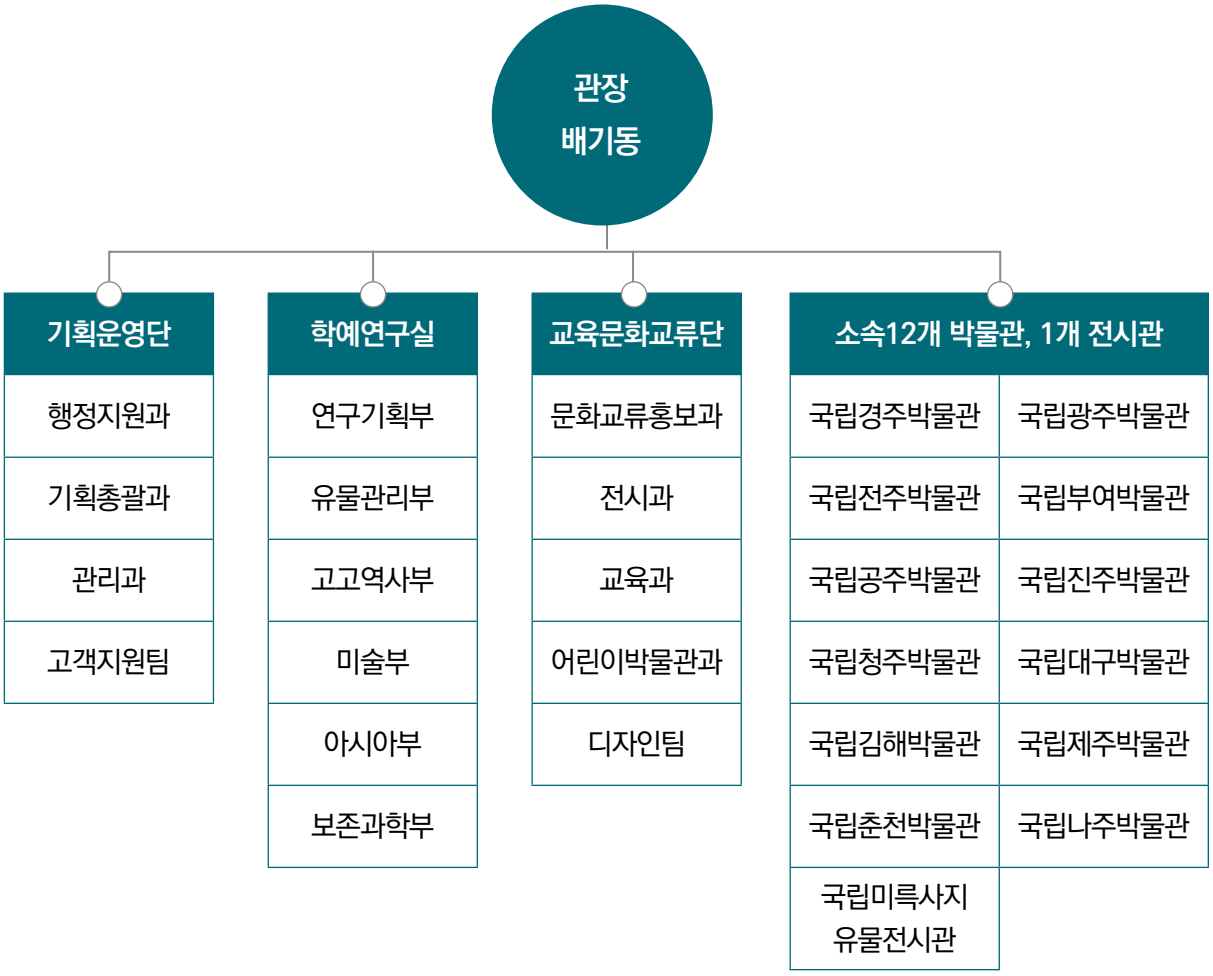

○ 국립중앙박물관의 본부는 그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동직제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표 31〕 국립중앙박물관 본부 조직체계의 기능

본부 부서	기 능
기획운영단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수발 · 통제 · 발간 및 기록물 관리 3. 공무원의 임용 · 복무 · 교육훈련 · 연금 · 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물품 · 국유재산의 관리 5. 청사와 시설의 방호 및 재난관리 6.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 조정 및 심사평가 7. 예산 · 감사 · 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8.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9. 박물관 정보화 사업 및 전산실 운영 10. 박물관 협력망의 구축 · 운영 11. 소속 박물관의 건축 · 시설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12. 관람안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고객만족도 향상에 관한 사항 14.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 운영 15.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학예연구실	1. 소장유물 및 유물수장고의 관리 2. 유물의 구입 · 대여 및 기탁과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3. 학예연구자료의 보관 및 관리와 자료실의 운영 4.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 · 환경관리 및 기법조사 · 모조 · 복제 5. 유물의 복제 · 복사 · 모조 및 촬영 등의 허가 6. 소속 박물관 유물의 관리와 보존처리에 관한 기술지도 7. 고고학 및 인류학, 미술사학, 역사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 · 조사 · 발굴 · 수집 · 전시 · 고증 · 평가 · 분석 · 제도(製圖) 및 촬영 8. 제7호에 따른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9. 학술도서와 자료 등의 발간 · 배포
교육문화교류단	1. 박물관 문화사업의 기획 · 조정 및 운영 2. 박물관 출판물의 기획 · 발간 3. 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 협력 4. 박물관 홍보 · 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5. 국내외 문화재의 특별전 기획 · 전시 6.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전시 운영에 대한 지원 7. 전시디자인, 그 밖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8.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운영 및 지원 9. 이동박물관 및 어린이박물관의 기획 · 운영 10. 도서실의 운영 · 관리

○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의 본부 및 지방박물관은 그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부서별로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동직제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표 32〕 국립중앙박물관 전체 조직체계의 기능

부서		기 능
기 획 운영단	행정지원과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기록물 관리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5. 회계 및 결산 6. 청사와 시설의 방호 및 재난관리 7. 그 밖에 관내 다른 단·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기획총괄과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2. 예산·감사·국회·법제에 관한 업무 3.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4. 박물관 협력망 구축 및 운영 5. 박물관 정보화 사업 및 전산실 운영
	관리과	1. 청사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지원 2. 시설물의 안전점검·유지·보수 3. 소속박물관의 건축과 시설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4. 시설용역업체의 기술지도 및 감독 5. 수목·잔디 및 온실 등의 관리
	고객지원팀	1. 관람안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3. 상설전시관 고객 안내에 관한 사항 4. 종합안내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고객의 소리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및 운영 7. 그 밖에 고객의 편의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학 예 연구실	연구기획부	1. 학예연구와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박물관학 및 박물관사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연구 3. 전시 관련 국내·외 자료 조사 및 전시 기법·체계연구 4. 소장 유물 연구기획 및 관련 자료의 발간·보급 5. 박물관 유관기관·단체와의 연계업무 6. 소속 박물관 전시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실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유물관리부	1. 소장 유물 및 유물수장고의 관리 2. 유물의 구입·대여 및 기탁과 국고귀속문화재의 관리 3. 유물의 복제·복사·모조 및 촬영 등의 허가 4. 소속 박물관 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고고역사부	1. 고고학, 인류학 및 역사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조사·발굴·수집·전시·고증·평가·분석·제도·촬영 및 관련자료 등의 발간·보급 2. 제1호에 따른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미술부	1. 미술사학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조사·발굴·수집·전시·고증·평가·분석·제도·촬영 및 관련자료 등의 발간·보급 2. 제1호에 따른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아시아부	1. 아시아 관련 고고학·미술사학·역사학 등 각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조사·발굴·수집·전시·고증·평가·분석·제도·촬영 및 관련 자료 등의 발간 보급 2. 제1호에 따른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보존과학부	1.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기법조사·모조(模造)·복제(複製)·환경관리 및 분석 2. 소속박물관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에 관한 기술지도·지원

부 서		기 능
교육문화	문화교류홍보과	1. 박물관 문화사업의 기획·조정 및 운영 2. 국제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3. 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4. 지방박물관의 국제교류·협력 사업 지원 5. 외국 원수 등 주요 외빈 안내 지원 6. 박물관 홍보·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7. 국내외 언론 취재 및 홍보활동 지원 8. 홍보용 간행물·영상물의 제작 배포 9.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관련된 업무 10. 그 밖에 단내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시과	1. 국내외 문화재의 특별전 기획 및 전시 2.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전시 운영 지원 3. 국내외 문화기관과의 전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획전시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과	1. 박물관 교육 종합계획 수립·시행 2.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지원 3. 찾아가는 박물관 기획·운영 4. 교육시설 관리 및 대관 5. 도서실 운영·관리 6. 박물관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어린이박물관과	1. 어린이박물관 전시 기획·운영 2. 어린이·가족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어린이박물관 야외 마당 운영 4. 어린이 대상 행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박물관 홍보 및 홍보자료 발간
	디자인팀	1. 중앙 및 지방박물관의 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출판물 기획·발간 및 출판 관련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 사업·활동 관련 디자인에 관한 사항
지 방 박물관	기획운영과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분석 5. 예산·회계 및 결산 6.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그 밖에 관내 학예연구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학예연구실	1. 소장유물 및 유물수장고의 관리 2. 유물의 구입·대여 및 기탁과 국고귀속문화재의 관리 3. 유물의 복제·복사·모조 및 촬영 등의 허가 4. 고고학·미술사학·역사학 및 인류학 분야에 속하는 문화재와 자료의 연구·조사·발굴·수집·보관·전시·고증·평가·분석·제도·모조·수리·복원 및 촬영 5. 제4호에 따른 문화재와 자료에 관한 전시실의 운영 및 관리 6.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지원

2-1-3. 국립중앙박물관의 시설

○ 국립중앙박물관은 대지면적 295,550㎡, 건축면적 49,468㎡, 연면적 138,156㎡의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 내에 본관(전시동·사무동)과 부속 9개동을, 건물 밖에 거울못과 전통염료식물원을 갖추고 있다.

- 본관의 전시동에는 상설전시장, 수장고 등을, 사무동에는 기획전시관, 어린이박물관, 사무실, 강당, 극장 등을 갖추고 있다.
- 부속 9개동에는 카페, 편의점, 은행, 레스토랑, 옥외주차장 대기실, 온실, 이팝나무길 화장실 및 캐노피, 종각, 청자정, 박물관 나들길 등을 두고 있다.

〔표 33〕 국립중앙박물관 기능영역별 시설

기능영역	시 설
전 시	선사·고대관, 중·근세관, 서화관, 조각·공예관, 기증관, 아시아관, 기획전시실, 어린이박물관, 역사의 길, 으뜸홀, 보신각종, 청자정 등
수 장	수장고 21개, 소독실, 정리실 등
교 육	극장, 강당, 교육시설, 교육지원시설, 도서관, 자료실, 부속시설
사 무	관장실, 기획운영단, 학예연구실, 교육문화교류당 등
편 의	식당, 뮤지엄숍, 주차장, 박물관나들길, 기타 시설
유 지	기계실, 전기실, 중앙감시실, 부속시설

2-1-4. 국립중앙박물관의 운영규정

○ 국립중앙박물관은 중앙부처의 소속기관이므로 그 조직이나 업무범위는 중앙부처의 직제에서 규정되고, 그 하위의 내부규정은 관계법령에 따른 예규의 형식으로 제정 또는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의 구성원은 공무원이므로 직원의 임용, 승진, 복무, 징계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내부규정은 중앙부처의 공무원 관계규정 및 재산회계처리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 따라서 국립중앙박물관의 내부규정은 조직이나 직제, 공무원에 적용되는 직원의 임용이나 회계처리규정 등을 제외한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관계법령이나 내부운영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들 관계법령이나 내부운영규정 중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내부규정으로 제정 가능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4〕 국립중앙박물관 내부규정의 분석결과

구 분	규 정 명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내부규정대상
소장유물관리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칙(관계법령)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관계법령)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국외대여전시 규정	○
	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
유물전시기획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
	국립중앙박물관 대관규정	○
	국립박물관 무료관람권 발급규정	○
대외홍보협력	국립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
	국립박물관 문화상품관리규정	○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	○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자료 관리규정	○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운영지침	○
	국립중앙박물관 동호인 지원지침	△(후원회)
	국립중앙박물관 교육실습생 운영규정	○
	국립중앙박물관 청년멘토 운영규정	
	미술자료 발간규정	○
	외부학술연구용역사업 관리지침	○
행정경영관리	국립중앙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 규정	
	국립중앙박물관 직원윤리강령	○
	국립중앙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	○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

구 분	규 정 명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내부규정대상
행정경영관리	국립중앙박물관 특임연구관 운영규정	
	국립중앙박물관 위임전결규정	○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공무원임용 및 시험실시권위임규정	
	국립중앙박물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국립중앙박물관 소방수칙	○
	국립중앙박물관 방호원 운영규정	○
	국립중앙박물관 당직근무 규칙	○
	국립중앙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국립중앙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국립중앙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권매표용환전금 관리규칙	

2-2. 국립민속박물관

2-2-1. 국립민속박물관의 설립목적

○ 국립민속박물관은 1945년 11월 국립민족박물관으로 창립되어 1946년 4월 개관된 이래로 1950년 12월에는 국립박물관에 흡수·통합되었고, 1966년 10월 및 1975년 4월에는 경복궁 내에 문화재관리국 소속의 한국민속관 및 한국민속박물관으로 개관하였고, 1979년 4월 국립중앙박물관 소속의 국립민속박물관, 1992년 10월 문화부 소속의 국립민속박물관으로 개편되었고, 1993년 2월부터는 현 건물로 이전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 이러한 국립민속박물관의 설립목적은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서 우리민족과 세계 각국의 생활양식·풍속 및 관습과 이에 사용된 도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의 관장에 두고 있다(동직제 제65조).

2-2-2. 국립민속박물관의 조직체계 및 기능

○ 국립민속박물관의 조직체계는 민속기획과·섭외교육과·전시운영과·민속연구과·유물과학과 및 어린이박물관과를 두고 있다(동직제시행규칙 제40조).

〔그림 14〕 국립민속박물관의 조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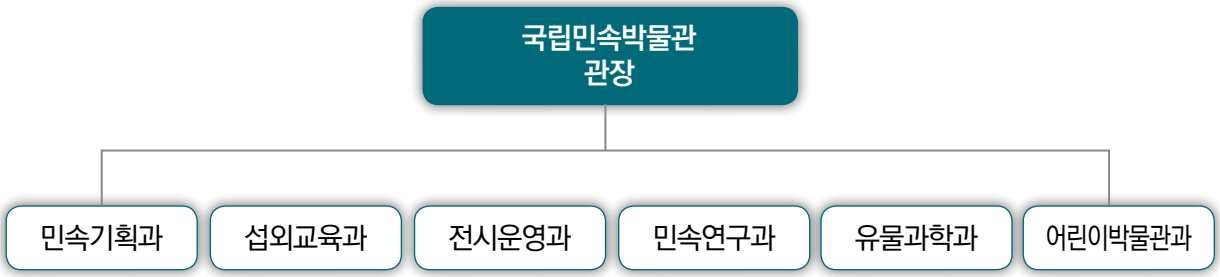

○ 또한 국립민속박물관은 그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동직제시행규칙 제40조).

〔표 35〕 국립민속박물관 조직체계의 기능

부 서	기 능
민속기획과	1. 민속문화의 진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보안 및 관인관수 3.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보존 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5.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분석 6. 예산·회계 및 결산 7.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8. 감사·국회 및 법제에 관한 업무 9.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0. 관람사항(관람안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관리 11.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섭외교육과	1. 민속문화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민속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및 보급 3. 국내외 문화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4. 민속문화에 관한 홍보 및 홍보자료의 발간 5. 관람안내 6. 자원봉사자의 운영 7. 교육관 및 교육시설의 관리·운영 8. 박물관 협력망의 구축 및 관련단체 지원 9. 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0. 민속 관련 박물관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및 양성 11. 전통세시풍속의 육성·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민속자료의 문화상품화에 관한 사항

부 서	기 능
전시운영과	1. 전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설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3. 특별기획 전시 및 교류 전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4.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 5. 국내외 민속 관련 박물관의 전시에 대한 지원 6. 민속자료의 국외 전시 및 민속학 자료의 국내 전시에 관한 사항 7. 국외 한국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전시 디자인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민속연구과	1. 전통생활사의 조사 및 연구 2. 전통공예기술과 생활문물의 조사 및 연구 3. 전통사회의 세시풍속·민속신앙·각종의례·민간의학 및 전통기구의 조사·연구 4. 전통사회의 관습, 향약, 교육, 정치, 경제 등의 제도 및 유적조사·연구 5. 동·서양의 민속 및 역사민속학의 비교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발굴·수집·고증 및 평가분석 7. 학술조사·연구자료의 발간 및 배포 8. 국내·외 박물관과의 학술·연구 교류 9. 민속 관련 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지원
유물과학과	1. 민속자료의 구입·수집·보존 및 관리 2. 자료대출 및 수탁과 복제·복사·모조·촬영 등의 허가 3. 자료의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 4. 자료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연구 5. 자료의 고증 6. 자료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자료 보존처리 지원 8. 민속 아카이브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어린이박물관과	1. 어린이 관련 전시 및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어린이 민속관 상설전시실·특별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3. 어린이 야외 체험 놀이마당의 관리·운영 4. 어린이 관련 기획전시·특별전시 및 교류전시 등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관련 국외전시 및 외국 문화재의 국내 전시 등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관련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관련 민속문화에 대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8. 어린이 관련 민속문화에 대한 교육 및 보급 9. 어린이 체험 교육관의 관리·운영 10.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11. 소외계층·장애인·다문화 가족 어린이 대상 교육 운영 12. 어린이 관련 민속문화에 관한 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13. 어린이 관련 교육 분야의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14. 그 밖에 어린이 관련 민속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2-2-3. 국립민속박물관의 시설

○ 국립민속박물관은 대지면적 40,344㎡, 건축면적 20,034㎡에 본관, 어린이박물관 체험학습관, 전통문화배움터, 보존과학실, 직원식당, 미화반실, 정문안내소, 청사관리원실, 청원경찰실을

갖추고 있다.

○ 국립민속박물관의 본관에는 상설전시실(3개), 기획전시실(2개), 강당, 뮤지엄숍, 정보검색실, 카페, 휴게실 등을, 본관 밖에는 야외전시물을 갖추고 있다.

- 국립민속박물관의 상설전시는 한민족 생활사, 한국인의 일상, 한국인의 일생으로 구성·전시되고 있다.
- 국립민속박물관의 야외공간에는 열두띠동산, 수표, 개항기상점, 돌하르방, 정조목과 정남, 오촌댁, 전차, 장승동산, 효자각, 추억의 거리, 연장방아, 문·무인석, 인쇄소, 회격묘, 물레방앗간 등을 설치하여 우리민족의 생활양식, 풍속, 관습 등을 전시하고 있다.

〔표 36〕 국립민속박물관 상설전시실의 운영내용

구 분	내 용
1전시실 (한민족 생활사)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민족의 대표적인 생활사 전시 : 역사 속으로/이 땅의 사람들, 자연 속에서 인간 속으로, 영역의 확장, 문화의 향유, 대중의 등장과 성장, 영상으로 본 한국인
2전시실 (한국인의 일상)	1년 주시로 반복되는 농경생활과 사계절의 변화에 맞춰 삶을 살아온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활상 전시 : 마을의 형성과 조직, 봄, 여름, 시장, 가을, 겨울, 나가며
3전시실 (한국인의 일생)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 집안의 개인이 타어나 죽을 때까지 겪게 되는 주요한 과정 전시 : 출생, 교육, 관례, 혼례, 가족, 출세, 풍류, 회갑, 치유, 상례, 제례

2-2-4. 국립민속박물관의 운영규정

○ 국립민속박물관은 중앙부처의 소속기관이므로 그 조직이나 업무범위는 중앙부처의 직제에서 규정되고, 그 하위의 내부규정은 관계법령에 따른 예규의 형식으로 제정 또는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 국립민속박물관의 구성원은 국립중앙박물관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이므로 직원의 임용, 승진, 복무, 징계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내부규정은 중앙부처의 공무원 관계규정 및 재산회계처리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 국립민속박물관의 내부규정도 국립중앙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조직이나 직제, 공무원에 적용되는 직원의 임용이나 회계처리규정 등을 제외한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관계법령이나 내부운영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관계법령이나 내부운영규정 중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내부규정으로 제정 가능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7〕 국립민속박물관 내부규정의 분석결과

구 분	규 정 명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내부규정대상
소장유물관리	국립민속박물관 자료관리규정	○
	국립민속박물관 자료구입규정	○
	국립민속박물관 수증 및 수탁규정	○
	국립민속박물관 자료복제 및 열람규정	○
유물전시기획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
	국립민속박물관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지침	○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규정	○
	국립민속박물관 대관규정	○
	국립민속박물관 관람료 및 관람권에 관한 규정	○
대외홍보협력	국립민속박물관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	○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	○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실 운영규정	○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 운영규정	○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관리규정	○
	국립민속박물관 교육운영규칙	○
	국립민속박물관 인턴십 운영규정	○
	국립민속박물관 영상채널 운영규정	
	국립민속박물관 강사등록제 운영규정	○
	국립민속박물관『국제저널 무형유산』발간규정	○
	국립민속박물관『민속학연구』간행규정	○
	국립민속박물관『생활문물연구』간행규정	○
	『어린이와 박물관연구』간행규정	○
행정경영관리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분장규정	△(직제)
	국립민속박물관 위임전결규정	○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

구 분	규 정 명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내부규정대상
행정경영관리	국립민속박물관 CCTV 설치·운영규정	○
	국립민속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규정	○
	국립민속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
	국립민속박물관 정보통신보안규정	○
	국립민속박물관 개인정보보호지침	○
	국립민속박물관 소방규칙	○
	국립민속박물관 방호근무규칙	○
	국립민속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국립민속박물관 관람권매표용환전금 관리규정	

2-3. 국립중앙과학관

2-3-1. 국립중앙과학관의 설립목적

○ 국립중앙과학관은 1927년 5월 은사기념과학으로 설립된 이래로 1945년 10월 국립과학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1949년 7월 국립과학관 직제가 제정되어 1962년 8월 국립과학관으로 개관하였으며, 1990년 4월 국립중앙과학관으로 확대 개편되어 1990년 10월 대전의 대덕으로 이전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 이러한 국립중앙과학관의 설립목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이공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연구·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무의 관장에 두고 있다(동직제32조).

2-3-2. 국립중앙과학관의 조직체계 및 기능

○ 국립중앙과학관의 조직체계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경영기획과, 운영지원과, 과학교육과, 과학문화홍보팀 및 전시연구단을 두고 있다.

〔그림 15〕 국립중앙과학관의 조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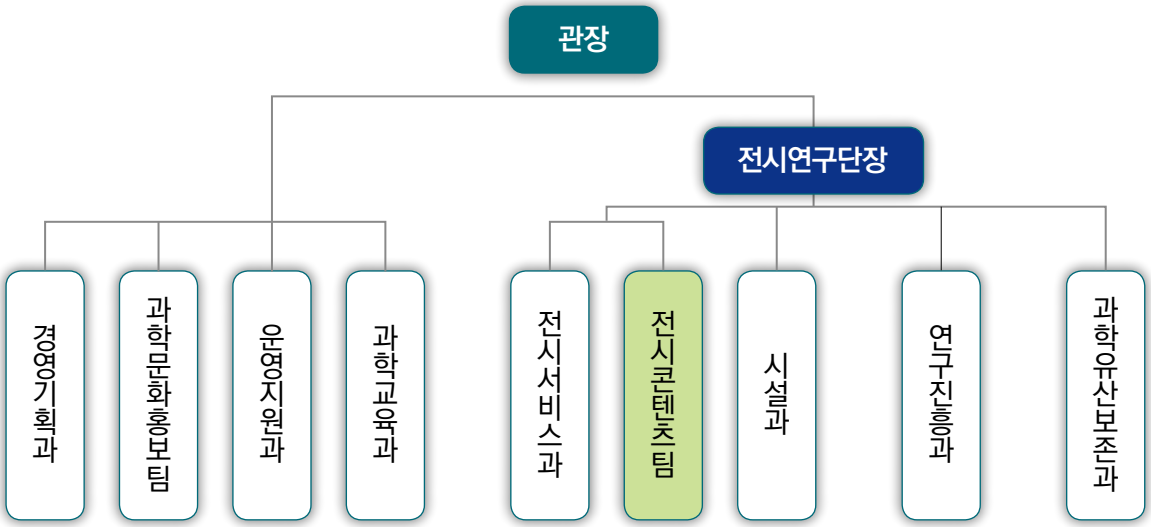

○ 또한 국립중앙과학관은 그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① 과학기술의 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② 과학기술관·천체관·사이언스홀·생물탐구관·특별전시관·과학캠프관·과학교육관·자기부상열차·우주체험관·창의나래관 등 운영, ③ 전국과학전람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및 대한민국 국제청소년과학창의제전(KISEF)에 관한 사항, ④ 과학기술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및 각종 과학행사에 관한 사항, ⑤ 과학기술 자료의 수집·발굴·조사·연구·보존·제작 및 전시에 관한 사항, ⑥ 과학기술의 보급 관련 특별전시에 관한 사항, ⑦ 과학기술 전시·연구·교육에 관한 정보화, ⑧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성과 전시·확산·홍보, ⑨ 과학기술 자료의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⑩ 과학기술유산의 체계적인 발굴·조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⑪ 겨레과학기술응용개발사업 추진, ⑫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의 한국위원회 및 한국사무국 운영, ⑬ 전국 국·공·사립 과학관에 대한 지원·자문과 국내 및 외국 과학관과의 협력 증진, 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임하는 업무, ⑮ 과학관 운영과 관련된 부대사업 및 수탁사업, ⑯ 기타 과학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 그리고 국립중앙과학관의 조직은 그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동기본규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51조).

〔표 38〕 국립중앙과학관 조직체계의 기능

부 서	기 능
경영기획과	1. 국립중앙과학관 장·단기 발전방안 기획 및 운영 2. 신규 사업의 개발 기획 3.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4. 국립중앙과학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주요업무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7.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성과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조직 및 정원의 관리 10.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2. 국정감사 등 대 국회 업무 총괄 1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및 기타 인사사무 14.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15. 내부규정의 관리에 관한 사항 16. 연보 작성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17. 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운영지원과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등 서무에 관한 사항 3.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및 관리 4. 을지 및 재난대응 훈련 등 비상대비 업무 5. 청사의 방호 및 청사환경관리 6. 관용차량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일반적인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 9. 직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0.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업무 11.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12. 국유재산의 관리 13. 관람료·주차료의 징수 및 각종 수익사업의 관리 14. 정보화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운영 15.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6.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17. 과학경진대회 출품작 데이터베이스화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18. 공공데이터 제공 ·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 19. 정보기술아키텍쳐(EA)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 20. 전산위탁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1. 과학기술관련 비영리법인 인·허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과학교육과	1. 과학기술 지식 확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사이언스데이, 수학체험전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3. 전국과학전람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개최 및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 참가 기본계획 수립·운영 4. 과학경진대회 관련 특별전시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5. 무한상상실 운영 및 전국무한상상실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내 과학기술 교육 관련 단체와의 교류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7. 과학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부 서		기 능
과학교육과		8. 청소년의 학교 밖 과학기술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9. 과학교실 등 창의과학교육 총괄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10. 과학기술체험 교육시설 및 기자재 확보에 관한 사항 11. 과학교사 등 전문직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2. 국·내외 과학교육기관의 조사·분석 13. 교육관 및 과학캠프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4. 성인 및 가족단위 참가 과학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15. 기타 과학관 내·외부 과학교육에 관한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과학문화홍보팀		1. 종합홍보계획의 수립·운영 2. 과학관 꿈기자단 운영에 관한 사항 3. 언론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운영 4. 과학관 홍보물의 제작·배포에 관한 사항 5. 국내 과학관에 대한 자료관리 및 교류협력 6. 과학관 협력망 구축·지원에 관한 사항 7. 기관 후원명칭 사용 등 후원에 관한 사항 8. 과학문화행사 기획·운영·유치에 관한 사항 9. 사이언스홀과 세미나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내 과학기술 문화 관련 단체와의 교류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전시연구단	전시서비스과	1. 장·단기 종합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이공학, 산업기술, 과학기술사, 자연사분야의 중·장기 전시품 교체 계획 수립, 조정 및 총괄 3. 전시품 기획 · 제작 · 설치에 관한 사항 4. 전시 및 전시품 관련 운영심의회 운영 5. 과학기술관, 자연사관, 창의나래관, 야외전시장 전시품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6. 전시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7. 전시관 운영관리 총괄 8. 전시장 관람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자원봉사자, 과학해설사 등 외부 지원인력의 활용계획 수립 · 운영 및 총괄 10. 전시해설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1. 전시시설 및 전시품 활용 체험프로그램 운영 12. 전시관 운영요원의 교육 및 관리 13. 종합안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4. 관람객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5. 관람객 안전관리 및 관람객 배상 · 보험 등에 관한 사항 16. 고객서비스 관련 사항 17. 모니터링단 운영(고객서비스헌장 운영 포함)관리에 관한 사항 18. 장 · 단기 및 연도별 고객창출계획 수립 · 시행 19. 관람객의 통계 작성, 유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0. 홈페이지(스마트과학관 포함) 및 웹진 운영에 관한 사항 21. 회원에 운영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전시연구단내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시콘텐츠팀	1. 특별전 기획·운영·유치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정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 전시기획 3. 국내·외 과학관 전시자료 조사 및 전시품 제작 협력 4. 전시품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보급 5. 스마트과학관 학습콘텐츠 등 온라인 전시콘텐츠 제작에 관한 사항

부 서		기 능
전시연구단	시설과	1. 시설 현대화 종합계획 수립 2. 첨단연구성과 종합전시관 건립 관련사항 3. 대규모 전시시설 기획 및 건립에 관한 사항 4. 시설 종합 활용 및 관리 계획 수립·시행 5.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전력 및 냉·난방 등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7. 조경관리에 관한 사항 8. 용역의 총괄 및 종합계획 수립·운영 9.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타 과학관 시설운영관리에 관한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연구진흥과	1. 과학기술 연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과학기술 전시기법 연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 연구개발성과물 수집 및 전시활용 지원 4. 과학기술 전시·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 자료의 전시·연구·교육관련 국내·외 학술활동 6. 학술조사 및 연구보고서 발간·배포에 관한 사항 7. 문화재 지표·발굴조사, 생태계 연구 등 연구수탁사업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과학관 및 유관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전문적인 지도 및 자문 9. 겨레과학기술 원리연구에 관한 사항 10. 과학관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1.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국가자연사연구종합시스템(NARIS) 정보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의 한국사무국 및 한국위원회 운영·관리 14.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공동조사단 운영
	과학유산보존과	1. 과학기술 유산의 수집·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 2. 과학기술 유산의 조사 및 수집에 관한사항 3. 과학기술 유산의 제작 및 복원·보존 과학 연구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 유산의 국가적 관리를 위한 규정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 유산의 구입·대여·수증·수탁 및 반출·반입에 관한 사항 6. 과학기술 유산의 관리 및 DB구축과 연계정보 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 유산의 목록연구, 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8. 수장고 시설물 관리 및 보존 자료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3-3. 국립중앙과학관의 시설 및 위탁사업

○ 국립중앙과학관은 대지면적 178,232㎡, 건축면적 49,468㎡에 9개 전시관과 사이언스홀, 야외전시물, 가족캠프장, 자기부상열차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표 39〕 국립중앙과학관 주요시설의 운영내용

구 분	내 용
과학전시관	상설전시관(기초과학, 근현대과학기술/겨레과학기술, 첨단과학기술체험관, 로봇세상으로 초대, 생애주기체험관)
자연사관	공룡증강현실체험
창의나래관	S-그라운드, T-그라운드, C-그라운드, 나래홀
꿈아띠체험관	곤충생태관, 자연생태공원, 공룡역사광장, 옥외전시장
생물탐구관	상록수 200여종, 야외(교재생물원, 죽림원, 공룡동산 등)
천체관	영상 상영, 별자리 등 해설, 음악회
사이언스홀	강연, 발표회, 공연 및 행사를 위한 문화예술 공간

○ 또한 국립중앙과학관은 전시관을 비롯하여 교육·체험 프로그램 및 관람객 편의시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위탁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 40〕 국립중앙과학관의 위탁사업 운영

사 업 명	사업내용	교육대상	사 업 비
전시연계 여름/가을 특별체험프로그램	상설전시관 관람, 과학체험, 사이언스 워터체험, 과학 공연	유·초등 단체 및 개인	참가비
과학전시전문인력 양성 과정	과학전시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과학관 현장 실무 능력 고양	전시 관련 대학(원)생, 과학관 및 유사기관 소속 실무자, 일반인	전액 정부지원
과학전시전문인력 지원사업	과학전시 기획 및 전시콘텐츠 분야의 전문가 과정	대학생 및 일반성인	총 90,000천원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캠프 체험활동	학교 밖 체험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일반, 교사 등	참가비 징수, 시설 대관료 납부
과학교육프로그램 전문운영	기초과학, 응용과학, 발명교실, 창의력계발과정, STEAM과정, 창의력수학	주말 개인교육	참가비 징수, 시설 대관료 납부
국립중앙과학관 STEAM 주말프로그램	창의적이며 자기주도적인 과학기술인 양성, 초·중고등 대상 이공계 진로탐구 프로그램을 운영	초등·중고등	참가비 징수, 시설 대관료 납부
전시관 운영 위탁관리			

사 업 명	사업내용	교육대상	사 업 비
과학전시기법·교육프로그램 개발	최신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과학전시물 제작기법 또는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증진하는 과학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과학기술전시연구회 회원	8,000천원 (과학전시물 제작기법) 7,000천원 (창의적 과학교육프로그램)
국립중앙과학관 편의시설 사용·수익허가	식당, 음료자판기, 간이매점, 기념품점		27,504,800 7,551,600 (기념품점)
소속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통합조사	고객만족도 평가		

2-3-4. 국립중앙과학관의 운영규정

○ 국립중앙과학관은 중앙부처 소속책임운영기관이므로 그 조직이나 업무범위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부처의 직제 및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에서 규정되고, 그 하위의 내부규정은 기본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제정 또는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 그러나 국립중앙과학관의 구성원은 공무원이므로 직원의 임용, 승진, 복무, 징계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내부규정은 중앙부처의 공무원 관계규정 및 재산회계처리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 국립중앙과학관의 내부운영규정 중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내부규정으로 제정 가능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 국립중앙과학관 내부규정의 분석결과

구 분	규 정 명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내부규정대상
소장유물관리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수증 및 수탁규정	○
	국가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규정	
유물전시기획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관 운영 및 요원근무규칙	○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세칙	○
	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 징수규정	○
	국립중앙과학관 시설대관규정	○

구 분	규 정 명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내부규정대상
대외홍보협력	국립중앙과학관 아카이브운영규정	○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관리운영규정	○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운영규정	○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관리규정	
행정경영관리	국립중앙과학관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	△(직제)
	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
	국립중앙과학관 안전관리규정	○
	국립중앙과학관 부설주차장관리규정	○
	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2-4. 국립과천과학관

2-4-1. 국립과천과학관의 설립목적

○ 국립과천과학관은 2007년 9월 설립된 이래로 2008년 11월 공식 개관하였고, 2009년 9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 이러한 국립과천과학관의 설립목적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국립과천과학관은 기초과학·응용과학·자연사 및 과학기술사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연구·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무의 관장에 두고 있다(동직제34조).

2-4-2. 국립과천과학관의 조직체계 및 기능

○ 국립과천박물관의 조직체계는「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국립과천과학관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경영기획과, 고객창출과, 운영지원과 및 전시연구단을 두고 있다(동기본운영규정 제10조).

〔그림 16〕 국립과천과학관의 조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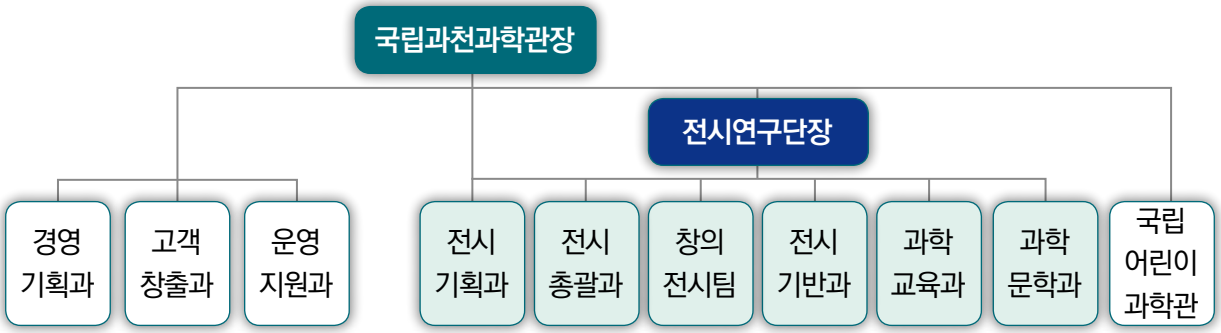

○ 또한 국립과천과학관의 조직은 그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동기본규정 제10조).

〔표 42〕 국립과천과학관 조직체계의 기능

부 서	기 능
경영기획과	1. 국립과천과학관 장기 발전방안의 기획 ·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요 업무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3.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요인력의 확보, 정원관리 등 조직 편제에 관한 사항 6. 법령 및 내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7. 공직기강, 부패방지 등 감사 및 사정에 관한 사항 8. 국정감사 등 대국회 업무에 관한 사항 9. 해외 과학관 및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10. 국립과천과학관 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1. 전문가·이해관계자·고객에 관한 사항 12. 전시 기획 및 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 13.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4. 신규 사업의 개발 기획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15. 사업별, 항목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 16. 주요 사업(예산)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국립과천과학관 내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고객창출과	1. 장·단기 및 연도별 고객창출(마케팅)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고객 대상층 및 규모별 차별화된 고객 확대유치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종합적인 고객만족도 제고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관람객의 통계 작성, 유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단체 관람객 유치 방안에 관한 사항 6. 고객 지원·안내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회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관람객 안전 및 배상 등 고객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9. 전국 및 수도권의 중심과학관 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 10. 고객서비스헌장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과학관후원재단(사, 과학사랑희망키움)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부 서		기 능
고객창출과		12. 종합홍보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언론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홍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14. 개인·단체·기관 등 과 의 협력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15. 국내 과학관의 동향 및 정책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16.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국립과천과학관 내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고객지원 및 홍보 관련 사항
운영지원과		1. 보안 및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등의 임용·교육훈련·연금 등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등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6.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업무에 관한 사항 8. 세입금의 결정,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0. 비상계획업무에 관한 사항 11. 청사 등 시설물의 설치·유지·보수 및 관리·안전에 관한 사항 12. 전력 및 냉난방 등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립과천과학관 내 다른 과·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관련 사항
전시연구단	전시기획과	1. 중·단기 종합전시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중·단기 전시품교체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전시시설(관) 현대화(리모델링)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신규 전시품 기획·설계·제작·설치·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5. 신규 사업 기획 및 전시관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학술·연구 용역을 통한 국내·외 협력활동에 관한 사항 7. 전시기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지역과학관 전시품 제작 지원 사업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9. 과학기술정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 전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전시연구단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전시분야 사항
	전시총괄과	1. 상설전시관(기초·전통·첨단·자연사·어린이탐구) 및 옥외전시관(천체 투영관·관측소, 스페이스월드 등) 등의 전시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전시품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상설전시관 소규모 전시품 제작·설치·교체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상설전시관 연계 소규모 이벤트성 교육·문화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5. 전시관 운영직원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전시해설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천문우주 관련분야 소규모 전시품 제작·설치·교체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천문우주 관련분야 전시물 연계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9. 천문우주 관련분야 전시자료의 수집·보존·연구·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천문우주 관련분야 국내·외 학술 및 협력활동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전시연구단내 다른 과·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전시운영 관한 사항
	창의전시팀	1. 프론티어 창작전시관(메이커랜드, 노벨전시관, 명예의 전당 등) 및 옥외전시관(곤충생태관, 생태공원, 역사의 광장, 지질·공룡동산·발사체 등) 전시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질생태 관련분야 소규모 전시품 제작·설치·교체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프론티어 창작전시관 연계 소규모 이벤트성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부 서		기 능
전시연구단	창의전시팀	4. 지질생태 관련분야 전시자료의 수집·보존·연구·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지질생태 관련분야 국내·외 학술 및 협력활동에 관한 사항 6. 조경 및 수목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른 과·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옥외 전시관(품) 관련 사항
	전시기반과	1. 전시공간 중장기 배치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상설 및 옥외 전시기반 시설 및 편의시설 기획·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시품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전시품관리시스템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 자료실 관리 운영 6. 전시·학술·연구 자료의 구입·수집·보존 및 대여, 수증·수탁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과학문화단체(비영리법인 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시시설 안전에 관한 사항 9. 전시관 내·외 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10. 전시장 관람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1. 자원봉사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전시관 운영요원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전시품 관리 및 수장고 운영에 관한사항 14. 스마트 전시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5.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운영에 관한 사항 16. 행정정보화 및 행정전산시스템의 운영 관리 · 지원에 관한 사항 17.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18.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9. 사이버전시교육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0. 온라인 기능성 게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전시연구단내 다른 과·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전시기반조성 관련사항
	과학교육과	1. 과학교육 종합계획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과학탐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과학교사 등 전문직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분야 전시전문가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부모 등 성인 대상 과학교육프로그램 기획 · 운영에 관한 사항 6. 과학기술 체험 · 교육시설 운영관리 및 기자재 확보에 관한 사항 7. 과학캠프프로그램 및 관련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과학기술 자료실(학부모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동아리 Lab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과학교육기관의 조사 분석에 관한 사항 11. 과학탐구 여행프로그램 기획 ·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립과천과학관내 다른 과 · 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과학문화과	1. 과학문화프로그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2. SF축제 등 과학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과학문화 경연(과학송, 골드버그 등) 대회 및 공연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과학문화사업 관련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5. 특별전 및 기획전시 기획·유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과학문화 공연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과학행사의 섭외 · 유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과학문화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과학문화시설(어울림홀, 상상홀, 창조홀, 과학문화공간 등) 및 야외 과학문화공간(과학광장, 과학문화광장 등)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과·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학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2-4-3. 국립과천과학관의 시설 및 위탁사업

○ 국립과천과학관은 대지면적 243,970㎡, 건축연면적 52,488㎡에 6개 상설전시관과 스페이스월드, 천체관, 천체관측소, 옥외전시장, 과학캠프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표 43〕 국립과천과학관 주요시설의 운영내용

구 분	내 용
전시관	어린이탐구체험관, 기초과학관, 자연사관, 전통과학관, 첨단기술관, 미래상상SF관
프론티어창작관	노벨상과 나, 명예의 전당, 무한상상메이커랜드
천문우주관	천체투영관, 천체관측소, 스페이스월드
야외전시관	곤충생태관, 자연생태공원, 공룡역사광장, 옥외전시장
VR전시관	

○ 또한 국립과천과학관도 전시관을 비롯하여 교육·체험 프로그램 및 관람객 편의시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위탁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 44〕 국립과천과학관의 위탁사업 운영

사 업 명	사업내용	교육대상	사 업 비
'무한상상 2017, 메이커랜드 축제' 행사 위탁운영	생활 속의 메이커들이 직접 만든 창작품들을 거래 행사 관련		
천문우주시설 위탁운영			
2017년 상설전시관 위탁운영			
과학교육프로그램	기초과학심화과정(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수학 강좌 등) 및 응용과학과정(전자, 로봇, 디자인, 컴퓨터 강좌 등)	유아부터 성인까지 가능(주 대상은 어린이, 청소년)	참가비 징수, 시설 대관료 납부 ※ 대관료는 연간 약 1천만원 내외로 강의(실험)실 면적에 따라 다름
2014 NTTP 연구년 위탁연수			
국립과천과학관 과학직업체험캠프 프로그램	미래유망 과학기술 관련 직업을 탐색하는 과학직업체험 캠프 프로그램	초등 4학년~중학생	참가비 징수, 시설대관료, 입장료 및 운영관리비(매출액의 5%)를 과천과학관에 납부
전통도예체험공방	전통도예체험과 관련된 체험교육 프로그램		약 1,300만원
온라인게임 콘텐츠 유지보수			

사 업 명	사업내용	교육대상	사 업 비
과학희망캠프			
과학체험학습	학교 밖 과학체험활동	어린이, 청소년	참가비징수
이공계창의과학 캠프	이공계분야 인재양성을 위하여 청소년들이 과학에 대한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학프로그램	청소년	참가비 징수
천문우주 아카데미	고급 천문우주 정보를 제공하는 천문프로그램	청소년 및 성인	참가비 징수
우주상상탐험대	천문우주분야에 대해 직접 체험,학습	어린이, 청소년	참가비 징수
과학일일현장체험 프로그램	전시물과 연계한 과학문화체험 활동	유아·초등학생	참가비 징수, 과학관 시설대관료, 입장료 및 운영관리비(매출액의 5%)를 과천과학관에 납부
기념품점 사용, 수익허가	기념품점		연간사용료 예정가격: 33,192,440원
곤충생태관 관리	곤충생태관 시설운영, 시설물 모니터링, 특별프로그램 기획 · 운영		120,000천원/연간
국립과천과학관 편익시설 관리	직원식당 외 관람객 편의시설		
전동차휴게음식점	푸드트레일러		
자동판매기	음료, 커피, 화장지 (총 12대)		연간사용료 예정가격: 16,350,750원

2-4-4. 국립과천과학관의 운영규정

○ 국립과천과학관은 중앙부처 소속책임운영기관이므로 그 조직이나 업무범위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부처의 직제 및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에서 규정되고, 그 하위의 내부규정은 기본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제정 또는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 그러나 국립과천과학관의 구성원도 공무원이므로 직원의 임용, 승진, 복무, 징계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내부규정은 중앙부처의 공무원 관계규정 및 재산회계처리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 국립과천과학관의 내부운영규정 중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내부규정으로 제정 가능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5〕 국립과천과학관 내부규정의 분석결과

구 분	규 정 명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내부규정대상
소장유물관리		
유물전시기획	전시품 관리규정	○
	전시품 관람규칙	○
	전시장 운영 및 운영요원 근무규칙	○
	전시기획 및 정책자문 운영규정	○
	전시해설사 인증제 운영규정	
	관람료 징수규정	○
	대관규정	○
대외홍보협력	과학교육 및 문화행사 운영규정	○
	홈페이지관리 운영규정	○
	회원제 운영규정	○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
	후원회 및 후원회원 지원규정	○
	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규정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
행정경영관리	사무분장규정	○
	위임전결규정	○
	인사관리규정	○
	공무원 행동강령	
	보수조정심의회 운영규정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일상감사지침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예산집행심의워원회 운영규정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
	보안업무 처리규정	○
	방호요원 근무규정	○
	안전관리규정	○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
	상표 등 관리지침	
	시각물 및 기에 관한 규정	
	CCTV 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

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내부규정의 제정안

3-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내부규정 체계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 이후의 운영에 필요한 내부규정의 제정을 위하여 유사기관의 내부규정 체계 및 사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46〕 유사기관의 내부규정체계 비교

구 분	내부규정 체계(안)	국립중앙 박 물 관	국립민속박물 관	국립중앙 과 학 관	국립과천 과 학 관	정책판단 여 부
유물관리	유물관리규정	소장품관리규정	자료관리규정	유물관리규정		×
			자료구입규정			
			자료복제 및 열람규정			
			수증 및 수탁규정	전시품 수증 및 수탁규정		
		소장품국외 대여전시규정				
		소장품 보존처리 및 조사분석 규정				
전시기획	전시관리규정			전시품 운영세칙	전시품 관리규정	×
					전시품 관람규칙	
					전시기획 및 정책자문 운영규정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전시실 관리 및 운영지침		전시장 운영 및 운영요원 근무규칙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지침			
			어린이박물관 전시실 운영지침			
	관람료 징수규정	무료관람권 발급 규정	관람료 및 관람권에 관한 규정	관람료 징수규정	관람료 징수규정	×
	대관규정	대관규정	대관규정	시설대관규정	대관규정	×

구 분	내부규정 체계(안)	국립중앙 박 물 관	국립민속박물 관	국립중앙 과 학 관	국립과천 과 학 관	정책판단 여 부
교육홍보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자원봉사 관리운영규정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
	홈페이지운영규정	홈페이지 운영지침	홈페이지 관리규정	홈페이지관리 운영규정	홈페이지관리 운영규정	×
	회원제운영규정				회원제운영규정	×
	아카이브운영규정	도서관운영규정	자료실 운영규정	아카이브 운영규정		×
		디지털자료 관리규정	아카이브 운영규정			×
	후원회운영규정	동호인지원지침			후원회 및 후원회원지원규정	×
	교육실습생 운영규정	교육실습생 운영규정	인턴십 운영규정			×
	교육운영규정 교육운영규정		교육운영규칙	과학교육 운영규정	과학교육 및 문화행사 운영규정	×
			강사등록제 운영규정			×
	문화상품관리규정	문화상품관리규정	문화상품 관리규정			×
학술연구	연구사업관리규정	외부학술연구용역 사업관리지침			자체연구사업 관리규정	×
	연구자료집 발간규정	미술자료발간규정	국제저널무형유산 발간규정			×
			민속학연구 간행규정			
			생활문물연구 간행규정			
			어린이와박물관연구 간행규정			
행정관리	직제규정 직제규정		사무분장규정	정원 및 사무분장규정	사무분장규정	○
		위임전결규정	위임전결규정		위임전결규정	
	인사규정 인사규정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인사관리규정	인사관리규정	○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보수규정					○

구 분	내부규정 체계(안)	국립중앙 박 물 관	국립민속박물 관	국립중앙 과 학 관	국립과천 과 학 관	정책판단 여 부
행정관리	회계규정					×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안전관리규정	소방수칙	소방규칙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규정	×
	주차장관리규정	주차장 관리규정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
	보안업무처리규정		정보통신보안 규정		보안업무 처리규정	×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개인정보보호지침			
	당직근무규정	당직근무규칙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
	방호원운영규정	방호원 운영규정	방호근무규칙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규정	CCTV설치· 운영규정		CCTV설치·운영 등 관리규정	×
	직원윤리규정	직원윤리규정				×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내부규정을 제정할 때에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유물관리나 전시기획 및 홍보협력 분야는 특별한 정책적 판단을 요하지 않으나, 행정관리에 있어서 직제, 인사, 보수규정 등은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부분이다.

-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중앙부처의 소속기관이나 책임운영기관은 그 직원의 인사, 보수, 회계에 관한 규정이 국가(공무원) 관계법령에 따라 통일적 적용을 받으나,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은 그 직원의 인사, 보수규정에 별도의 민간 경영적 마인드가 고려되는 정책적 판단사항이 작용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규정의 획일적 적용은 곤란하다.
- 중앙부처의 소속기관이나 책임운영기관과 달리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이나 민법·상법에 의한 법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 인사, 보수규정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 채, 조직 내에서 자율적으로 탄력적이며 신축성 있게 제정·운영하고 있다.

○ 또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내부규정을 제정할 때에는 지나치게 경직된 공무원조직의 내부규정 형태 보다는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준수하여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급변하는 사회적·문화적 환경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민간 경영마인드를 반영하여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내부규정을

자율적으로 제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사기관의 내부규정 체계를 바탕으로 설립 초기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내부운영규정의 체계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내부규정체계는 유물관리, 전시기획, 교육홍보, 학술연구, 행정관리 분야로 구분한다.
- 유물관리 분야는 유물의 구입, 유물의 수증, 유물의 관리, 유물의 출납, 수장고의 관리, 유물의 복제 및 열람, 유물의 수탁, 외부유물의 반입 및 반출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유물관리규정을 제정·운영한다.
- 전시기획 분야는 전시를 규율하는 전시관리규정을 제정·운영한다.
- 교육홍보 분야는 교육, 자원봉사, 홍보, 연구협력 등을 규율하는 교육운영규정, 교육실습생운영규정, 자원봉사자운영규정, 홈페이지운영규정, 회원제운영규정, 후원회운영규정, 문화상품관리규정을 제정·운영한다.
- 학술연구 분야는 연구사업관리규정, 연구자료집발간규정, 아카이브운영규정을 제정·운영한다.
- 행정관리 분야는 조직, 인사, 보수, 회계, 안전, 보안 등을 규율하는 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회계규정, 자문위원회운영규정, 대관규정, 관람료징수규정, 안전관리규정, 주차장관리규정, 보안업무처리규정, 당직근무규정, 방호원운영규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규정, 직원윤리규정을 제정·운영한다.

〔표 47〕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내부규정체계안

편 별	규 정 명
제1편 유물관리	1-1.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유물관리규정
제2편 전시기획	2-1.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전시관리규정
제3편 교육홍보	3-1.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교육운영규정 3-2.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교육실습생운영규정 3-3.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자원봉사자운영규정 3-4.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홈페이지운영규정 3-5.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회원제운영규정 3-6.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후원회운영규정 3-7.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문화상품관리규정
제4편 학술연구	4-1.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연구사업관리규정 4-2.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연구자료집발간규정 4-3.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아카이브운영규정
제5편 행정관리	5-1.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직제규정 5-2.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인사규정 5-3.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보수규정 5-4.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회계규정

편 별	규 정 명
제5편 행정관리	5-5.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자문위원회운영규정 5-6.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대관규정 5-7.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관람료징수규정 5-8.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안전관리규정 5-9.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주차장관리규정 5-10.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보안업무처리규정 5-11.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당직근무규정 5-12.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방호원운영규정 5-13.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규정 5-14.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직원윤리규정

3-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핵심적 내부규정안

○ 본 연구에서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내부운영규정 제정대상 중 설립위원회 등의 정책적 판단을 요하지 않는 일반적인 규율사항으로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특성 및 운영의 필요성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 내부규정안으로서 대표적인 유물관리규정, 대관규정, 관람료징수규정, 자원봉사자운영규정, 후원회운영규정, 자문위원회운영규정의 제정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3-2-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유물관리규정(안)

〔표 48〕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유물관리규정 제정안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유물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라 한다) 유물의 수집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입”이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유물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양도받아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4. “출납”이란 유물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수장고에서 대출하거나 수장고에 격납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여”란 외부의 요청에 따라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소장하는 유물을 전시·연구 등의 목적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차용”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전시·연구 등의 목적으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으로 빌려오는 것을 말한다.
7.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일정기간 동안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8. “수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일정기간 동안 위임받아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9. “반입”이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또는 외부의 유물(이하 “외부유물등”이라 한다)이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10. “반출”이란 외부유물등이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
11. “유물DB"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유물표준관리시스템에서 생산, 관리, 활용하는 유물의 디지털정보를 말한다.
12. “열람”이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유물과 이에 준하는 자료(이하 “이하 유물자료”라 한다)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13. “복제”란 유물자료를 직접 촬영·모사·모조·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4. “유물자료이미지저작물”이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유물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작한 이미지 저작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유물
2. 등록예정유물
3. 수탁 등 일시 보관유물
4. 유물에 준하는 자료
5. 유물자료이미지저작물

제2장 유물의 수집

제1절 구입

제4조(구입방법)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공고 또는 추천을 받아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② 관장은 공고를 통하여 유물을 구입(이하 “일반구입”이라 한다)하려는 때에는 구입대상 유물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추천을 받아 유물을 구입(이하 “특별구입”이라 한다)하려는 때에는 유물을 필요로 하는 부서의 서면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5조(구입서류) ① 관장은 유물을 매도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유물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유물소장내력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문화재매매업허가증(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
4.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매도신청유물을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매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매도신청유물임시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구입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을 구입할 수 없다.
1.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
3.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된 경우

제7조(구입대상유물의 평가 및 선정) ① 관장은 구입대상유물의 자체평가 및 선정을 위하여 구입대상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와 구입대상유물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이 경우 특별구입을 하는 때에는 평가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고, 유물매도신청인은 평가위원회와 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참가할 수 없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1차 평가위원회와 제2차 평가위원회로 구성·운영한다. 이 경우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제1차 평가위원회는 관련 전공의 학예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며, 구입대상문화재의 가치 및 가격을 평가한다.
2. 제2차 평가위원회는 학예연구본부장, 유물관리팀장 및 전시기획팀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학예연구본부장이 되며, 제1차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유물의 구입여부와 가격을 결정한다.

③ 제2항의 평가위원회는 구입대상유물의 가격을 평가 및 결정할 때에 매도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선정위원회는 전·현직 문화재위원이나 시·도문화재위원이 포함된 외부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유물의 구입여부와 가격을 최종 확정한다.

⑤ 평가위원회와 선정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평가기록은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8조(구입) ① 관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최종 확정된 유물의 매도자와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유물을 구입한다.

② 관장은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을 구입제외 결정일 또는 최종 심의가 끝난 10일 이내에 해당 유물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유물을 즉시 되돌려주어야 한다.

제9조(구입취소) 관장은 구입절차가 완료한 유물이 제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유물의 구입을 취소하고, 유물매도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수하며, 해당 유물을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2절 기증 및 수증

제10조(기증신청) ① 관장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기증원을 작성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수증심의)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수증여부를 결정하는 유물수증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대상유물의 문화재적 가치
2. 전시 및 학술연구의 활용도
3. 기타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유물수증심의위원회는 학예연구본부장, 유물관리팀장 및 전시기획팀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학예연구본부장이 된다. 이 경우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유물수증심의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심의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수증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12조(수납서교부) 관장은 유물수증심의위원회에서 수증이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유물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제13조(수증조건) 수증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수증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1.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서 필요치 않은 유물 또는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 3 장 유물의 관리

제1절 유물의 관리일반

제15조(관리기관) 관장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16조(관리자와 분임관리자 및 분임보조관리자) 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는 유물의 출납 등 유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 분임관리자 및 분임보조관리자를 둔다.

② 관리자는 학예연구본부장, 분임관리자는 유물관리팀장, 분임보조관리자는 학예사로 구성한다.
③ 관리자, 분임관리자 및 분임보조관리자의 지정은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에 따라 당연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7조(등록) 관장은 구입·기증 등으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수집된 유물을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대장에 작성·비치하고, 그 유물의 정보를 유물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점검) ① 관리자는 수시로 유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유물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월등록유물증감보고에 매월 말 작성하고, 이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유물의 손상·분실·도난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유물의 손상·분실·도난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손상유물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이 경우 손상유물처리위원회는 학예연구본부장, 유물관리팀장 및 전시기획팀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학예연구본부장이 된다.
1. 손상 유물의 수리·복원 및 가치평가에 대한 사항
2. 분실 유물의 가치평가
3. 관계 직원의 책임

제19조(수리 등) 유물을 수리 또는 복원하려는 때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소독) ① 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수장고를 소독하여야 하고,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유물은 포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유물이 외부로부터 수장고로 반입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방충·방역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인계인수) 관리자의 교체로 유물을 인계인수할 때에는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2절 유물의 출납

제22조(출납) ① 유물의 출납은 관리자의 책임 하에 행한다.
②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내에서 유물을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대출요청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유물격납요청서를 작성한 후 유물을 이동한다.
③ 관리자는 유물표준관리시스템에 유물의 출납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관리자 부재 시 출납) ① 관리자의 부재 시 유물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분임관리자의 책임 하에 출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물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관리자에게 그 사유와 출납사항을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수장고의 출입관리

제24조(출입) ① 수장고의 출입은 2인 이상이 함께 하여야 하고, 분임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열쇠출납부에 따라 열쇠를 출납한다.
② 수장고의 출입자는 모두 성명과 출입시간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장고관리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공휴일 및 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를 출입하려는 때에는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재 등 비상사태의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25조(열쇠관리) 수장고의 열쇠는 두 벌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관리자와 당직책임자가 봉인하여 별도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분임관리자가 보관·사용한다.

제4절 유물의 대여

제26조(대여) ① 관장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물을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대여한 때에는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유물의 보관장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물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여받으려는 유물의 명칭 등이 수록된 유물의 목록
2. 대여 목적
3. 대여 기간
4. 대여받으려는 유물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 현황
③ 관장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물의 대여를 승인할 때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유물대여승인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그 유물의 포장 및 운송, 사진촬영 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그 유물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관장의 요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배상 및 수리·복원 조치의 책임을 진다.
⑤ 관장은 제4항의 수리·복원 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물을 대여받은 자에게 보험가입을 요구하고, 유물을 대여받은 자는 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7조(유물보험평가위원회) ① 관장은 유물의 보험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유물보험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유물보험평가위원회는 학예연구본부장, 유물관리팀장 및 전시기획팀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학예연구본부장이 된다. 이 경우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유물의 보험평가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의 유물보험평가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④ 차용기관의 요청에 따른 차용유물의 보험평가액의 결정도 이에 준한다.

제5절 유물의 기탁 및 수탁

제28조(기탁신청) ① 관장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기탁받을 수 있다.
②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기탁하려는 자(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수탁심의)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수탁여부를 결정하는 유물수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대상유물의 문화재적 가치
2. 전시 및 학술연구의 활용도
3. 기타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유물수탁심의위원회는 학예연구본부장, 유물관리팀장 및 전시기획팀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학예연구본부장이 된다. 이 경우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유물수탁심의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심의결과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유물수탁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30조(수탁증서교부) ① 관장은 유물수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이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한다.
② 수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수탁증서재발급요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비용) 수탁유물의 관리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존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2조(수탁기간) 수탁기간은 수탁 당시의 다음 해 연말까지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기탁자변경) ① 수탁기간 중에 기탁유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구 소유자(유고시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장에게 알리고 수탁증서를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기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수탁유물반환) ① 기탁자가 기탁유물을 반환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기탁유물반환요청서에 따른 서면으로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수탁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제6절 외부유물등의 반입 및 반출
제35조(반입 및 반출) ① 외부유물등을 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외부유물등반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부유물등을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외부유물등반출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임시보관증) ① 외부유물을 반입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임시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임시보관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보관할 유물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발급한 임시보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7절 유물DB의 관리
제37조(사용자권한) 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유물표준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사용자 권한 등급은 〔별표 1〕과 같으며, 각 권한 등급 내에서 권한 항목을 달리한 세부그룹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관리자가 〔별표 1〕의 라등급 사용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대상자, 권한의 범위와 기간, 목적을 명시하여야 하며, 권한관리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임시사용자의 권한을 삭제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유물표준관리시스템계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권한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8조(운영 및 유지관리) ①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
1. 시설관리팀 : 시스템 유지·보수 및 고도화, 유물DB의 백업 및 복원, 접속정보 관리, 보안에 관련된 제반사항
2. 유물관리팀 : 유물 관련 자료와 권한 관리, 통합 권한 관리, 자료의 입력 및 관리
② 시스템의 각 입력항목에는 반드시 그 성격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입력한다.
③ 시스템에서 코드를 추가, 삭제 및 변경할 때에는 〔별표 1〕의 통합관리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유물DB 또는 통계처리된 유물DB의 파일이나 관련 출력물은 관리자의 승인 없이 외부로 제공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제39조(접속정보관리) 시스템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부여하는 인증으로 접속하고, 개인별 인증은 사용자 본인 이외의 타인과 공유할 수 없으며, 관리 부주의에 의한 도용 피해는 해당 사용자가 책임진다.

제4장 유물의 공개

제1절 유물의 열람
제40조(열람허가) 유물자료를 열람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열람허가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열람허가대상자) 열람허가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서 문화·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
2.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3.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한다)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때
4. 기타 열람목적, 과거 연구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장이 인정하는 자
제42조(열람허가제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유물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열람 시 관리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열람은 평일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은 유물자료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를 보장을 위하여 열람횟수 및 열람대상 수량, 열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43조(준수사항) 유물자료의 열람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열람자는 열람 유물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직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관장이 정한 열람 장소에서만 열람하여야 한다.
3. 유물자료의 촬영 또는 실측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서를 제출하고, 관장이 허가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4. 기타 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4조(변상) 열람자가 열람 도중 유물자료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고, 그 변상의 범위는 제18조제4항의 손상유물처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절 유물의 복제

제45조(복제허가) ① 유물자료를 복제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유물자료복제허가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유물자료의 복제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유물자료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유물자료의 복제를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과 달리 유물을 제작·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유물자료를 복제한 것(이하 "복제품"이라 한다)을 변형·개조하려는 경우에는 관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복제허가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를 허가하여서는 이니된다.

1. 유물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관리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를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다른 법령에서 복제품의 제작·사용을 제한할 때
4. 복제품이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47조(준수사항) ① 유물자료를 복제하는 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장이 정한 장소에서 유물자료를 복제할 것
2. 관장이 허가한 인원 외에는 복제 작업 시 복제 작업장에 출입하지 않을 것
3. 관장이 허가한 복제작업 기자재 등을 사용할 것
4. 복제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할 때에는 복제품에 복제품이라는 사실 등을 분명하게 적거나 적게 할 것
5. 복제허가의 조건과 유물자료의 보존 등을 위한 관장 및 직원의 지시에 따를 것
6. 기타 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관장은 유물자료를 복제하는 자가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복제를 중지시키거나 복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8조(변상) 유물자료를 복제한 자가 복제로 인하여 유물자료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물자료 또는 시설물을 수리·복원하고 훼손되어 가치가 하락한 부분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변상의 범위는 제18조제4항의 손상유물처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9조(복제요금) ① 유물자료를 복제하는 자는 복제요금을 복제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유물자료의 복제요금은 〔별표 2〕와 같다.

③ 이미 납부한 복제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사정으로 복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반환한다.

제3절 유물자료이미지저작물의 관리

제50조(저작물관리) 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생산한 유물자료이미지저작물(이하 "저작물"이라 한다)은 유물관리팀에서 인수하여 보관·관리한다. 이 경우 원본이 아날로그형태일 때에는 저작물의 디지털화를 완료한 후에 인수한다.

②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용역 등으로 유물자료 관련 저작물을 간접 생산할 때에는 저작물 작성자와의 용역계약서에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에 따라 생산된 저작물의 원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을 수 없는 용역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저작물제공서비스) ① 저작물의 제공서비스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아날로그형태의 저작물을 제공받은 자가 저작물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였거나 저작물을 제공받은 자가 이용허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리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 . .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신청순서

연번	명 칭	수량/책수	시대/간행연대	크 기	구조특징/판본	요구액	*서류심사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계	* 서류 접수	건 점					
계	* 유물 접수	건 점					

1.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수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유물은 공동소유물(문중 소유 등)이 아님을 확인하며, 공동소유물로 판명되어 소유권 분쟁 발생 시에는 매도 금액 전액 환수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겟습니다.
3.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서류 접수	년 월 일	성명: (인)
* 유물 접수	년 월 일	성명: (인)

신청인 주소 :
생년월일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전화 : 휴대전화 :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장 귀 하

※ 신청서 작성시 *표시가 있는 칸은 비워 두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유 물 소 장 내 력 서

1. 명 칭 :

2. 입수시기 :

(가능한 정확하게 연월일 명기)

3. 입수 내력 :

(가능한 구체적으로 어디서, 누구로부터 구입, 증여, 습득하였는지 명기)

4. 증빙서류의 유무 :

(구입영수증이 있다면 사본 첨부)

위의 서술이 거짓 없는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최종 심의를 통과한 구입대상유물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요청에 의한 구입관련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작 성 자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자 택)
(핸드폰)
작 성 일 :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매도신청유물 임시보관증

귀하

상기인이 매도 신청한 건 점의 유물을 우리 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

1. 본 보관증은 어떠한 경우라도 양도 또는 담보제공물이 될 수 없으며, 유물 반환 및 유물매매계약시 반드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2. 본 보관증은 우리 관의 유물 구입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 활용할 수 없습니다.

붙임 : 유물매도신청서 사본 1부.

년 월 일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담 당 자 :

* 월 일까지 심사완료 후 구입여부를 확정 통보할 예정입니다.
*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전화 : 팩스 :

E-mail :

[별지 제4호서식]

유 물 매 매 계 약 서

1. 매매유물
   가. 유물명칭 및 수량 : 건 점 (별첨 참조)
   나. 계 약 금 액 : 금 원정 ₩
   다. 납 품 장 소 :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2.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장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상기 유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장은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계약상대자는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귀속됨에 동의하며, 이후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나 계약 금액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계약대상자는 매도한 유물이 매장문화재, 도굴품, 장물 등 불법적인 유물인 경우에 유물 대금의 환수 및 향후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그리고 계약대상자는 매도한 유물이 공동소유물(문중 등) 등 소유권 분쟁과 관련된 유물인 경우에 유물 대금의 환불 및 향후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4. 본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붙임 : 유물명세 및 매도동의서 1부.

년 월 일

매 입 자	매 도 자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장	주소 상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전화번호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유 물 기 증 원

명 칭	수 량	크 기	비고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유물관리규정」에 따라 상기의 유물 및 저작권 등 일체의 권한을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정히 기증하며, 기증 이후 상기 유물을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방침에 따라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 (날인 또는 서명)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 화 번 호 : 휴 대 전 화 :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유 물 수 증 심 의 서

연번	유물명칭	수량	평가 결과	비고
합계 : 건 점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유물수증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7호서식]

기 증 유 물 수 납 서

귀 하

귀하가 기증하신 건 점의 유물을 영구히 보존하고 전시와 학술연구에 적극 활용하여, 유물을 기증하신 귀하의 큰 뜻을 기리고자 이 증서를 드립니다.

. 년 월 일 . .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장

○○○ 기증유물

기증유물 사진

명 칭	수 량
계	건 점

붙임 1. 기증유물 목록 1부.

[별지 제8호서식]

유 물 대 장

등록번호	명칭		수량		국적/시대		재질		사진
	입수 일자/연유/처/가격				출토(소)지			
	크기							
	특징							
등록번호	명칭		수량		국적/시대		재질		사진
	입수 일자/연유/처/가격				출토(소)지			
	크기							
	특징							
등록번호	명칭		수량		국적/시대		재질		사진
	입수 일자/연유/처/가격				출토(소)지			
	크기							
	특징							
등록번호	명칭		수량		국적/시대		재질		사진
	입수 일자/연유/처/가격				출토(소)지			
	크기							
	특징							
등록번호	명칭		수량		국적/시대		재질		사진
	입수 일자/연유/처/가격				출토(소)지			
	크기							
	특징							
소계 건 점 / 누계 건 점								

[별지 제9호서식]

월 등 록 유 물 증 감 보 고

구 분		지난 달 말 현 재					이 달 증 감				이 달 말 현재					비 고
물질별	소장처별	전시 수량	격납 수량	이관 수량	대여 수량	계	전시 수량	격납 수량	이관 수량	대여 수량	전시 수량	격납 수량	이관 수량	대여 수량	계	
금속	당관소장품															
	기타소장품															
	계															
토제	당관소장품															
	기타소장품															
	계															
도자기	당관소장품															
	기타소장품															
	계															
석	당관소장품															
	기타소장품															
	계															
유리 보석	당관소장품															
	기타소장품															
	계															
초제	당관소장품															
	기타소장품															
	계															
나무	당관소장품															
	기타소장품															
	계															
골각 패갑	당관소장품															
	기타소장품															
	계															
지	당관소장품															
	기타소장품															
	계															
피모	당관소장품															
	기타소장품															
	계															
사직	당관소장품															
	기타소장품															
	계															
종자	당관소장품															
	기타소장품															
	계															
기타	당관소장품															
	기타소장품															
	계															
합계	당관소장품															
	기타소장품															
	계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년 월)

[별지 제10호서식]

유 물 대 출 요 청 서

제 - 호

부 서 명	분임보조관리자	분임관리자	부 서 장

아래 유물을 대출 요청함. . . .

유 물 번 호		유물명칭		수 량	
대 출 사 유					
비 고		대 출 일 자	년 월 일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제 - 호

유 물 대 출 서

. . .

분임보조관리자	분임관리자	관 리 자

아래 유물을 대출함.

유 물 번 호		유물명칭		수 량	
대 출 사 유					
비 고		대 출 수장고 명			
대출수령자		대 출 일 자	년 월 일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별지 제11호서식]

유 물 격 납 요 청 서

제 - 호

부 서 명	분임보조관리자	분임관리자	부 서 장

아래 유물을 격납 요청함. . . .

유 물 번 호		유물명칭		수 량	
격 납 사 유					
비 고		격 납 일 자	년 월 일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제 - 호

유 물 격 납 서

. . .

분임보조관리자	분임관리자	관 리 자

아래 유물을 격납함.

유 물 번 호		유물명칭		수 량	
격 납 사 유					
비 고		격 납 수장고 명			
격납자 및 격납수령자		격 납 일 자	년 월 일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별지 제12호서식]

열 쇠 출 납 부

년월일	대 출				허가	반 납				출입자
	수장고명	사용 목적	대출자	시 간	확인자	수장고명	반납자	시 간	확인자	

[별지 제13호서식]

수 장 고 관 리 일 지

년 월 일 요일		담 당	분임관리자	관 리 자

수장고명	출 입 사 유	출 입 자		출 입 시 간
		소속	성명	
특기사항				

[별지 제14호서식]

유 물 대 여 승 인 조 건

1. 대여유물은 문서상의 승인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우리 관의 허가 없이 촬영, 복제, 모사, 개조, 손질, 훈증소득, 과학적 검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전시할 경우 국립역사문화전시체험관 소장임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2. 대여받은 자는 유물의 대여에 따른 반출입 시 대여유물의 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송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우리 관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3. 대여받은 자는 대여유물의 분실, 손상,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분실이나 손상이 있을 때는 우리 관에 즉시 알리고 문서와 사진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손상된 대여유물은 우리 관의 허가 없이는 운송할 수 없으며, 만약 운송 시 손상이 생겼을 경우 조사를 위하여 사용한 포장재료 등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4. 대여받은 자가 대여유물을 분실하거나 대여유물에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 관의 요구에 따라 통보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분실, 손상, 기타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5. 대여기간을 연장하려는 때는 우리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전시와 관련된 간행물 또는 홈페이지 등의 제작을 위하여 대여유물을 촬영하거나 디지털데이터를 복제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여유물을 촬영한 경우에는 사진 원판필름 또는 디지털데이터 각 1부를 우리 관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7. 사진 게재 시에는 반드시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소장임을 표기하여야 하고, 대여 협의에 따른 일정 수량의 간행물을 우리 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게재한 사진의 저작권 및 기타 법적 권리는 우리 관에 있습니다.
8. 위의 조건들이 지켜지지 않거나 우리 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에서 보안시설(CCTV 설치, 방호 관련 근무자 배정,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등) 미비, 대여유물 관리를 위한 시설 미비 등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대여유물의 안전을 위하여 대여를 취소하고, 대여유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9. 위 유물대여승인조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칙」을 준용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유 물 보 험 평 가 서

□ 평가목적 :

□ 평가유물 및 보험평가액

명칭 및 수량	보험평가총액

년 월 일

평가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평가위원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보험평가 대상유물 목록

연번	등록번호	명칭	주수량	사진	보험평가액(원)
총계					

[별지 제16호서식]
제 호

기 탁 신 청 서

연번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합계 : 건 점				

1.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유물관리규정」에 따라 위의 유물을 기탁하고자 합니다.
   가. 기탁사유 :
   나. 기 간 :
2. 본인은 기탁기간 중 위 유물의 귀관 활용에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위 기탁유물에 대한 의사결정 불가 시 아래의 자와 협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성 명 :
   나. 생년월일 :
   다. 연 락 처 :

년 월 일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 화 번 호 : 휴 대 전 화 :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장 귀하

[별지 제17호서식]

유 물 수 탁 심 의 서

연번	유물명칭	수량	평가 결과	비고
합계 : 건 점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유물수탁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8호서식]
제 호

수 탁 증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명 칭	수 량	크 기	사진첨부
			철인한 사진 붙 임
합계 : 건 점			

위 유물을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유물관리규정」에 따라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수탁 보관합니다.

수 탁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붙임 ; 1. 수탁유물 관리규정 1부.
2. 유물상태점검서 1부.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장 귀하

[별지 제19호서식]

수탁증서재발급요청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상기 본인은 귀 관으로부터 발급 받았던 제　호의 수탁증서를 분실하였기에 이의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요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장 귀하

[별지 제20호서식]
제 호

기탁유물반환요청서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귀 관에 기탁하였던 상기의 유물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환받고자 합니다.

○ 반환요청사유 :

붙임 : 수탁증서 1부.

년 월 일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 화 번 호 : 휴 대 전 화 :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장 귀하

[별지 제21호서식]
제 호

영 수 증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유물관리규정」에 따라 기탁한 위 유산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 화 번 호 : 휴 대 전 화 :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장 귀하

[별지 제22호서식]

외부유물등반입신고서

○ 신 청 인 No.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반입유물명		수 량	
반입목적			

위 유물을 반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반입 확인자는 신고서 제출시 근무자로 함

외부유물등반입확인서

○ 담 당 자 No.

소 속		직 급		성 명	
반입유물		수 량		반입목적	
반입일시				반입확인자	

위와 같이 유물반입을 확인함.

년 월 일

유물관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3호서식]

외부유물등반출신고서

○ 신 청 인 No.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반출유물		수 량	
반출목적			

위 유물을 반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반출 확인자는 신고서 제출시 근무자로 함

외부유물등반출확인서

○ 담 당 자 No.

소 속		직 급		성 명	
반출유물		수 량		반출목적	
반출일시				반출확인자	

위와 같이 유물반출을 확인함.

년 월 일

유물관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4호서식]

임 시 보 관 증

연번	명칭	수량	비 고
총 건 점			

위 임시보관유물을 정히 보관합니다.

. .

년 월 일

보관의뢰자 : (서명 또는 날인)

보관자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5호서식]

유물표준관리시스템 계정신청서

기관명(부서명)			
이 름		직 급	
신청아이디		전화번호	
통합권한구분 (관리자용)			
사용목적			
유물표준관리시스템 이용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는 유물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반출할 수 없으며, 사용자 계정 관리 부주의에 의한 도용 피해발생 시 해당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위 내용에 모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유물표준관리시스템 사용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상기와 같이 유물표준관리시스템 사용 신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6호서식]

<table>
<tr><td colspan="6">열 람 허 가 신 청 서</td><td>처리기간</td></tr>
<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소</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①등록번호</td><td colspan="2">②명 칭</td><td>③수 량</td><td>④복제수량</td><td>⑤비고</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⑥열람일시</td><td colspan="5">년 월 일</td></tr>
<tr><td colspan="2" rowspan="3">⑦열람인원</td><td colspan="2" rowspan="3">본인 외 ( )명</td><td>연번</td><td>성명</td><td>전화번호</td><td>주소</td></tr>
<tr><td>1</td><td></td><td></td><td></td></tr>
<tr><td>2</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⑧열람목적</td><td colspan="5">□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td></tr>
<tr><td colspan="2">⑨내 역</td><td colspan="5">□열 람 □복 제 □기타 ( )</td></tr>
<tr><td colspan="2">⑩장 비</td><td colspan="5">□카 메 라 □조명장치 □기타 ( )</td></tr>
<tr><td colspan="7">귀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유물과 이에 준하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서 귀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관련규정을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장 귀하</td></tr>
<tr><td colspan="2">구비서류</td><td colspan="5">① 열람자 학위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②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과정 및 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td></tr>
</table>

[별지 제27호서식]

유물복제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소 속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팩스번호

유물 번호	유물 명칭	유물 수량	복제 수량	비고

복제 일시	복제 인원
복제 목적	
복제 종류 (3차원 입체촬영, 비디오촬영, 사진촬영, 탁본, 모사, 모조, 복원, 정밀 실측, 사진자료의 이용 중 해당 종류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제 장비	
그 밖의 참고사항	

귀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유물과 이에 준하는 자료를 복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제를 할 때에는 귀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지시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장 귀하

[별지 제28호서식]

유물복제허가서

신청인	성명	소 속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팩스번호
허 가 사 항	허가대상	
	복제목적	
	복제일시	복제인원
	복제요금	복제종류
	준수사항 1. 사전 허가된 범위 내에서 복제가 가능하며, 복제 시 유물의 안전과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사전 허가되지 않은 인원과 기재(器材), 지참물은 출입 및 반입이 제한됩니다. 3.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작·사용하거나 복제품을 변형·개조할 경우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복제자료 사용 시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소장품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5. 복제자료의 저작권 및 기타 법적인 권리는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있으며, 허가 목적 이외의 사용 및 자료의 타인 양도 등을 불허합니다. 6. 〈촬영, 모사, 실측의 경우〉 촬영 및 근거 자료 1식을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조, 복원의 경우〉 복제결과보고서(복제품의 사진, 재질, 수량, 사용계획 등 포함)를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복제는 외형적인 복제에 한정되며, 만약 복제품의 제작·소지·사용 등에 있어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적인 허가(승인)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8. 복제 허가사항 준수와 사용여부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복제품 관리 상황 파악을 위한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사후관리 점검요구에 대해 협조하여야 합니다. 9. 상기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		

년 월 일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장 직인

[별지 제29호서식]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저작권자 표시]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른 경우)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저작물의 표시]
저작물 :
종 별 :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_____ 과(와) 양수인 _____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물의 공익적 이용과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권리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제3조(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 양도인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양도인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양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배타적 이용) 양도인은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설정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저작재산권의 권리변동 사항) 양도인은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

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 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인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6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양수인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책임을 진다.

제7조(저작인격권) 양수인이 저작재산권 활용시 양도인이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8조(제3자에게의 저작재산권 등의 이용허락) 양수인은 제3자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 허락하거나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이용 허락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 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_____ 년 _____월 _____일

저작권자 및 양도인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양 수 인

성　　명 :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사업자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별표 1] 유물표준관리시스템 사용자권한 등급

등급		등급명	권한내용	대상자
가등급	가-0	통합관리자	통합보조관리자를 임면	관장
	가-1	권한관리자	유물표준관리시스템 권환보조관리자의 임면	관리자
	가-2	통합보조관리자	유물표준관리시스템의 조회권한을 부여	관장이 지정한 분임보조관리자
	가-3	권한보조관리자	유물표준관리시스템의 사용권한 및 코드관리, 검색대상 설정 등을 차등적으로 부여	관리자가 지정한 자
나등급	나-1	등록담당자	유물등록 담당자로서 등록결재 완료 후 등록 전환 및 미등록 DB관리	등록업무담당 분임보조관리자
	나-2	등록보조자	미등록등록 메뉴에서 유물등록업무를 보조하며 미등록DB관리	등록업무를 보조하는 자
다등급	다-1	활용자	등록된 유물 정보를 조회	학예사, 기타 유물활용 업무 담당자
	다-2	제한활용자	제한된 유물 정모를 조회	유물활용 업무를 보조하는 자
라등급		임시사용자	제한된 유물 정보를 조회	관리자가 지정하는 외부인

[별표 2] 유물복제요금

구분	내 역	수 량	요 금	비 고
유물 복제	특수촬영(3D 등)	1점당	30,000원	촬영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방송촬영(비디오)	1건당	〃	
	일반촬영(사진기)	1장면당	〃	촬영 장면수는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탑본	1점당	〃	복제 수량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정밀실측	1점당	〃	〃
사진 복제	대형필름(4″×5″/컬러 · 흑백)	1매당	20,000원	1회 20매 이내, 동일 건 3회 이내
	디지털 데이터	1매당	20,000원	〃
	중형필름(120mm/컬러 · 흑백)	1매당	10,000원	〃
	소형필름(35㎜/컬러 · 흑백)	1매당	5,000원	〃
	유리건판 복제필름(소형기준)	1매당	5,000원	〃
	사진자료 게재 5,000	무료		

3-2-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대관규정(안)

〔표 49〕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대관규정 제정안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대관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라 한다)의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농업역사문화의 보급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의 범위) 대관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전시실 2. 컨퍼런스 다목적실, 교육세미나실, 강당 및 회의실 3. 야외 시설 및 공간 4. 기타 부대시설 및 부지 제3조(대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자체교육, 행사, 유물, 전시체험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1. 농업역사문화의 보존·보급·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농업역사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3. 농업역사문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및 지역 행사 4.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취지에 부합하는 농업역사문화 관련 사업, 학술회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국제회의 등 행사 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대관신청 및 승인) 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시설을 대관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신청서를 행사일 30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행사의 경우에는 대관일정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을 범위 내에서 대관신청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2. 대관기간(준비 및 철수기간을 포함한다) 및 사용시설 3. 행사 내용(명칭 및 종류, 목적, 주요내용, 참가예정인원, 반입품의 종류 등) 4. 행사계획서 5. 행사관련 책임운영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6. 행사물품,집기 등의 반입 및 설치일·철거일 7. 체험·전시품의 수량 및 규격(체험·전시에 한한다) 8. 전기, 수도, 기타 필요한 시설의 용량 등 ② 관장은 제1항의 대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대관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대관을 승인할 때에 시설훼손에 따른 원상회복, 대관신청서 허위 작성에 따른 벌칙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신청자가 대관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대관의 우선순위) 관장은 대관신청이 중복된 때에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6조(대관료) ① 제4조에 따라 대관승인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관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③ 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그 실소요액을 근거로 대관승인을 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산출 및 부과방법 등은 관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④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거나 제9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7조(대관료의 면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에 한한다)
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으로써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에 한한다)
4.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

제8조(대관의 금지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2. 대관조건을 어겨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
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유지 관리에 부적절한 행사
2. 기타 대관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9조(대관승인의 변경 및 취소) ① 관장은 대관승인 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업무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승인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대관승인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2. 대관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대관자의 준수사항)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물의 사용
2. 대관기간 및 대관허가를 받은 범위 내의 시설사용
3. 대관기간 중 도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책임자 배치
4. 기타 관장이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11조(손해배상)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시설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 . .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대관신청서

신청인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직업·근무처 (단체명)		연락처	전 화 : 팩 스 : 핸드폰 :
	주소			
대관 시설				
대관 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 1일 9시간 기준		
행사내용	종류 및 명칭			
	대관 목적			
	주요 내용 (참가예정인원)			
	반입품의 종류·수량			

※ 첨부 : 행사계획서, 도면 등

본인은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시설에 대한 대관자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대관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장 귀하

3-2-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관람료징수규정(안)

〔표 50〕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관람료징수규정 제정안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관람료징수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라 한다) 관람료의 징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료) 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관람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분	통합체험관람		본관전시체험관람		야외전시체험관람		비 고
	개인	단체 (20인이상)	개인	단체 (20인이상)	개인	단체 (20인이상)	
어 른							20세 이상
청소년 및 어린이							8 ~ 19세
유 아							4 ~ 7세
영 아							1 ~ 3세

②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관람을 예약한 자는 관람료를 전자결제하여야 하며, 결제 후 취소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료 등의 게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각종 체험·관람·탑승·전시품작동 등의 관람료를 관람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권의 판매) ① 매표원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수입금출납직원(이하 “출납직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일 개관 30분전까지 각종 관람권을 수령하여 개관시각으로부터 입장마감시각까지 관람권의 일련번호순으로 매표한다.

② 관람료는 출납직원, 매표원 또는 출납직원이 지정하는 자 이외에는 수납할 수 없다.

③ 매표원은 매표를 마감한 후 지체 없이 매표대금과 잔여관람권을 출납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출납직원은 매일의 유료관람현황을 별지제1호~제4호서식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료 면제 및 할인 등) 관장은 국빈 및 그 수행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유관기관과의 상호약정에 따른 관람자 등 별도로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유료관람공간은 좌석이 매진일 때에는 입장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정은 20 . .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일일유료관람권발매원부 내역

결재	담당자		부서장

20 년 월 일

일련번호	관람권 종류 및 관람인원	합계금액	비 고
0000001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10			
합계금액			

[별지 제2호서식]

일일유료관람권발매내역

결재	담당자		부서장

20 년 월 일

관람권 종류	금 액	인 원	합계금액	비 고
1 어른·노인 2 청소년·어린이 3 유아 4 어른·노인단체 5 청소년·어린이단체 6 유아단체				
	합 계 누 계			발행No.(~)

[별지 제3호서식]

월간유료관람권발매통계

20 년 월 (단위: 백원)

결재	담당자		부서장

발매일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징수액(단위:원)
	개인			단체			
	어른노인 *000	청소년어른이 *000	유아 *000	어른노인 *000	청소년어른이 *000	유아 *000	
1 31							
합계							

[별지 제4호서식]

연간유료관람권발매통계

20 년 월 (단위: 백원)

결재	담당자		부서장

발매일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징수액(단위:원)
	개인			단체			
	어른노인 *000	청소년어른이 *000	유아 *000	어른노인 *000	청소년어른이 *000	유아 *000	
1 월 12월							
합계							

3-2-4.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자원봉사자운영규정(안)

〔표 5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자원봉사자운영규정 제정안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자원봉사자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자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자의 업무)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역사문화상담에 관한 사항
2. 농업역사문화강연회 연사
3. 농업역사문화교육의 지도 및 보조
4. 각종 농업역사문화행사의 운영 및 보조
5. 농업역사문화교재 및 농업역사문화행사 프로그램개발의 지원
6.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회원제 운영 지원
7.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전시체험장 등의 안내 및 질서유지
8. 그 밖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

제3조(자원봉사자의 위촉) 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선정한다.

1. 농업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관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농업, 농경문화, 농업기술 등 농업역사문화의 보급에 관심이 있는 자
4. 그 밖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람

②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자원봉사를 신청한 자의 경력과 희망봉사 분야 등을 고려하여 자원봉사자의 선정여부를 결정한다.

④ 관장은 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자확인증을 교부한다.

자원봉사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관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정한 사유 없이 활동시간을 지키지 않을 때
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때
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

제4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대우) ① 자원봉사자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업무의 성격과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관장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교통비 및 식비 : 1일 10,000원 이내
2. 업무상 관외활동이 수반될 경우의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상의 제2호가목를 적용한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대우를 할 수 있다.

1. 가족회원증 발급(봉사활동 기간에 한한다)
2. 특별회원증 발급(5년 이상 봉사한 자로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회원제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자에 한한다)

제5조(근무) ① 자원봉사자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제규정 및 지침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자원봉사자가 사임하려는 때에는 그 뜻을 미리 관장에게 통지한 후 자원봉사자확인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자의 운용) ① 부서장은 자원봉사자가 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자원봉사자의 출근내역 등 활동사항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 . .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자원봉사자 신청서

접수번호 :

<table>
<tr><td rowspan="2">성 명</td><td>(한글)</td><td rowspan="2">생년월일</td><td rowspan="2"></td><td rowspan="3">사 진</td></tr>
<tr><td>(한자)</td></tr>
<tr><td rowspan="2">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4">(우편번호) (전화번호) (E-mail)</td></tr>
<tr><td rowspan="2">학 력</td><td>년 월</td><td colspan="2">학 교 명</td><td>학 위</td></tr>
<tr><td></td><td colspan="2"></td><td></td></tr>
<tr><td rowspan="2">경 력</td><td>년 월</td><td colspan="2">기 관 명</td><td>근무분야</td></tr>
<tr><td></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2">희망봉사분야</td><td></td><td>자격.면허</td><td></td></tr>
<tr><td colspan="2">희망근무기간</td><td></td><td>희망근무일(시간)</td><td></td></tr>
</table>

본인은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자원봉사자로 선정되었을 때에는 귀 기관의 제규정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장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위 촉 장

성 명 :
생 년 월 일 :
분 야 :

귀하를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자원봉사자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국 립 농 업 역 사 문 화 전 시 체 험 관 장

[별지 제3호 서식]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자원봉사자 확인증

[앞 면]

자 원 봉 사 자 확 인 증

사진

성 명
생년월일
분 야

위 사람은 우리 국립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자원봉사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장

[뒷 면]

1. 본 증은 자원봉사자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 본 증의 유효기간은 . . ~ . .입니다.

3.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3-2-5.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후원회운영규정(안)

〔표 5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후원회운영규정 제정안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후원회운영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소) 후원회의 사무소는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라 한다) 내에 둔다.

제3조(사업) 후원회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을 후원하고 회원들의 교류와 연대를 통해 농업역사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관리
2.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이나 금품·학술자료 등의 모집
3. 그 밖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후원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① 후원회의 회원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을 후원하는 사업에 동참할 뜻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회원은 개인회원, 단체회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③ 개인회원 및 단체회원은 사무국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가입한다.

③ 명예회원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 또는 전문성으로 인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자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운영위원회와 총회를 통하여 후원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발간하는 간행물을 무상으로 받으며 관람료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준수
2. 후원금,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의 제공 및 회비의 납부

제7조(후원금 등) ①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의 모집 및 회비를 징수한다.

② 후원금은 가입시에 납부하는 일반후원금, 자발적으로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납부하는 특별후원금 등으로 구성한다.

③ 회비는 모든 회원이 가입 다음 연도부터 매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연회비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연회비는 임원 등의 여부에 따라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자발적으로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언제나 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④ 회원의 후원금,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의 모집 및 회비의 금액이나 징수방법 등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특별후원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제8조(회원자격의 상실) ① 회원이 연회비 납부 의무나 그 밖에 회원으로서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의무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회원자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시킬 수 있고, 3년분 이상의 연회비를 미납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② 회원은 연회비 미납으로 인한 제1항에 따른 자격상실 이외에 탈퇴 또는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명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중대하게 불이행하였거나 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③ 개인회원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그 배우자는 후원회에 승계신청을 함으로써 사망한 회원의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 단서에 따라 자격을 승계한 회원은 후원금이나 회비 등의 납부의무를 포함하여 사망한 회원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9(회원의 상벌) ① 후원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후원회의 취지 또는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0(후원금 등의 인계 및 사용내역 통보) ① 후원회는 제7조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후원금,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모집한 때에는 이를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후원금,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인계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3장 임원

제11조(임원) 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3명 이내
3. 감 사 2명 이내
4. 사무국장 1명
5. 운영위원 20명 내외(사무국장을 포함한다)

제12조(고문,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 ① 후원회는 고문,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고문,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다만, 초대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15조(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16조(부회장의 구성 및 직무) ①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부회장 중 1명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 그 업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이 유고 시에는 부회장중 연장자 순으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과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방향과 후원회 운영 전반을 기획하고 회원관리 및 재정운영을 총괄한다.

제18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후원회의 재산 및 회계와 운영위원회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후원회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다만, 회원이 단체일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가 참석하며, 대표자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에서 소집을 의결했을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3.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4.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의제를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의결 정족수 및 의사록 작성)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회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은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는 당해 회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총회의 의사진행과 결과에 관하여는 사무국장이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기명 날인한 후 후원회에 비치한다.

제 5장 운영위원회

제23조(운영위원회) ① 후원회의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심의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시안 작성
3.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
4. 회원의 가입 승인
5. 보통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후원회의 운영 및 사업과 관련된 사항

제24조(회의소집) ①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소집하며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 까지 회의의 목적·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위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 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5조(의결 정족수 및 의사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은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는 당해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사진행과 결과에 관하여는 사무국장이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기명 날인한 후 후원회에 비치한다.

제 6장 집행기구

제26조(사무국) ① 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집행기구로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 업무를 총괄할 사무국장을 두며, 사무국장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내 후원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한다.

③ 사무국에는 회장과 사무국장의 업무를 도와 줄 실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서를 둘 수 있다.

④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⑤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안의 작성
2.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
3. 사업의 집행
4. 재원의 관리 및 집행
5. 회비의 징수 및 관리
6. 회원 관리
7.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
8. 기타 후원회의 운영 및 사업과 관련된 사항

제 7장 재정

제27조(재원) 후원회의 재원은 회비, 찬조금 등으로 한다.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후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후원회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후원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기본재산의 처분) 후원회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관장과 협의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한다.
제30조(재원의 운용과 관리) ① 후원회의 재원은 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다.
② 후원회의 재원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국장이 관리 및 집행한다.
제31조(회계년도) 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예산편성) 후원회의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결산) 후원회는 매 회계년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8장 보칙

제35조(보고) 후원회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예산편성, 결산 및 회계감사의 각 결과를 즉시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후원회의 해산) ① 후원회를 해산하려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후원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기증한다.
제37조(규칙의 개정)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이외에 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 . . .부터 시행한다.

3-2-6.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자문위원회운영규정(안)

〔표 5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자문위원회운영규정 제정안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자문위원회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에 관하여 자문하는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박물관·체험관·과학관 운영, 농업·역사·문화·교육·법제·경영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국립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라 한다)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에게 자문한다.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전시·체험 등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후원 및 수익창출 방향에 관한 사항 4. 기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운영에 관하여 관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관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 ② 관장은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조(간사 등) ① 자문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관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면한다. ② 간사는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6조(수당과 여비)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 . . .부터 시행한다.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체계적인 운영방안 연구

제5장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운영 및 중장기 발전전략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중장기 방향
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조직운영
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사업운영 및 중장기 발전전략

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중장기 방향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중장기 방향(미래상)으로서 비전과 지향가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미래상으로서 비전과 지향가치를 표방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는 그 비전 및 지향가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해 나아갈 방향성을 명확하게 설정시키고, 관람객들에게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정체성과 추구하는 가치를 쉽게 인지시킬 수 있다.
- 여기에서 비전(Vision)은 조직이 성취하고자 하는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비전은 조직에 대한 장기적인 시각에서 현실과 미래를 연결시키는 전략적 구상으로서, 우리 조직은 어떤 위상을 갖고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말한다.
- 또한 지향가치(Core Value)는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공통 사고와 행동기준으로 구성원의 제도적인 행동규범을 말한다. 이러한 지향가치는 주로 가치관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비전과 임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구성원 전체에 의하여 공유되어야 하는 것이다.

1-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비전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비전은 "농업과 함께 하는 행복한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농업의 선진화를 선도하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농업역사문화의 즐거운 체험을 통해 행복을 주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미래세대에 감동과 영감을 주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으로 설정한다.

- '우리 농업의 선진화를 선도하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그 동안 비교적 무관심했던 우리 농업의 역사문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계 농업문화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농민들의 삶과 농경생활문화에 대한 보다 폭넓은 시야를 제공할 것이다.
- '농업역사문화의 즐거운 체험을 통해 행복을 주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다양한 농사법과 농작물, 건강한 식생활 등의 체험을 통해 실제적이며 오감으로 경험하고 체득할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서의 특별 활동을 제공할 것이다.
- '미래세대에 감동과 영감을 주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우리나라 및 세계의 농업과 식품에 관한 정보 및 지식을 습득하고, 그 체험을 통하여 미래의 농업과 식품에 관한 비전을 제공할 것이다.

〔그림 17〕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비전(Vision)

농업과 함께 하는 행복한 미래
• 우리 농업의 선진화를 선도하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 농업역사문화의 즐거운 체험을 통해 행복을 주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 미래세대에 감동과 영감을 주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1-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지향가치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지향가치는 '전문성과 창의성', '신뢰와 협력', '행복과 감동'으로 설정한다.

- 전문성과 창의성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최상의 관람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관람객에게 더 나은 관람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박물관의 모든 활동을 창의적으로 개발 혁신해 나간다.
- 신뢰와 협력 : 신뢰는 내부구성원간의 가장 큰 결합 요소로 어떤 기준이나 규범을 바탕으로 상대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는 말이다. 구성원들 간에 신뢰가 높을 때 협력적 행동을 보이며 구성원들의 몰입과 헌신 그리고 창의성이 발현된다.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각 부서의 구성원이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협력자로서의 신뢰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협업을 통해 최고의 관람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구현해낸다.
- 행복과 감동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관람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통해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림 18〕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지향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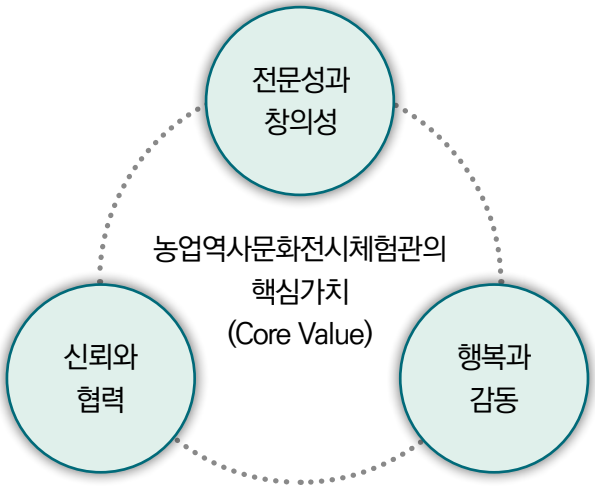

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조직운영

2-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임무 및 조직구성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임무((Mission)를 설정하여야 한다.

- 임무는 조직이 존재해야할 이유를 말한다. 즉, 임무는 '왜 우리 조직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존립의 근거로, 조직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실질적·전략적 기획의 출발점으로서의 정체성을 제시한다.
- 이러한 임무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계획하며 스스로 경영전략을 실천해 나가는데 지침이 되고, 전략적 방향을 정하는 기반이 되며 구성원들의 활동 및 행위의 지침이 된다.
-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존립의 근거로서 임무를 설정할 때에는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그것을 왜 우리가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담겨야 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임무는 농업역사문화의 보존·보급·활용 및 확산에 있으며, 그 임무의 달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추구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우리나라의 농업역사문화를 총체적으로 전시하고 농업 농촌의 가치, 발전 가능성을 다양한 전시, 체험, 교육을 통해 국민과 어린이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농업이 갖는 공공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홍보와 함께 농업인에게는 자긍심을 갖게 하고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는 농업의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한다.
- 농업·농촌 관련 유물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보존하며 국민들에게 힐링 문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농산물 시장의 개방경쟁시대에 있어 신토불이 식품과 로컬푸드의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공감 체험시킴으로써 농업이 걸어온 길과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이를 공유 발전시켜 농경기술, 농식품산업 복합공간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 농촌인구 감소와 농촌인구 노령화에 대처하고 도시와 청년농업인을 위한 스마트 농업경영교육과 웰빙 바이오 식품 산업화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 우리나라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사와 전통에 기반을 둔 농경기술의 우수성을 발굴 전파 육성 진흥함으로서 농업기술의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한다.
- 농업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과 중요성을 전파 공유하고 농식품 기반의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농업 식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임무는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 등의 수집·관리·조사·연구·전시체험·교육·교류·홍보 등을 통한 농업역사문화의 보존·보급·활용 및 확산의 추진으로 설정한다.

○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설립근거의 법령 및 정관 제정을 통해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임무는 목적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구체화한다.

-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 등의 수집·보존·관리·조사·연구
-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 등의 전시·체험·교육
-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 등의 홍보·활용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보급
-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 등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등에 관련된 기술의 조사·연구 및 보급
- 농경역사문화의 보존·보급·활용 및 확산을 위한 행사개최 및 정보화체계 구축·운영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전시 및 체험시설 등의 운영 및 교육이나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
- 위 부대사업·수탁사업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 그 밖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

○ 이 가운데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목적사업 중 수익사업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입장 및 체험전시관 등의 관람과 체험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시설의 임대 및 위탁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관련 기념품·출판물 및 간행물 등의 제작·판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서 개발한 교육 및 체험전시 프로그램의 보급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 농업역사문화 관련 체험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 그 밖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 조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임무와 목적사업을 체계적이며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조직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을 보완하여 조직체계는 경영기획본부(기획예산팀, 운영지원팀, 시설관리팀), 학예연구본부(유물관리팀, 전시기획팀, 학술연구팀, 교육운영팀), 대외협력본부(고객홍보팀, 사업운영팀)의 3본부 9팀제로 하고, 정원은 49명으로 구성·운영한다.

〔그림 19〕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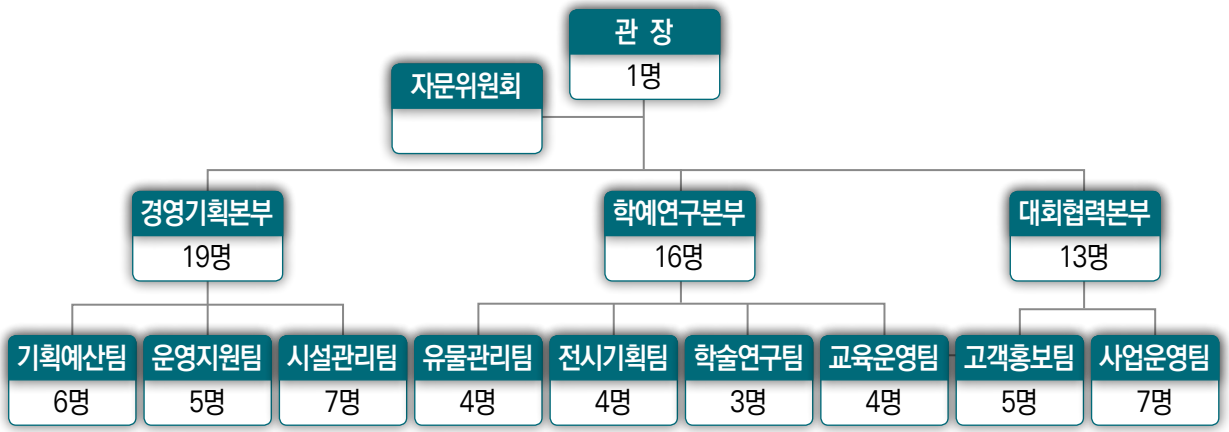

2-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조직 사무분장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체계적인 조직의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조직 내의 사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 관장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의 대표이며, 이사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 경영기획본부는 본부장 아래 기획예산팀(6명), 운영지원팀(5명), 시설관리팀(7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정원은 총 19명으로 하며, 각 팀별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표 54〕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경영기획본부의 사무분장

경영기획본부	기획예산팀	1.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감사·국회·법제업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및 내부규정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연보 작성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경영기획본부	운영지원팀	1. 보안 및 관인 관리 등 서무에 관한 사항 2.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업무에 관한 사항 6. 방호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7. 관용차량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관람료·주차료의 징수 및 대관 등 각종 수익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팀	1. 시설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점검·유지·보수 3. 전시체험물 제작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4. 학예연구본부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정보화시스템 운영·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8. 공공데이터 제공 ·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 9. 전산위탁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시설용역업체의 감독에 관한 사항 11. 수목·잔디 및 온실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시설의 방호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 학예연구본부는 본부장 아래 유물관리팀(4명), 전시기획팀(4명), 학술연구팀(3명), 교육운영팀(4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정원은 총 16명으로 하며, 각 팀별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표 55〕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학예연구본부의 사무분장

학예연구본부	유물관리팀	1. 유물·자료의 수집·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유물·자료의 구입·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유물·자료의 대여·수증·수탁 및 반출·반입에 관한 사항 4. 유물·자료의 복제·복사·모조·촬영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5. 유물·자료의 제작 및 복원·보존처리 등에 관한 사항 6. 유물·자료의 DB구축과 연계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 유물·자료의 목록연구 및 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8. 수장고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유물자료이미지저작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전시기획팀	1. 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상설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특별기획 전시 및 교류 전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4.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전시 기획·제작·설치에 관한 사항 6. 전시 디자인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7. 전시실 관람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전시 관련 국내·외 자료조사 및 전시 기법·체계연구에 관한 사항 8. 전시실 및 전시자료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학예연구본부	학술연구팀	1. 학예연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농경문화 등에 관련한 유물·자료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유물·자료의 연구기획 및 관련 자료의 발간·보급에 관한 사항 4. 농경문화 등 관련 연구개발성과물 수집 및 전시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5. 유물·자료의 전시·연구·교육관련 국내·외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6. 학술조사 및 연구보고서 발간·배포에 관한 사항 7. 학술연구 및 연구수탁사업에 관한 사항 8. 농경문화 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9.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 및 아카이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운영팀	1. 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습콘텐츠 등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사항 4. 농경문화 등 관련 사회교육 기획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박물관 전시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내 농경문화 등 관련 교육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학교 밖 농경문화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대외협력본부는 본부장 아래 고객홍보팀(5명), 사업운영팀(7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정원은 총 13명으로 하며, 각 팀별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표 56〕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대외협력본부의 사무분장

대외협력본부	고객홍보팀	1. 관람안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종합안내 센터 운영 및 상설전시관 등의 고객 안내에 관한 사항 3. 관람객 민원처리 및 고객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관람객 안전관리 및 관람객 배상·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중장기 및 연도별 고객창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관람객의 통계 작성, 유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7. 홈페이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회원 및 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언론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홍보용 간행물·영상물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 11. 전시체험물 제작 경연대회 등 각종 행사의 기획·운영·유치에 관한 사항 12. 온라인 매체활용 각종 행사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운영팀	1. 중장기 및 연도별 수익창출(마케팅)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고객 대상층 및 규모별 차별화된 수익 확대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관람객의 통계 작성, 유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관람객 유치 방안에 관한 사항 5. 신사업개발 등에 관한 사항 6. 기념품, 출판물 및 간행물 등의 제작 및 판매에 관한 사항 7. 체험프로그램 등의 보급 및 광고수입 창출 등에 관한 사항 8. 각종 문화프로그램 및 공연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또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에 따라 시설관리(8명), 청소(9명), 경비(5명), 주치(2명), 안내·매표(11명), 현장스텝이나 강사 등 전시운영지원(25명) 분야는 정원 외의 위탁사업으로 운영한다.

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사업운영 및 중장기 발전전략

3-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유물관리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 등에 관한 중장기 유물수집정책을 수립하고, 유물(유·무형)을 체계적으로 수집·확충하며, 유물의 항구적 보관과 관리체계, 보존과학 역량 등을 강화하여 선진국형 소장품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들 유물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소장품의 역사적 가치를 학술적으로 규명하여 대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1-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유물의 수집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에 따라 유물의 수집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현장 박물관으로서의 유물, 현대적 관점에서 바라본 유물을 그 선정의 기본방향으로 한다.

- 역사적 의미가 있는 현장 박물관으로서의 유물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건립부지인 수원의 구 농촌진흥청의 지역적 의미, 즉 근현대 농업혁명의 산실인 농촌진흥청이 소재한 지역을 부각하는 유물과 수원 화성 등 조선 후기의 역사성에 걸맞는 전시대상물의 선정을 의미한다.
- 현재적 관점에서 바라본 유물은 농업·식품의 현대적 의미와 21세기형 융합박물관 지향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유물의 선정을 의미한다.

○ 또한 유물의 수집은 전시대상품을 우선적으로 하되, 소장유물의 확보를 동시에 추진한다.

- 전시대상품의 우선 확보를 위하여 전시품 목록을 작성한 후 전시대상품을 선별하고, 그 전시대상품의 목록은 체험전시를 고려하여 작성하며 전시품은 시대별 및 주제별로 작성한다.
- 소장품의 확보는 소장품 목록화를 위하여 먼저 문헌조사, 현장조사, 탐문조사 등을 하고, 그 과정을 거쳐 소장품의 목록(카드)화를 하되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시대별로 우선 정리하여 자료 접근의 용이성을 확보한다.

○ 특히, 전시대상품의 선정 및 확보에 있어서는 그 선정기준으로 우리나라 유일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어울리는 전시품 확보, 복제품 보다는 농업유물의 실물전시 지향, 농업박물관의 모범사례로서의 기능 가능, 공인된 자료에 기초한 전시대상 목록화, 구입대상유물의 구입 편의성을 위한 유물의 종류에 따른 목록화 등으로 한다.

○ 전시대상품 및 소장품 확보방안으로는 구입, 대여, 기증, 국가귀속 등이 고려될 수 있는데, 중요 소장품이나 대여가 어려운 중요 소장품을 우선 구입대상으로 하고, 국가기관 소장품을 대상으로 대여를 추진하며, 공립기관 소장품 중에서 관리 미숙의 소장품을 기증형식으로 이관 받음과 동시에 개인의 기증을 적극 유도하고,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기관의 지정을 추진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에 따른 유물 수집의 추진단계는 다음과 같다.[41)]

〔그림 20〕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의 유물수집 추진단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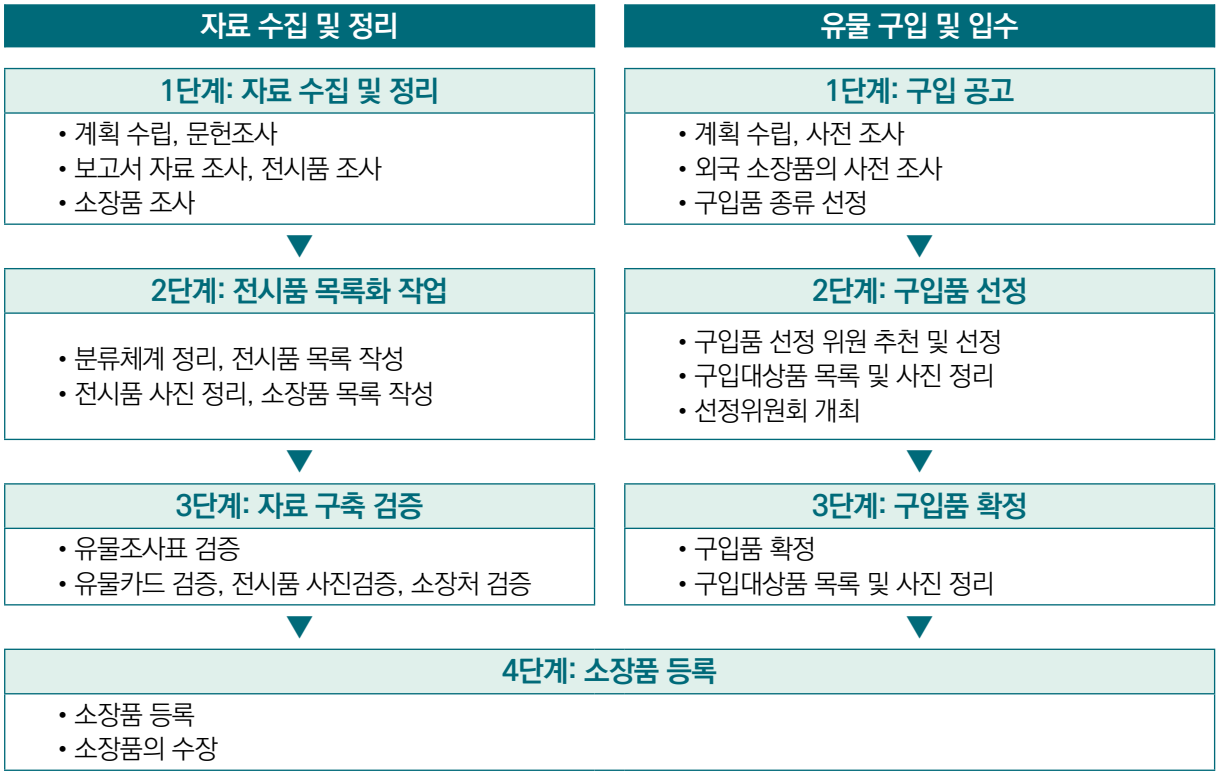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유물의 수집업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품의 중장기 수집정책을 수립하고, 소장품 수집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소장품 수집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 농업·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 중 보존가치가 있는 소장품을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이다.

41) EGA GROUP(2016.12), 농어업 역사문화 전시체험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240면.

○ 또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수집하는 유물에는 실물 뿐만 아니라 자료와 아카이브, 전시와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자료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유물 수집에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들이 함께 수집되어야 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유물이나 자료의 수집방법은 구매, 조사, 기증, 기탁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유물의 수집업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중장기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 첫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유물의 중장기 수집정책을 수립한 후 그 정책에 바탕을 두고 소장품을 체계적으로 확충한다.
- 둘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유물의 구입을 합리화하고 민간기증을 활성화하여 전시 활용도가 높은 중요유물의 수집을 강화한다.
- 셋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유물의 수집에 있어서 실물만이 아니라 유물과 관련된 다양한 시청각자료, 문헌자료 등을 총체적으로 수집하여야 하고, 이를 관리하는 아카이브센터를 구축한다. 이 경우 이들 자료의 영구 보존을 위한 디지털화가 함께 진행되어야 하고, 이들 자료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
- 넷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수집대상은 과거지향적인 것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현재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농업관련 유물·자료 등도 함께 고려한다. 이 경우 현재의 농경방식과 관련된 도구, 이에 관련된 행사나 관습 등의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방조사와 함께 도시농경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장된 수집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다섯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소장품의 수집과 취득, 등록 및 정보기록, 대여 및 차용, 소장품 및 수장고 관리, 소장품의 처분 등 소장품의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갖추어 관리역량을 강화한다.

〔표 57〕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유물수집의 중장기 발전전략

중장기 발전전략	고려사항
유물의 중장기 수집정책을 수립한 후 그 정책에 바탕을 두고 소장품을 체계적으로 확충한다.	우리나라 농업의 현황과 역사를 공시적·통시적으로 이해하여야 시급하게 수집해서 보존해야하는 유물과 자료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고 이를 수집 및 관리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중장기 발전전략	고려사항
	농업과 관련된 근 · 현대 자료의 경우에는 그 배경적 요소, 구체적인 소유주와 제작자 또는 제작사, 활용방식 등을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전에 스토리텔링 및 아카이브를 고려하여야 한다. 유물이나 자료의 수집 시에는 자료의 보존환경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을 둘러싼 자연환경과 수집 대상물의 예방보존 가능성을 확인하고, 타 기관과의 차별성, 자료보존의 시급성 등에 대하여 자료의 수집 시부터 그 기준을 확립하여야 한다. 유물이나 자료의 수집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부합되는 것들로 선택하며, 수장공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 분야에 편중된 수집을 하기보다 연차적으로 수집 대상을 선정하여 집중 수집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여러 분야에 고른 수집이 가능하도록 연차별 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유물로서의 가치는 낮으나 전시와 교육,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아카이브로서 수집을 하되, 수장 공간 및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예산을 초과하는 것은 대여와 복제를 통해 활용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유물의 구입을 합리화하고 민간기증을 활성화하여 전시 활용도가 높은 중요유물의 수집을 강화한다.	기증자가 상식에 어긋나는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제시한 조건이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정책 및 윤리에 위배되면 기증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관 시에는 구입을 기반으로 전시목적의 자료를 수집하더라도, 개관 이후 사업을 고려하여 여러 범주의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매 시에는 자료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임무에 적합한지 내부 인력의 1차 의견과 자문위원들의 2차 소견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자료 매도자는 자료의 출처, 입수경로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홍보 등을 통한 기증을 유도하고, 기증 유도를 위해 기증자에게 명예를 갖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여 수집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증 · 기탁이 확정되면 그에 맞는 예우를 갖추어 주어야하고, 기증조건과 전시 · 교육 · 연구 · 교류 활용시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유물의 수집에 있어서 실물만이 아니라 유물과 관련된 다양한 시청각자료, 문헌자료 등을 총체적으로 수집하여야 하고, 이를 관리하는 아카이브센터를 구축한다.	유물과 자료의 수집과 함께 영구 보존을 위한 디지털화가 진행되어야 하고, 이들 자료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관 준비단계부터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서 생산되는 기록과 자료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후에도 기관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관아카이브를 구성하여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수집대상은 과거지향적인 것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현재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농업관련 유물·자료 등도 함께 고려한다.	현재 농촌의 유물과 자료수집에는 현재의 농경방식과 관련된 도구, 이에 관련된 행사나 관습 등의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방조사와 함께 도시농경에 대한 조사 등 확장된 수집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조사에 의한 수집은 실물자료의 수집과 함께 구술자료를 포함하고, 구술자료의 수집은 법과 윤리적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수집하여야 하는 생물자원과 생태자료는 채집의 형태로도 수집하여야 한다.
소장품의 수집과 취득, 등록 및 정보기록, 대여 및 차용, 소장품 및 수장고 관리, 소장품의 처분 등 소장품의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갖추어 관리역량을 강화한다.	

3-1-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수장고 및 보존처리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중장기 유물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유물의 수장 공간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유물의 출납관리,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유물DB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3-1-2-1. 수장고의 출납 및 관리

가. 개관준비기의 수장고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개관준비기 동안의 수장고는 임시 수장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임시보관 중인 유물일지라도 보관방법별로 분류하고, 전시 가능한 소장품은 별도로 구분하여 개관 이후 수장까지 고려한다. 이 경우에는 전시품을 우선적으로 유물 등록 및 보존처리하여야 한다.

○ 전시를 위한 자료들이 모두 수장고에 반입되면, 해포작업과 기록, 사진촬영 후 각 보관장소에 나누어 수장한다. 보존처리가 필요한 자료들은 보존처리실이 갖추어진 기관에 의뢰하여 보존처리를 의뢰하고, 보존처리된 자료가 반입되면 수장고의 전체 훈증을 실시한다. 훈증시 가급적 자료의 재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약제를 선정하고, 수장고에서의 업무를 고려하여 근무자에게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장고의 담당자는 자료의 반입 전에 자료에 해가 되지 않는 포장재와 보존제, 조습제, 온습도장부, 자료상자를 구매하여 수장고에 비치하도록 한다.

나. 개관 후의 수장고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개관 이후 수장고는 전시자료 이외의 영구보존자료부터 우선적으로 등록·보존처리를 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유물등록은 자체 유물표준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거나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소장하는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 관련 유물과 자료 등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개관 이후의 반입 자료는 1차적으로 보존처리 후 반입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수장고를 훈증한다. 이 경우 수장고를 관리하는 담당자는 수집품의 보존에 영향을 주는 빛, 온도와 상대습도, 유해가스, 생물학적 매개물 등과 같은 위험 요소들을 잘 이해하여야 하고, 그러한 손상 또는 훼손의 징후가 발견될 때에는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3-1-2-2. 유물의 보존처리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유물이나 자료의 수집과 동시에 그 보존처리가 가능한 시스템를 구축·운영한다.

○ 또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유물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보존유물과 그 밖의 유물을 구분하고 등급화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학습용이나 교육용의 자료는 담당자의 재량범위를 명확히 하여 학습이나 교육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 초기에는 필요한 보존처리시설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보존처리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최소한의 보존처리만 가능한 유물이나 자료의 수집을 우선하고, 필요한 경우 보존처리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3-1-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유물의 표준관리시스템 및 정보화

3-1-3-1. 유물의 표준관리시스템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유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유물표준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유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유물표준관리시스템은 자체 개발·구축이나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활용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활용하는 방법은 개발비용, 시간 및 완성도의 차원에서 효과적인 방법이다.

-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은 국립중앙박물관이 모든 문화유산에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고도화하여 국공립 박물관과 등록사립박물관에 보급하는 유물관리시스템으로서 유물정보를 웹기반으로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학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박물관의 주된 역할과 기능인 수집, 보존관리, 전시, 연구, 교육 등에 필요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 이러한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은 박물관 소장유물통합DB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국가문화유산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있어 이 시스템에 등록된 유물은 누구나 통합검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은 등록된 박물관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신청하여 접속허가를 받고, 웹주소에 접속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 그러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박물관·과학관·체험관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진 기관으로서 설립 초기 박물관 등록 이전에 유물등록 및 관리가 필요한 유물의 수집이 이미 이루어지고, 그 유물 중 일부는 일반 박물관의 유물과 성격을 달리하는 등의 특성이 있다.

○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그 설립단계에서부터 자체 독립적인 유물표준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이 필요하다. 다만, 재정확보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에 잠정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활용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3-1-3-2. 유물정보의 정보화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유물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규정에 유물정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유물정보의 디지털화 등을 포함한 유물DB를 관리하는 유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 및 구축한다.

- 유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소장유물을 영상, 사진, 발간자료, 제작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로 전시, 교육, 연구에 활용이 가능하게 하고, 문화상품의 개발 및 대외교류의 자원으로 사용되는 콘텐츠 개발에도 활용 가능하게 하는 등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개관 후 수익 창출에도 이바지한다.
- 유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은 소장유물의 등록번호 부여를 통해 유물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효과적인 유물관리를 가능케 한다.

3-1-4.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유물의 조사 및 연구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유물의 역사적 가치를 학술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연구역량을 강화한다.

○ 이를 위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우리나라 유일의 농경문화 및 식품분야의 전문박물관으로서 농경문화 분야의 연구지원을 통한 연구 활성화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한 학술연구역량을 강화한다.

○ 또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농경문화 관련 유물이나 자료가 고고, 역사, 민속, 미술, 공예, 영양, 자연과학 및 과학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있어 다학제적 조사연구를 통한 전시 및 연구콘텐츠를 확보하고, 관련 학문의 연구토대 형성을 지원한다.

3-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전시기획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농경역사·농경문화·농경유물·농법 및 농촌공동체 문화와 관련하여 중장기 전시계획을 수립하고, 전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전시프로그램의 기획·개발과 상호작용 대화형 전시체험을 통해 관람객의 관람·체험·참여·공감을 이끌어내는 이용자중심으로 나아가고,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우리의 농업역사문화를 널리 알리며 우리의 농업역사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농업 및 식품의 중요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3-2-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전시의 구성

3-2-1-1. 전시의 기본방향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에 따라 전시기획의 지향목표는 농업의 소중함과 문화 이해, 농업과 식품산업에 대한 호기심과 지적 욕구 충족, 농업과 식품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 제시로 설정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전시기획의 지향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람객과 소통하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전시·체험을 함께 만들어가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진화형 체험전시관'을 지향하고, 콘텐츠·연출·공간·운영 등 다각적인 전시방법을 적용하여 '진화형 체험전시관'을 구현한다.

〔그림 21〕 진화형 체험전시 흐름도

3-2-1-2. 전시의 공간구성 및 연출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전시공간은 건축실시설계 용역과정에서 기본계획의 공간배치계획에 변동을 주고 있으나, 제작공방실을 제외한 다른 공간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 건축실시설계 용역과정에서 농식품홍보관과 식문화관은 별관건물 1층에 배치하고, 나머지 역사관, 농업관, 첨단농업관, 3D영상관, 전시체험관, 직업체험관은 본관건물 1층에 배치하고 있다.

○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을 보완하여 전시공간으로 역사관, 농업관, 첨단농업관, 3D영상관, 전시체험관, 직업체험관, 농식품홍보관, 식문화관을 설치·운영한다.

- 전시공간 및 전시주제는 채집·수렵에서 시작되어 도구 발달과 함께 성장한 농업의 시대별 발전상을 이해할 수 있고, 인류의 식량생산을 위한 농업기술을 체험하며 농업에서 미래를 찾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 전체 전시스토리라인은 역사관과 농업관에서 초기 농업과 현대 농업의 역사와 발전상을 이해하고, 다양한 기술과 만나 발전하는 첨단농업관을 통해 농업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폭넓게 체험할 수

있도록 스토리를 구성한다.

- 전시동선은 관람객의 피로도 최소화와 접근의 편의성 도모를 위하여 관람동선을 최대한 짧게 구성하고, 그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전시내용의 수준과 전시스토리라인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또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에 따라 전시공간을 전시스토리라인에 따른 영역별로 전시구성 및 연출한다.

- 역사관은 구석기부터 조선시대까지 농경문화 발달사의 특징과 농경 유적 및 유물 중심으로 전시하고, 관람객의 의견을 반영한 오픈형 전시를 추구한다.
- 농업관은 근·현대 농업과 농업기술의 발전상 및 세계 농업의 현황 중심으로 전시하고, 농업과 관련된 세계적 이슈 및 변화상의 실시간 체험을 추구한다.
- 첨단농업관은 IT·BT 등 첨단기술과 융합된 첨단농업의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시하고, 연구기관 및 지역대학과 연계한 실험교실의 운영을 추구한다.
- 3D영상관은 초기 농경의 시작부터 미래 농업에 이르기 까지 농업의 전반적인 역사와 미래를 보여주는 영상 연출을 통하여 관람객에게 농업의 가치 제고를 추구한다.
- 전시체험관은 농사 과정과 농경문화 및 식품 체험을 통하여 농업분야를 이해할 수 공간으로 전시하고, 체험 결과에 따라 수확물이 달라지는 참여형·상호작용형 체험을 추구한다.
- 직업체험관은 농사 및 농식품 직업체험을 통하여 농업분야의 직업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시하고, 관련 기업 및 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변화하는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추구한다.
- 농식품홍보관은 귀농귀촌 및 도시농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및 농식품 관련 정책정보를 제공하며 농업 확산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하고, 관련 기관의 정보업데이트를 통해 실질적인 정보 제공을 추구한다.
- 식문화관은 한국 및 세계의 식문화와 미래 음식의 체험을 중심으로 전시하고, 주제에 따라 교체전시가 가능한 모듈형 전시디자인을 추구한다.
- 기획전시나 특별전시는 직접 또는 다른 기관과 협력을 통한 순회전시 등 다양한 방법을 추구한다.

3-2-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전시의 운영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전시의 운영은 남녀노소 전 연령층이 관람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체험 및 콘텐츠를 중심으로 농업의 특성에 따른 작물의 성장시기·계절·테마 등을 고려하고, 체험전시의 특성에 따른 직접체험 및 안전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또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전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계획에 따른 전시공간의 구성·연출과 함께 중장기 전시계획 및 전시기획시스템의 구축, 그에 따른 다양한 전시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전시기획 전문인력의 확보 등 전시기획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전시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중장기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 첫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중장기 전시계획을 수립한 후 그 계획에 바탕을 두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만의 특화된 상설전시를 기획한다.
- 둘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특별전, 테마전, 국제교류전 등 수준 높고 다양한 기획전시를 계획하여 관람객들의 요구 및 시대적 흐름에 신속하게 반응한다.
- 셋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다양한 관람객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시체험프로그램 및 다학제적 주제를 발굴한다.
- 넷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전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시평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상시 관람객의 반응을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 다섯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지속적으로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와 전시디자이너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표 58〕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전시기획의 중장기 발전전략

중장기 발전전략	고려사항
중장기 전시계획을 수립한 후 그 계획에 바탕을 두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만의 특화된 상설전시를 기획한다.	상설전시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존재이유를 보여주어야 하므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성격에 가장 알맞은 유물을 수집하고, 그 유물 중에서 전시 주제에 적합한 유물을 선정하여 상설전시를 표현하여야 한다. 상설전시는 장기적인 전시이므로 개관 전에 충분한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기획하여야 한다. 상설전시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만의 전시콘텐츠 특화방안을 마련하고, 그 목적과 메시지가 분명한 흥미로운 연출을 지향하여야 한다. 상설전시는 체험적·참여적 요소를 강화하고 수동적 관람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전시를 지향하여야 한다.
특별전, 테마전, 국제교류전 등 수준 높고 다양한 기획전시를 계획하여 관람객들의 요구 및 시대적 흐름에 신속하게 반응한다.	개관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시의성이 있는 주제로 기획전시를 개최하여야 한다. 기획전시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업 및 해외 유사박물관과의 교류전시 등을 지향하여야 한다. 기획전시는 특정 주제 표현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관람객의 욕구나 현재의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기획하여야 한다. 기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기획전시를 기획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순화하는 순회전시로 활용하여야 한다.

중장기 발전전략	고려사항
다양한 관람객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시체험프로그램 및 다학제적 주제를 발굴한다.	관람객과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지역민, 농업종사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전시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과 연동된 참여적·인터렉티브 전시미디어를 개발하여야 한다.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 그룹을 개발하고, 이들 다양한 이용자층을 위한 맞춤형 전시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전시소외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대상의 전시를 기획하고, 산간벽지나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찾아가는 전시체험관'을 기획하여야 한다.
전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시평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상시 관람객의 반응을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지속적인 평가시스템 개발을 통해 관람객의 전시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 환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홈페이지에 전시체험 및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관람객 만족도조사 방법 및 피드백체계를 구축하고,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상설전시는 전시에 대한 관람객들의 반응을 평가하여 그들의 요구와 필요에 맞춰 전시기법과 전시물을 교체하여야 한다.
지속적으로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와 전시디자이너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3-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교육운영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실 및 야외를 이용하여 다양한 농업·식품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절별·주제별 다양한 테마의 체험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채로운 교육활동을 수행하며 꾸준히 재방문하는 전시체험관이 되도록 하고, 학교 교육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각양각색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수준 높고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3-3-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교육의 구성

3-3-1-1. 교육의 기본방향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교육은 기본계획에 따라 전시 및 체험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농업의 미래가치를 공감하는 참여형, 체험형, 진화형프로그램 운영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교육은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과 연계되어야 효과적이기 때문에,

교육은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진화형 체험전시관'을 지향하므로 교육프로그램도 참여형·체험형·진화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3-1-2.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령별로 흥미 및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주제를 세분화하여 개발한다. 이 경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 어린이 및 청소년은 도심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농업 관련 프로그램을, 장년층은 도시농업·귀농귀촌 등 선호하는 프로그램들을 사전에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미취학 5~7세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은 체험을 통해 농업역사문화를 오감으로 느끼게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부체험관·온실 및 야외체험공간을 적극 활용한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단체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 때에는 안전 및 간식 공간을 배려하여야 하고, 사전에 교육청·관계기관 및 협회와의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 초등학생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은 사회, 슬기로운 생활, 과학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며 학기 중 교육 이외에도 방학 중 실시하는 학생 및 가족프로그램을 동시에 개발하고, 중학생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개발하며, 고등학생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은 미래의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농업 관련 특기자 전문교육 및 교과과정 연계 교육을 개발한다.
- 대학생 및 성인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은 교양이나 취미(가정 내, 텃밭, 주말농장, 도시양봉 등)로서의 농업에 대한 교육, 귀농·귀촌 예정 및 희망자를 위한 교육, 농업인을 위한 전문교육 등 수요에 맞추어 개발한다.
- 그 밖에 교사연수프로그램 및 관람객의 전시관람과 체험활동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와 도우미 등의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한다.

○ 또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주제별 및 계절별 교육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개발한다.

- 주제별 교육프로그램은 농업의 역사·문화, 식품, 공예, 원예, 자연·생태, 첨단농업 등 다양한 농업관련 주제별로 세분하여 개발한다.
- 계절별 교육프로그램은 온실과 야외체험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 마다 성장과정이 다른 곤충, 식물, 작물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한다. 이 경우 전시 및 체험물의 성장과정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세시풍속, 이야기 등의 무형요소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3-3-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교육의 운영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개관준비기에 담당인력의 구성, 교육 및 전시자료의 확보, 유사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의 참관 및 시사점 정리,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강사를 포함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인력의 수급 및 연수, 개별 교육프로그램의 실행계획 및 자료 준비, 학습안의 보완 및 확정, 교육프로그램 홍보 및 관람객 모집, 교육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등을 수행한다.

- 제1단계 담당인력 구성 : 교육의 기획 및 실행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추진력 있는 인력을 확보하여 총괄로 지정하고, 교육의 기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 인력을 확보하여 담당자를 확대한다.
- 제2단계 교육 및 전시자료 확보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고유 콘텐츠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확보 및 분류하고, 이를 교육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기 위하여 교육담당인력은 개별 소장유물의 정보와 자료, 전시체험실과 전시체험 자료, 외부 전문가들의 발표자료 등을 수집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정보지식체계 맥락에서 분류한다.
- 제3단계 유사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참관 및 시사점 정리 : 교육담당인력은 유사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참관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고 학습하는 기회를 가지며, 유사기관 교육담당자들과의 교류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제4단계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 교육담당인력은 수집된 정보와 자료들을 분석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연령·주제·계절별 교육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 경우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및 개발과정에 외부전문가와의 협업을 추진하고, 동시에 외부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에 활용한다.
- 제5단계 교육프로그램 운영인력의 수급 및 연수 : 교육담당인력은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및 관리하는 인력과 교육프로그램운영 현장강사를 선정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전시체험 및 전시체험물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 제6단계 개별 교육프로그램의 실행계획 및 자료 준비 : 연수된 강사 인력들과 함께 개별 교육프로그램의 주제·형식·체계·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교육프로그램 체계는 프로그램 개요 및 구성, 학습자료와 교재, 학습되는 전시체험물과 언어·평가방법 등으로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안과 지도안, 활동지와 교재 등의 개발을 추진한다.
- 제7단계 학습안의 보완 및 확정 : 교육담당인력은 내부 전시담당자들과 외부 교육전문가들에게 교육프로그램 및 학습안의 방법과 교육효과 등에 대한 감수를 거쳐 교육프로그램 및 학습안을 확정한다.
- 제8단계 교육프로그램 홍보 및 관람객 모집 : 교육담당인력은 교육프로그램 확정 후 외부에 교육프로그램을 널리 알려 다양한 형태의 관람객을 모집한다.

- 제9단계 교육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 교육프로그램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모니터링 담당내부인력의 교육, 평가결과의 환류 등이 가능한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 또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중장기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 첫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한 후 그 정책에 바탕을 두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한다. 이 경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관람객의 만족도 제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성격에 맞는 참여형 체험활동의 비중 확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용 교재 개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둘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교육전문인력(Educators)을 확충하여 농촌역사문화전시체험관 교육의 기획력을 강화한다.
- 셋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 전시프로그램 및 체험프로그램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학예연구본부 부서간의 협업 및 연계를 강화한다.
- 넷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지역 및 교육시설, 문화관련 시설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다섯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세계의 다양한 농업문화와 농업 관련 세계적인 이슈를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해외 유사 체험관이나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인력의 교류를 강화한다.

〔표 59〕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교육프로그램의 중장기 발전전략

중장기 발전전략	고려사항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한 후 그 정책에 바탕을 두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한다.	교육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하여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프로그램의 모니터링과 평가에 필요한 지표의 개발, 모니터링담당 내부인력의 교육, 평가결과의 환류 등의 평가체계를 구축 및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관람객의 만족도 제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성격에 맞는 참여형 체험활동의 비중 확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용 교재 개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은 지속적인 평가 및 환류를 통한 질을 관리하고, 개관 이후에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도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고유사업과 관련하여 과학, 인문, 역사, 사회 등 다양한 분야와 접목한 융복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장기 발전전략	고려사항
교육전문인력(Educators)을 확충하여 농촌역사문화전시체험관 교육의 기획력을 강화한다.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소장유물 및 전시품의 이해와 해석에 대한 대중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실행·평가를 전담하는 교육전문인력(Educators)을 확보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교육용 교재, 시연·특별행사 등을 개발하도록 교육의 기획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체험프로그램 교육은 해당 교육분야의 전문가나 유경험자들을 자원봉사자나 지원교사로 활용하여 관람객의 만족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 전시프로그램 및 체험프로그램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학예연구본부 부서간의 협업 및 연계를 강화한다.	교육프로그램은 전시프로그램 및 체험프로그램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교육담당자는 전시실 및 체험실의 기획단계부터 전시부서와 상호 협업하여 전시부서의 기획 의도가 잘 반영된 질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교육담당자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연구부서의 연구결과를 반영하고, 일회성 교양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문성을 가진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하여야 한다.
지역 및 교육시설, 문화관련 시설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같은 지역의 시설,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학교·교육청 등의 교육시설, 각 지역별 전시관, 박물관, 체험관 등의 문화 관련시설과 협력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확대하여야 한다. 지역이나 교육기관, 문화관련 기관들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세계의 다양한 농업문화와 농업 관련 세계적인 이슈를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해외 유사 체험관이나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인력의 교류를 강화한다.	농업에 대한 이해의 확대를 위하여 세계의 다양한 농업문화를 소개하고, 기후변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건강한 먹거리와 같은 세계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농업 농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한다. 농업역사문화 관련 해외 전문기관이나 유사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의 교류를 강화한다.

3-4.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수익창출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고객경험관리(Customer Experience Management) 프로세스를 통한 지속적인 방문객의 확보,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지속적인 전시·체험·교육 프로그램의 향상 및 시설의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재정의 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수익창출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고객경험관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고객의 서비스구매 전 과정(서비스의 경험 전, 경험 시점, 경험 후)에 제공하는 유·무형의 가치들이 고객들에게 유의미한 경험이 되도록 고객접점 모든 채널을 통해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고객 충성도를 획득하여 유지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3-4-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수익사업의 구성

3-4-1-1. 수익사업의 기본방향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수익사업은 기본계획에 따라 입장료 및 체험료, 기부금 및 멤버십, 편의·부대시설 운영, 부분 위탁운영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3-4-1-2. 수익사업의 예상수익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관람객 수요에 대하여 KDI 예비타당성조사는 연간 최소 62만명에서 최대 170만명을 산정하였고, EGA 기본계획은 연간 최소 58만명에서 최대 120만명을 산정하였다.

〔표 60〕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관람객 수요

구 분	KDI 예비타당성조사	EGA 기본계획
최 소	620,871명/년	585,098명/년
최 대	1,696,909명/년	1,224,476명/년
평 균	1,158,890명/년	904,787명/년

○ 또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은 입장료 및 체험료, 체험·교육프로그램요금, 임대료(대관료, 위탁임대공간료, 주자장수입) 등의 수입을 연간 최소 48억 5,400만원에서 최대 95억 8,5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 입장료 및 체험료의 수준을 7,000원으로 적용하여 연간 최소 40억원, 최대 85억원의 수입을 추정하였다.
- 체험·교육프로그램의 수준을 11,000원으로 산정하고 참여비율을 3.6%로 적용하여 연간 최소 23억원, 최대 49억원의 수입을 추정하였다.
- 임대료의 경우 대관시설(다목적 전시홀, 교육공간, 로비)은 단가 953원/㎡×52일/년을, 위탁임대시설(식당 등)은 단가 266,362원/㎡·년을, 주차장은 당가 3,000원/대를 적용하여 연간 5억 2,400만원의 수입을 추정하였다.

〔표 61〕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현금수입 추정

관람객 수요	입장료/체험료	체험·교육 프로그램요금	임대료	합계
최 소	4,096,000,000	234,000,000	524,000,000	4,854,000,000
최 대	8,571,000,000	489,000,000	524,000,000	9,585,000,000

○ 그러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축실시설계 용역과정에서 시설물의 공간배치 및 면적이 변동되었고, 개관까지의 물가 상승률 및 기타 수익사업의 추가 등을 고려할 때에 기본계획의 예상수익 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3-4-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수익사업의 운영

3-4-2-1. 입장료 및 체험료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관람객의 지속적 확보와 수익창출을 위하여 입장권 및 체험권을 관람객들이 자신의 방문목적 등에 맞도록 자유롭게 선택·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판매 및 이용제도를 구축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관람객의 지속적 확대와 수익창출에 필요한 입장권 및 체험권의 판매 및 이용제도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중장기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 입장료 및 체험료는 관람객의 방문목적 및 범위에 따라 시설별 체험범위, 패키지 이용, 연령별 요금 등을 다양하게 세분하여 운영한다.
- 입장권 및 체험료는 전시관·체험관의 주제와 시설별 특성에 따라 1일권, 시설별 이용권, 테마권, 프리패스 등 다양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시설이용·교육·식음료이용 등 다양한 상품과 결합한 입장권 및 체험권을 동시에 개발하여 운영한다.
- 입장료 및 체험료는 지역문화행사 기간 등에 할인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와의 공존 및 지역고객의 지속적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농업관련 시설과의 연계된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 입장료 및 체험료는 기본이용요금에 추가체험을 필요로 하는 관람객의 연속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추가요금제를 운영한다.
- 입장료 및 체험료는 현장방문, 인터넷 홈페이지 예매 이외에도 소셜커머스·모바일·기프트콘

등 다양한 구입방법의 제공 뿐만 아니라 온라인 회원가입에 따른 할인,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구매자의 할인·우선입장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개발하여 운영한다.

3-4-2-2. 기부금 및 멤버십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기부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농업역사문화의 발전에 대한 관람객의 활발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회원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람객의 방문을 유도함으로써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재정 자립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근거에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에 대하여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자유롭게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고, 사업 및 운영을 지원하는 후원회를 두고 회원들로부터 후원금이나 물품을 모집하여 인계받는 기부제도 및 회원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가 갖추어져 있다.

○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재정자립도의 제고를 위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기부금제도, 후원회제도, 일반회원제도 등을 구축 및 운영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중장기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 후원회제도의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후원회가 법률에 의한 후원금의 모집과 인계의 공정한 운영, 후원회 회원의 지속적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들 회원에게는 발간 간행물의 무료 배포나 입장료·체험료의 면제, 명예부여 등 우대정책을 실시한다.
- 기부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기부항목을 별도로 구성하여 다양한 기부대상 및 금액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적극적인 이벤트나 행사 등을 통하여 기부금 모금활동을 강화한다.
- 후원 및 기부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사회적 취약·소외계층 교육지원, 지역문화 개발사업, 농업 관련 특성화사업 등 다양한 신규 지원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운영한다.
- 일반회원의 확보를 위하여 개인회원, 가족회원, 특별회원, 평생회원 등의 일반회원제를 운영하고, 입장 할인혜택, 간행물 무료배포, 교육 제공, 기념품 구매할인, 행사안내 및 소식지 배포, 학습지 배포 등 회원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 기부나 후원 등의 확대를 위하여 온라인·모바일을 이용한 멤버십제도를 통해 다양한 홍보 및 이벤트나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모바일 기프트 콘과 같이 멤버십의 선물이 가능하도록 하며,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내 멤버십 전용라운지 개설 및 멤버십 회원문화행사 등을 제공하여 지속적 방문을 유도한다.

3-4-2-3. 편의 및 부대시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판매시설, 카페, 식당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활발한 관람객의 방문을 유도함으로써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재정 자립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유휴공간(컨퍼런스실, 교육강의실, 라운지 등)도 다양한 파티나 문화행사 등을 유치하여 활용함으로써 수익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편의·부대시설 및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중장기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 뮤지엄 숍은 자체 개발하거나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개발한 도시농업을 위한 체험상품, 치유농업을 위한 화분 키우기 세트상품 등과 같은 다양한 농업문화상품이나 출판물 등을 관람객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 식당·카페 등의 식음료 시설은 임대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전시·체험용 식음료상품 등의 개발을 통하여 관람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
- 컨퍼런스룸, 교육강의실은 농업역사문화 관련 강좌나 회원들의 생일 파티 등에 시설대관 서비스로 제공하고, 라운지나 외부공간은 농업 관련 기업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이벤트나 행사에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 교육강의실이나 세미나실은 어린이교육프로그램,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등에 제공하여 공간 활용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수익을 창출한다.
- 식음료 시설이나 유휴공간(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비어 있는 사각공간 등)은 관람객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자판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3-4-2-4. 위탁사업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설관리, 청소, 경비, 주차, 안내·매표, 상설전시장을 제외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변경과 콘텐츠의 보완 및 관람객의 요구와 반응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전시체험관의 전시운영관리를 위탁운영하고, 기획 및 특별전시 성격을 가진 컨퍼런스룸(다목적공간)의 부분 시설대관과 위탁을 동시 운영함으로써 전문성 극대화와 비용 절감을 통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재정 자립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경영합리화를 통한 비용 절감과 전문성 극대화를 추구하고

그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위탁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중장기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 시설관리, 청소, 경비, 주차, 안내·매표, 전시체험관 전시운영관리, 컨퍼런스룸 등의 위탁사업은 안정적인 운영과 수준 높은 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 용역발주하고, 사전에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 전시체험관 전시운영관리는 용역을 발주할 때에 위탁용역사의 업무범위, 근무지별 소요인력 및 자격기준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서비스수준협약의 체결 및 평가를 통해 실적 및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여 일정 이상의 서비스 수준 유지를 유도한다.
- 전시체험관 전시운영관리는 전시체험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연속성의 확보를 위하여 2년 단위의 장기계약으로 하고, 입찰공고, 현장설명회,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기술협상 등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 전시체험관 전시운영관리나 컨퍼런스룸의 용역발주는 용역위탁사가 기업의 협찬광고 스폰서십을 유치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수익을 증대를 유도하고, 기업의 협찬광고 스폰서십을 유치한 위탁용역사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적극성 제고와 부가 수익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3-4-2-5. 홍보 및 마케팅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지속적인 관람객 증대와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및 농업역사문화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그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확산시키는 감성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하여야 한다.

○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람객의 증대와 안정적인 수익의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중장기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 기관의 정체성, 철학, 가치를 담은 CI(Corporate Identity) 등의 개발을 통하여 관람객에게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한다.
- 기관의 문화상품을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하여 관람객의 관심을 증대시킨다. 이 경우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사전에 고유의 독창적인 문화상품을 자체 개발하거나 유명 디자이너와 협업하여 개발하고, 소장유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상품을 개발하며, 우리 농업역사와 문화·유물을 소재로 하는 교육용 게임이나 모바일 콘텐츠 등도 개발하여야 한다.
- 기관의 시설을 각종 방송프로그램이나 행사 등의 장소로 대여 또는 제공하고, 농업과 관련된

방송프로그램이나 행사 등에 기관의 전시·체험·교육프로그램이 연계되도록 추진하여 관람객의 방문을 유도한다.

- 자체 셔틀버스의 운행 및 지역시티투어버스의 연계를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축제의 연계를 통해 지역민의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며, 스탬프 투어나 앱을 이용한 이벤트를 통해 관람객의 참여를 확대하고, 블로그나 카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기관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 유관기관이나 지역문화기관과의 연구·전시·교육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채로운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상호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농업 관련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전시·체험·교육프로그램의 제공과 함께 자연스러운 홍보 및 마케팅의 효과를 강화한다.
- 홈페이지 및 사이버체험전시관을 구축하여 소장유물, 전시·체험관 및 전시·체험·교육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관람객들의 흥미와 방문 유도를 강화한다.

〔표 62〕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수익창출의 중장기 발전전략

구 분	중장기 발전전략
입장료 및 체험료	입장료 및 체험료는 관람객의 방문목적 및 범위에 따라 시설별 체험범위, 패키지 이용, 연령별 요금 등을 다양하게 세분하여 운영한다. 입장권 및 체험료는 전시관·체험관의 주제와 시설별 특성에 따라 1일권, 시설별 이용권, 테마권, 프리패스 등 다양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시설이용·교육·식음료이용 등 다양한 상품과 결합한 입장권 및 체험권을 동시에 개발하여 운영한다. 입장료 및 체험료는 지역문화행사 기간 등에 할인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와의 공존 및 지역고객의 지속적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농업관련 시설과의 연계된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입장료 및 체험료는 기본이용요금에 추가체험을 필요로 하는 관람객의 연속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추가요금제를 운영한다. 입장료 및 체험료는 현장방문, 인터넷 홈페이지 예매 이외에도 소셜커머스·모바일·기프트콘 등 다양한 구입방법의 제공 뿐만 아니라 온라인 회원가입에 따른 할인,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구매자의 할인·우선입장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개발하여 운영한다.
기부금 및 멤버십	후원회제도의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후원회가 법률에 의한 후원금의 모집과 인계의 공정한 운영, 후원회 회원의 지속적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들 회원에게는 발간 간행물의 무료 배포나 입장료·체험료의 면제, 명예 부여 등 우대정책을 실시한다. 기부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기부항목을 별도로 구성하여 다양한 기부대상 및 금액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적극적인 이벤트나 행사 등을 통하여 기부금 모금활동을 강화한다. 후원 및 기부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사회적 취약·소외계층 교육지원, 지역문화 개발사업, 농업관련 특성화사업 등 다양한 신규 지원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운영한다. 일반회원의 확보를 위하여 개인회원, 가족회원, 특별회원, 평생회원 등의 일반회원제를 운영하고, 입장 할인혜택, 간행물 무료배포, 교육 제공, 기념품 구매할인, 행사안내 및 소식지 배포, 학습지 배포 등 회원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기부나 후원 등의 확대를 위하여 온라인·모바일을 이용한 멤버십제도를 통해 다양한 홍보 및 이벤트나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모바일 기프트 콘과 같이 멤버십의 선물이 가능하도록 하며,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내 멤버십 전용라운지 개설 및 멤버십 회원문화행사 등을 제공하여 지속적 방문을 유도한다.

구 분	중장기 발전전략
편의 및 부대시설	뮤지엄 숍은 자체 개발하거나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개발한 도시농업을 위한 체험상품, 치유농업을 위한 화분 키우기 세트상품 등과 같은 다양한 농업문화상품이나 출판물 등을 관람객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식당·카페 등의 식음료 시설은 임대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전시·체험용 식음료상품 등의 개발을 통하여 관람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 컨퍼런스룸, 교육강의실은 농업역사문화 관련 강좌나 회원들의 생일 파티 등에 시설대관 서비스로 제공하고, 라운지나 외부공간은 농업 관련 기업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이벤트나 행사에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교육강의실이나 세미나실은 어린이교육프로그램,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등에 제공하여 공간활용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수익을 창출한다. 식음료 시설이나 유휴공간(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비어 있는 사각공간 등)은 관람객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자판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위탁사업	시설관리, 청소, 경비, 주차, 안내·매표, 전시체험관 전시운영관리, 컨퍼런스룸 등의 위탁사업은 안정적인 운영과 수준 높은 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 용역발주하고, 사전에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전시체험관 전시운영관리는 용역을 발주할 때에 위탁용역사의 업무범위, 근무지별 소요인력 및 자격기준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서비스수준협약의 체결 및 평가를 통해 실적 및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여 일정 이상의 서비스 수준 유지를 유도한다. 전시체험관 전시운영관리는 전시체험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연속성의 확보를 위하여 2년 단위의 장기계약으로 하고, 입찰공고, 현장설명회,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기술협상 등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전시체험관 전시운영관리나 컨퍼런스룸의 용역발주는 용역위탁사가 기업의 협찬광고 스폰서십을 유치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수익을 증대를 유도하고, 기업의 협찬광고 스폰서십을 유치한 위탁용역사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적극성 제고와 부가 수익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홍보 및 마케팅	기관의 정체성, 철학, 가치를 담은 CI(Corporate Identity) 등의 개발을 통하여 관람객에게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한다. 기관의 문화상품을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하여 관람객의 관심을 증대시킨다. 이 경우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사전에 고유의 독창적인 문화상품을 자체 개발하거나 유명 디자이너와 협업하여 개발하고, 소장유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상품을 개발하며, 우리 농업역사와 문화·유물을 소재로 하는 교육용 게임이나 모바일 콘텐츠 등도 개발하여야 한다. 기관의 시설을 각종 방송프로그램이나 행사 등의 장소로 대여 또는 제공하고, 농업과 관련된 방송프로그램이나 행사 등에 기관의 전시·체험·교육프로그램이 연계되도록 추진하여 관람객의 방문을 유도한다. 자체 셔틀버스의 운행 및 지역시티투어버스의 연계를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축제의 연계를 통해 지역민의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며, 스탬프 투어나 앱을 이용한 이벤트를 통해 관람객의 참여를 확대하고, 블로그나 카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기관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유관기관이나 지역문화기관과의 연구·전시·교육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채로운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상호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농업 관련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전시·체험·교육프로그램의 제공과 함께 자연스러운 홍보 및 마케팅의 효과를 강화한다. 홈페이지 및 사이버체험전시관을 구축하여 소장유물, 전시·체험관 및 전시·체험·교육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관람객들의 흥미와 방문 유도를 강화한다.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체계적인 운영방안 연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체계적인 운영방안 연구

제6장

결 론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2021년 상반기(5월) 개관을 위해서는 그 설립근거의 법제화, 법률에 근거한 조직체계의 구성, 건축공사의 착공 및 완료, 개관 이후 직원·유물·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다양한 경영기법과 홍보마케팅방안을 연구·개발하는 등 꾸준한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개관의 연착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야별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첫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법제화 및 법률에 근거한 조직체계의 구성을 조속히 추진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근거 법제화를 위한 입법과정은 행정부 내에서만 5개월~7개월이 소요되고 국회의 심의 및 의결과정은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일률적이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된다.

- 입법계획의 수립 : 법제처장은 매년 정부입법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여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입법수요를 파악하여 법령안 별로 입법의 필요성, 주요내용, 추진일정, 입법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제출하고, 법제처장은 정부전체 차원에서 입법추진일정과 중복·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한 후 매년 1월 중에 국무회의에 보고하며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린다.
- 법령안의 입안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조사 및 연구 등을 통하여 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법령안을 입안한다.
- 부패영향평가(15~30일 소요)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에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강구한다.
- 관계기관과의 협의(10일 이상 소요)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 및 개정 법령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친다. 이 경우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신설 지정 사전심사를 요청한다.
- 입법예고(40~60일 소요) : 법령안의 주요내용, 의견제출 기간,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여 관보 및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공고한다.
- 규제심사(15~20일 소요)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서, 자체 심사의견 등을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는다.
- 법제처심사(20~30일) : 법제처로부터 법령안의 자구·체계 등의 형식적 사항과 헌법이념 및

상위법과의 위반여부, 다른 법령과의 중복·충돌여부, 입법내용의 적법성 등 실질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받고 수정·보완한다.

- 차관회의(7~10일 소요) 및 국무회의(5일 소요) 심의 : 법제처의 심사가 완료된 법령안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받는다.
-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7~10일 소요) :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법령안은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후 대통령이 재가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법률안은 법제처가 대통령의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 국회의 심의·의결 및 공포안의 정부이송 :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공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의결된 법률안은 공포를 위하여 정부로 이송된다.
- 국무회의 상정(5일 소요) 및 공포(3~4일 소요) : 공포안의 정부이송 후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다.

〔그림 22〕 정부의 입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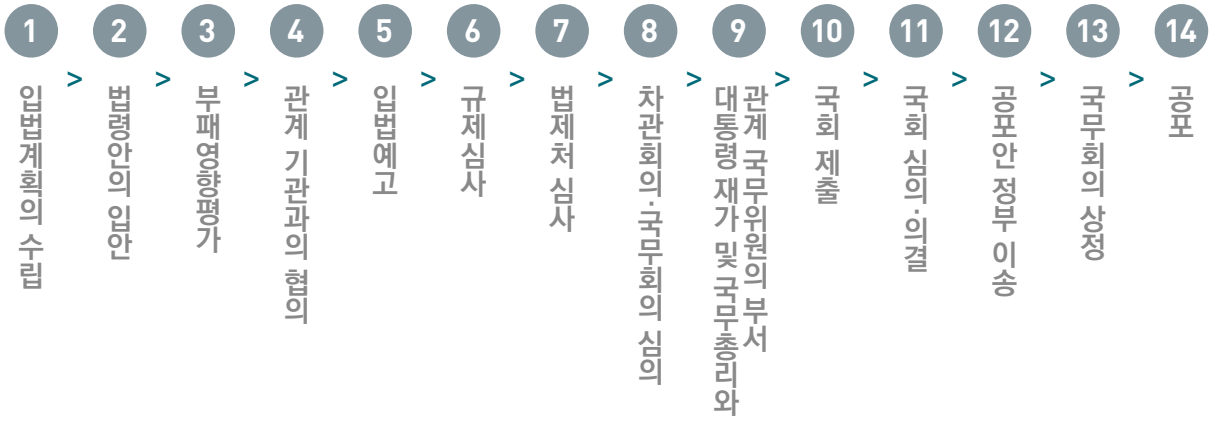

○ 따라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은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안 및 정관안을 확정하고, 법령안의 입안 및 제출, 부패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및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신설 사전심사,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대통령재가 및 국회제출을 추진하고,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법령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또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의 법제화가 마련되면, 2020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설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관 확정, 임원 선임, 주요 운영내용 및 세부규정 마련, 설립등기, 업무인계 등을 거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을 설립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법의 규정에 따라 법률 공포 후 2개월 이내(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설립위원을 추천·확정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설립위원회가 정관 확정 및 임원 선임을 거쳐 장관의 정관 인가 및 임원 임명을 받고 재산출연 범위 등 주요 운영사항에 관하여 심의 및 결정하며 확보된 예산규모에 맞추어 기관운영에 필요한 직제·인사·보수 등의 세부 조직운영규정을 연구 및 확정한 후 설립등기를 하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관장(이사장)에게 업무인계를 한 후 해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그리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설립되면, 2021년 5월까지 개관준비에 필요한 창립이사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업무를 인계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은 2021년 5월까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자체 운영 및 개관준비에 필요한 창립이사회 개최 및 내부규정 확정, 사업계획서 작성 및 승인, 공공기관 지정대상 통보 및 지정, 직원채용 및 배치, 개관식 준비 등의 업무를 지원하면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직원에게 업무를 인계한다. 이 경우 법률 및 정관의 부칙에 따라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에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공무원 이외의 직원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과 동시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직원으로 임용하여 그 업무를 인계받도록 한다.
- 그리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에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공무원 중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법률 및 정관의 부칙에 따라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시키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직원으로 임용되도록 조치한다.

○ 둘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은 건축공사의 착공 및 완료, 상설전시 및 체험관의 구성, 직원·유물·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경영기법·홍보마케팅방안 등을 연구 및 개발한다.

- 건축공사 및 상설전시·체험관의 구성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기본계획을 수정(2018.1.24.)한 일정에 따라 2018년부터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2020년까지 완료하고, 2021년 상반기 개관 전까지 사전 운전을 통하여 수정·보완한다.
- 직원의 인사, 보수나 조직의 직제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근거법의 법제화가 마련되면, 설립위원회에서 확보 가능한 예산규모와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2020년 상반기부터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 전까지 외부용역 등을 통하여 적정 수준의 직급, 임금, 보수체계 등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내부 규정화하여 운영한다.

- 유물수집은 2018년부터 유물수집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유물의 선정·구입 등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 2018년 유물수집대상을 조사·선정하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유물의 구입·입수, 유물의 등록·정리 등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민간기증 활성화와 기증자우대제도 연구, 생물자원과 생태자료 조사 및 관리제도 연구 등의 외부용역을 통하여 유물 조사 및 수집의 활성화 및 전문성을 제고한다.
- 유물수장은 유물의 수집이 이루어지는 2019년부터 임시수장고를 확보·운영하며 2020년 건축완료 후 2021년 초 수장고 시운전을 거쳐 개관 전까지 유물들을 이전 및 격납한다.
- 유물정보화는 2019년부터 유물통합관리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고, 2021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개관 전까지 수정 및 보완한다.
- 전시기획은 2018년에 전시주제 해설기초자료 연구, 2019년에 기획전시전 및 찾아가는 전시전 연구와 방문객 친화형 콘텐츠 연구, 2020년에 체험기반 감성형 콘텐츠 연구 등의 외부용역을 통하여 관람객의 지속적 방문을 유도하는 전략을 개발한다.
- 교육운영은 2018년에 참여형 체험교육프로그램 연구 및 교재개발, 2019년에 학교교육과정연계프로그램 연구 및 교재개발, 2020년에 지역문화 및 유관기관연계교육프로그램 연구 등의 외부용역을 통하여 관람객의 확대 및 교육효과를 제고하는 전략을 개발한다.
- 수익창출은 2018년에 입장료·체험료 징수제도 연구, 2019년에 후원 및 자원봉사자 활성화제도 연구, 2020년에 소장유물콘텐츠 활용을 통한 다양한 문화사업 운영방안 연구 등의 외부용역을 통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재정자립도를 강화하는 전략을 개발한다.
- 홍보마케팅은 2019년에 사이버전시체험관 개발과 홈페이지 운영 및 기업홍보방안 연구, 2020년에 기업브랜드 개발과 고객만족도 등 관람객평가제도 연구 등의 외부용역을 통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전략을 개발하고, 2020년부터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개관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행사·이벤트행사를 기획·운영하여 관람객의 지속적 관심과 방문을 유도한다.

○ 셋째,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2021년 상반기 개관을 위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의 조직을 강화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 설립되어 개관하기 까지는 설립법안의 마련, 설립을 위한 입법추진, 설립위원회의 운영, 초기 임원의 구성, 건축공사의 착공 및 관리, 유물의 수집 및 관리, 전시의 설계 및 기획,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수익사업 및 홍보마케팅의 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그러나 현행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은 정원 2명(팀장 및 사무관)에 건축공사에 필요한 기술직 공무원, 서무·기획담당 공무원, 전시·교육담당 학예사 등을 배치 및 파견을 받아 총 10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에 필요한 전문적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박물관·과학관·체험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설립에는 건축, 전시설계, 유물수집, 교육, 연구, 수익사업, 홍보마케팅 등의 전문인력 배치가 요구되고, 설립법안의 입법추진 및 설립위원회의 운영 등의 업무량을 고려하더라도 적정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
- 따라서 2018년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예산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준비인력의 예산을 배정하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 이후에 고용할 전문인력을 사전에 채용·운영한다. 그리고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은 팀장 아래 추진실무단을 설치하고, 지금의 인력 이외에 학예연구본부장급 1명, 유물수집·관리 2명, 전시·체험관리 1명, 교육프로그램개발 1명, 홍보마케팅·수익사업개발 2명 등 총 7명을 보강할 것을 정책적으로 제안한다.
-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추진실무단에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설치근거법 및 정관에 따라 그 설립과 동시에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직원으로 임용되고, 2021년 5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의 활동 종료와 함께 그 업무를 인계받는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직제를 개정하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의 활동기간을 2021년 5월까지 연장하고, 그 활동기간의 종료와 함께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을 지원·감독하는 새로운 사무를 농촌정책국의 업무에 분장한다.

〔표 63〕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사업추진 일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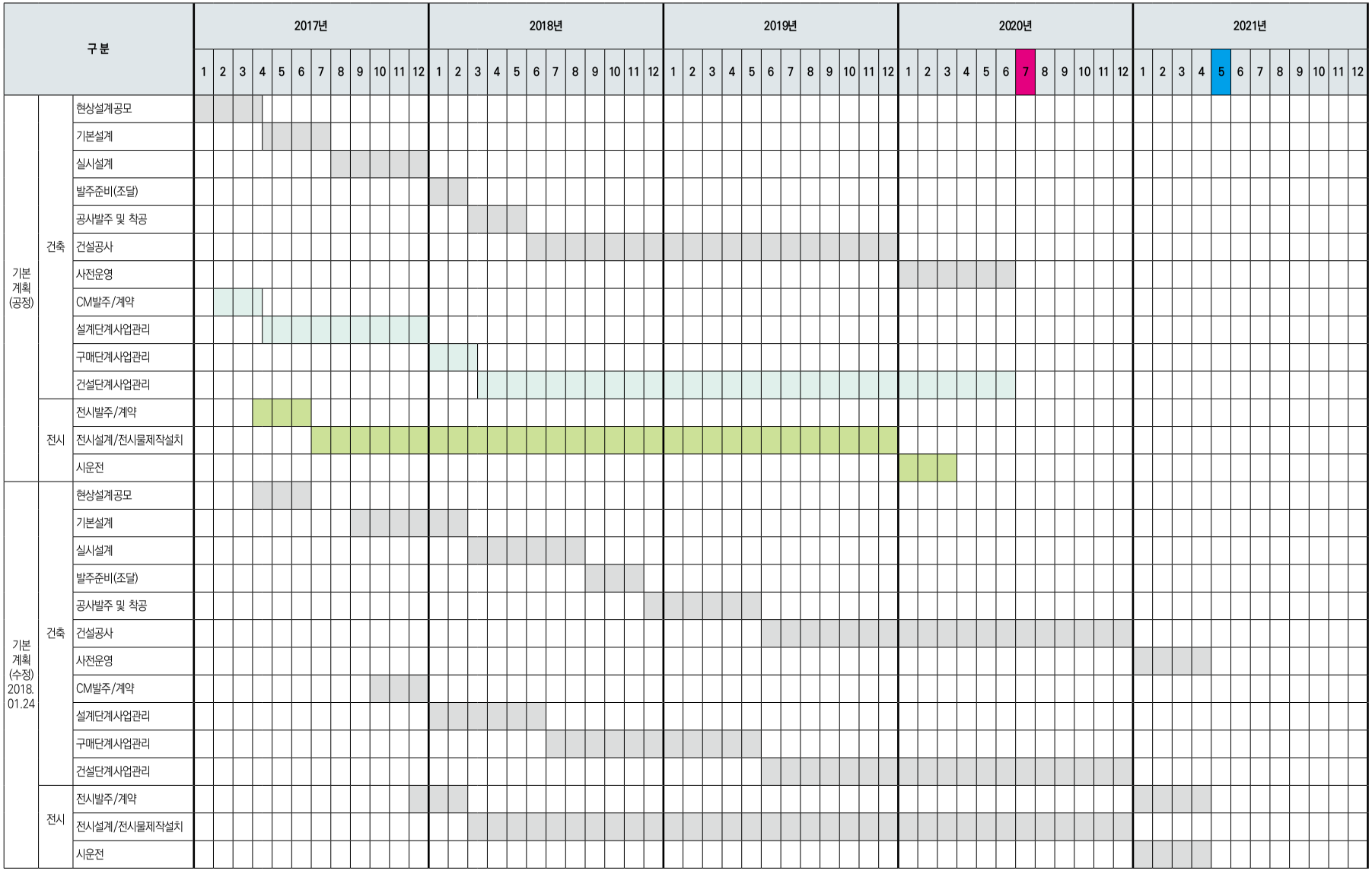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법인 설립	설립 법안	추진계획 수립																																																												
		예비법령안 연구 및 마련																																																											
		예비정관안 연구 및 마련																																																										
		예비운영규정안 연구 및 마련																																																										
		법령안의 검토 및 확정																																																										
		정관안의 검토 및 확정																																																										
		운영규정의 검토·확정 및 추가 운영규정 연구																																																										
	입법 추진	입법계획 수립																																																										
		입법계획 제출(법제처)																																																										
		법령안의 입안 및 제출																																																										
		부패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공공기관 신설 사전심사(기획재정부)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국회 심의·의결 및 공포안 정부 이송																																																										
		국무회의 상정 및 공포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법인 설립	설립위원 추천 및 확정																																																												
	설립위원회 설치																																																											
	정관 확정																																																											
	임원(관장·이사·감사) 선임																																																										
	정관 인가 및 임원 임명(장관)																																																										
	재산출연범위 등 주요 운영내용의 심의 및 결정																																																										
	세부운영규정 검토 및 마련(조제, 인사, 보수 등)																																																										
	설립등기																																																										
	업무인계 및 해산																																																										
	국유재산 무상양도 협의(기획재정부)																																																									
조직 체제 구성	창립이사회 개최(내부규정 승인)																																																									
	사업계획서 작성 및 승인요청																																																									
	직원채용 및 배치																																																									
	공공기관 지정대상 통보 및 지정																																																									
	사업계획서 승인(장관)																																																									
	개관식 준비 및 개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추진팀 업무인계 및 장부 지원조직 신설 (조직개정)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유물관리	유물수집	기초자료 조사연구																																																												
		유물수집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유물수집대상 조사 및 선정																																																										
		유물구입 및 입수																																																										
		유물등록 및 정리																																																										
		민간기증 활성화 방안 및 우대제도 연구 및 개발																																																										
		생물자원·생태자료 조사, 관리제도 연구 및 개발																																																										
	유물수장	임시수장고 확보 및 운영(보존처리)																																																										
		수장고 시운전																																																										
		유물 이전 및 격납																																																										
	유물정보화	유물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유물통합관리시스템 수정 및 운영																																																										
사업운영	전시기획	기획전시전 및 찾아가는 전시전 연구 및 개발																																																										
		체험기반 감성형 콘텐츠연구 및 개발																																																											
		전시주제 해설기초자료 연구 및 개발																																																										
		방문객 친화형 콘텐츠 연구 및 개발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 운영	교육 운영																																																												
		참여형 체험교육프로그램 연구 및 교재 개발																																																											
		학교교육과정연계프로그램 연구 및 교재 개발																																																											
		지역문화·유관기관연계 교육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수익 창출	입장료 체험료의 징수제도 연구 및 개발																																																										
		후원 및 자원봉사자 활성화제도 연구 및 개발																																																										
		소장유물콘텐츠활용을 통한 다양한 문화사업 운영방안 연구 및 개발																																																										
	홍보 마케팅	기업브랜드(CI 등) 개발																																																										
		사이버전시체험관 연구 및 개발																																																										
		홈페이지 운영 및 기업 홍보방안 연구 및 개발																																																										
		고객만족도 등 전시·체험·교육프로그램 평가제도 연구 및 개발																																																										
		전시체험관 홍보 및 이벤트 행사의 지속적 실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체계적인 운영방안 연구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체계적인 운영방안 연구

참고문헌

- 강방훈(2011.4),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통지식자원 발굴 및 활용 방안”, 2011년 4월 인문콘텐츠학회 클로키움 : 농촌 콘텐츠와 농촌지역 활성화, 인문콘텐츠학회.
-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2014.12), 영화박물관 건립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국토교통부(2015.5), 국립항공박물관 세부전시계획 및 운영방안 수립(안),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 국토해양부(2008.12), 국립해양박물관 운영방안 연구 -최종보고-, 국토해양부.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1.25.),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 기획재정부.
- 김명규(2017.8.25.),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성과와 정책방향”, 인터넷자료 - http://blog.naver.com/kpfisnet/221081961333.
- 김창규 외(2012.12), 문화유산기록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촉진방안연구, 문화재청.
- 김형준(2011.4), “농촌체험 마을의 현실과 발전방향”, 2011년 4월 인문콘텐츠학회 클로키움 : 농촌 콘텐츠와 농촌지역 활성화, 인문콘텐츠학회.
- 김혜인 외(2013.12), 국립체육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서곡숙(2011.4),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통 가옥의 효율적 활용 방안”, 2011년 4월 인문콘텐츠학회 클로키움 : 농촌 콘텐츠와 농촌지역 활성화, 인문콘텐츠학회.
-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2016.12), 국립항공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조사 용역, 국토교통부.
-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2017.1), 국립한글박물관 관람객 홍보마케팅 방안, 국립한글박물관.
- 양건열 외(2011.6), 국립박물관 교육의 방향과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양건열 외(2013.12), 한국미술진흥재단 설립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2016.1), 방문객 친화형 생활사박물관 건립타당성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윤유석(2011.4), “농촌발전을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 의미와 방향”, 2011년 4월 인문콘텐츠학회 클로키움 : 농촌 콘텐츠와 농촌지역 활성화, 인문콘텐츠학회.
-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2008.12), 국립생태원 기본계획 수립 2단계 연구 최종보고서, 환경부.
- 인문콘텐츠학회(2011.4), 2011년 4월 인문콘텐츠학회 클로키움 : 농촌 콘텐츠와 농촌지역 활성화, 인문콘텐츠학회.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2017.1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상설전시장 공간 재배치를 위한 전시체계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2015.4), 국립제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기본계획, 국립제주박물관.
-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2016.4),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실행계획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교통연구원(2013.12), 국립 항공박물관 건립 기획 연구, 국토교통부.
-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2016.5), 새만금박물관 건립방안 구상 연구, 새만금개발청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12), 국립한글박물관 콘텐츠 활용을 통한 박물관 문화사업 운영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4.12),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2010.10), 세종학당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0.5),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연구, 해양수산부.
-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 부설 문화재연구소(2014.10), 국립지적박물관 설치 타당성 연구, 국토교통부.
- 호서대학교(2016.12), 국립한글박물관 체험 기반 감성형 콘텐츠 구축 전략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 (사)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2010.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기본계획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사)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2015.6), 국립익산박물관 건립기본계획 연구, 국립중앙박물관.
- (사)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2016.5), 새만금박물관 건립방안 구상 연구, 새만금개발청.
- (사)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2017.10),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 중층화 기본계획 및 수장공간 확충을 위한 중장기방안 연구, 국립중앙박물관.
- (주)역사문화사(2011.1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주제 해설 기초자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 (주)퍼포먼스 웨이컨설팅(2010.12), 국립생태원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보고서, 환경부.
- (주)프라임전략연구원(2017.4), 국립중앙박물관 조직진단을 통한 운영 효율화 방안, 국립중앙박물관.
- EGA GROUP(2016.12), 농어업 역사문화 전시체험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KAIST 문화기술대학원(2013.10),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15.11), 201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농어업 역사문화 전시체험관 건립, 기획재정부.
- Stephen E. Well, 「Report to the Deaccessioning Task Force of the Registrars Committee of AAM」, 『A Deaccession Reader』, 1997, 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의 체계적인 운영방안 연구

- **발 행 일 :** 2018년 2월 20일
- **발 행 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 **연구기관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 구 진**
  - 연구책임 : 최 종 호(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박물관학박사)
  - 공동연구 : 김 창 규(미래문화제도정책연구원 원장, 법학박사)
    박 윤 옥(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강사, 박물관학박사)
    황 규 진(前 왈츠와 닥터만 커피박물관 부관장, 박물관경영석사)
    이 진 형(경희대학교혜정박물관 학예사, 박사과정)
  - 연구지원 : 박 자 행(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문화경영정책석사)

* 본서의 내용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 또는 복제할 수 없습니다.